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사 학 위 논 문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투표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2012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유 수 현

HANSUNG
UNIVERSITY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투표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vironment Factors for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on Their Intention of Voting
Participation

-Mediating Effects Verification of Psychological
Factors of Disabled Voters -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유 수 현

박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진택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투표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에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vironment Factors for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on Their Intention of Voting
Participation**

**-Mediating Effects Verification of Psychological
Factors of Disabled Voters -**

위 논문을 정책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 책 학 전 공

유 수 현

유수현의 정책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투표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행 정 학 과
정책학 전공
유 수 현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투표참여의도를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에 관련된 요인과 그들의 투표참여의도를 결정하는 요인 및 장애인들의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에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도록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장애인들은 선거 참여를 먼저 하려는 정도와 선거 참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개선은 이들의 투표참여 의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투표참여 의향을 높여주고 있는 것을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정치적 관심과 선거 참여에 대한 접근성 및 적극성을 높여줄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써 도출 하도록 하였다.

【주요어】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 투표참여 의향, 장애인 유권자 심리 요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연구의 절차적 방법론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환경요인 선행연구	6
1.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선행연구	6
1)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개념	6
2)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관련 경험적 연구	7
2.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8
1)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개념	8
2)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경험적 연구	11
제 2 절 장애인 투표참여의도 선행연구	14
1. 투표참여의도	15
1) 투표참여의도 개념	15
2) 투표참여의도 유형	16
3) 투표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2. 장애인 유권자 투표참여의 심리적 동인	19
1) 정치적 관심	19

2) 정치적 효능감	19
제 3 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21

제 3 장 연구 방법 22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22
1. 연구모형의 설정	22
2. 연구가설의 설정	23
1)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과 유권자 심리요인의 관계에 관한 가설	23
2)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설	24
3)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24
4) 장애인 선거참여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가설	25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26
1)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	26
2)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27
3) 장애인 선거참여환경에 따른 투표참여의도	28
제 2 절 조 사 설 계	29
1. 조사대상의 선정	29
2.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성 검증	30
3. 분석방법	31

제 4 장 연구 결과 33

제 1 절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33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33

2.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	37
1)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	37
2)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	43
제 2 절 선거참여환경 요인, 유권자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관계	51
1.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51
1)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 및 유권자 심리요인의	
공선성통계량	51
2) 각 회귀모형에 따른 잔차의 다중공선성 진단	52
2.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유권자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	54
3.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57
4.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58
1) 장애인선거참여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 간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 검증	58
2) 장애인선거참여환경 요인과 투표참여의도 간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60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62
1.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과 유권자 심리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62
2.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과 투표참여의도에 관한 가설검증	63
3.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64
4. 장애인 선거참여환경 요인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가설검증	65

제 5 장 결 론 67

1. 연구결과의 요약	67
2. 정책적 제언	68
1)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개선방안	68

2) 선거정보 접근성 기반 개선 방안	71
3)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개선방안	72
참고문헌	74
부록 #1(설문지)	79
부록 #2(선거환경 심층인터뷰)	89
부록 #3(빈도분석 결과)	105
부록 #4(교차분석 결과)	128
ABSTRACT	151



표 목 차

[표 3-1] 조사의 설계	29
[표 3-2] 설문지의 구성	30
[표 4-1] 조사대상자 및 무응답자의 빈도분석 결과	33
[표 4-2] 장애인 유권자의 성별 분포	33
[표 4-3] 장애인 유권자의 연령대 분포	34
[표 4-4] 장애인 유권자의 장애유형 분포	34
[표 4-5] 장애인 유권자의 장애등급별 분포	35
[표 4-6] 장애인 유권자의 학력 분포	35
[표 4-7] 장애인 유권자의 직업별 분포	36
[표 4-8] 성별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의 차이	37
[표 4-9] 연령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차이	38
[표 4-10]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의 차이	39
[표 4-11] 장애인 학력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차이	40
[표 4-12] 유권자 지역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차이	41
[표 4-13] 장애인 유권자 직업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의 차이	42
[표 4-14] 성별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44
[표 4-15] 연령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선거참여의 차이	45
[표 4-16]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46
[표 4-17] 장애인 학력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47
[표 4-18] 유권자 연령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차이	49
[표 4-19] 유권자 학력에 따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50
[표 4-20]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및 유권자 심리요인의 공선성통계량	52
[표 4-21] Durbin-Watson의 잔차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52
[표 4-2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정치적 관심의 관계	54
[표 4-23] 장애인 선거환경 요인과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	56
[표 4-2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	57
[표 4-25]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59
[표 4-26]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60
[표 4-27]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유권자 심리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62
[표 4-28]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63
[표 4-29]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64
[표 4-30]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65

그 립 목 차

<그림 3-1> 연구모형	22
---------------------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UN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는 투표장에서만이 아니라 투표장으로 이동하는 경로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으로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0년 까지 12차례에 걸쳐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선거참여 환경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다양한 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장벽이 존재한다.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물리적인 장벽들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투표소의 공간 확보, 안전보행통로 확보, 주출입구와의 접근성과 편리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 또한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피선거권자로서 자신의 소신과 정책 홍보를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당선은 물론 상대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은 선거에 출마한 출마자의 공약과 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에서도 소외 또는 제외되어 자신의 이익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투표를 위해서 제공되어야 할 편의시설뿐 아니라 이를 강제하는 제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지난해에 치러진 6·2지방선거에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소 접근이 '06년도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1만 2288곳의 투표소 가운데 1층에 설치된 곳은 1만 1830소(88%)에 불과해 '06년도 지방선거 때 96%에 비해 장애인의 접근성이 훨씬 악화된 것이다.

장애인의 정치참여의식은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수의식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정치의식이 매우 높다는 일반적인 특징이 장애계층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참여 의식은 높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난 투표율은 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가로 막는 물리적·사회적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당사자로서 선거후보자로서의 권리와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참을 할 것인가'와 '투표를 한다면 어떤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은 강화하고 선거참여를 억제하는 요인은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고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보유 등 정보접근 기반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정당이나 후보자의 장애인 관련 공약여부 및 선거에 참여했을 때의 이익 등의 상황분석과 관련된 선거정보 접근기반 변수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거소에서 투표소까지 이동을 하게 되며 투표소가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등의 투표소 이동환경 관련 변수들이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에 영향을 끼치므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법·제도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의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에서 장애인 유권자 집단의 투표참여와 투표불참에 관해 실시된 경험적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장애당사자로서 선거후보자로서의 권리와 유권자로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선거참여환경에서 투표대상 집단, 즉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행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국내 유권자에 대한 의식조사는 2002년부터 정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고, 동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연구가 활발한 반면,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8)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장애인들의 투표불참 요인에 관한 조사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가” 13.0%로 그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제15대 선거에서는 “관심이 없어서가” 10.3%로, “참여해 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 7.7%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가” 6.0%의 순으로 장애인 투표불참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불참 이유는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가” 20.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찍고 싶은 후보자가 없어서가” 18.5%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가” 7.9%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위의 시선 때문에 불참한 사례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간질장애가 17.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자폐성장애 15.6%, 안면장애 14.1%, 지적장애 9.4%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1.4%, 여자가 1.3%였고, 연령대로는 44세 이하가 2.3%, 45세-64세 이하가 1.2%, 65세 이상은 0.4%

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로는 중증장애인 2.3%, 경증장애인 0.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공보관실에서 1996년도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장애인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사람들의 편견·시선"이 17.5%로 투표불참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살펴본 장애인 선거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는 법·제도 관점과 장애인 선거관리 행정의 효율성 시각에서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학술적 연구로 연계 발전되기에는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도론적 선거이론의 시각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참여에 관한 의식과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투표참여의도에 관한 의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실제 장애인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의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 조사와 대안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선거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째,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성기반 요인으로 구성되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그리고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에 따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으로 구성되는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정성적으로 측정되어지는 투표참여의도에 관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검토하여 개념들의 정의와 구성요인 및 측정방법을 확인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및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을 구성하였다.

셋째,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영향력 검증 및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조사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하였다.

넷째,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한 후 이를 중심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들과 투표참여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전략적 제언을 하였다.



제 2 장 이 론 적 배 경

제 1 절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선행연구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적 방법론의 첫 번째 단계로써 우선, 본 연구는 각 변수의 구성요인들의 개념 및 정의와 측정도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선행연구

1)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개념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장애인의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이동과 교통문제 개선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이동권은 장애인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1997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98년 4월 시행되어 편의 증진의 대상이 과거의 장애인에서 고령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로 확대되었고 공직선거법 제 6 조 제1항에서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

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관련 경험적 연구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지체장애인협회(2006) 조사결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실태조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18대국회의원선거 편람 등이 있다.

먼저 지난 2006년 치러진 5·31 지방선거 당시, 인권위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893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관련 투표소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종종 장애인이 투표하기 힘든 환경, 예를 들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상 2·3층 또는 지하 1·2층에 설치된 투표소가 2.8%(25개소), 활동보조인이 지원된 투표소는 조사실시한 투표소 215개소 중 75%(162개소)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이후 투표소를 종교시설에 설치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147조 4항에 개정됨에 따라 이런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 2항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용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애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평상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 버스가 35.8%, 자가용이 32.2%, 지하철·전철이 10.4%, 일반택시가 6.9%로 나타났고 장애인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가 6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홍보처에서 2006년도 실시한 장애인 복지관련 여론조사에서 81.5%가 장애인과 노인 같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고 대답했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교통문제로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편리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개선이 53.9%로, 대중교통 체계강화가 23.2%로, 교통신호 체계

개선 및 도로 확충이 18.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96년도 실시한 장애인에 대한 시민조사에서 장애인이 외출할 때 무엇이 가장 불편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49.7%, 편의시설 불편·부족이 29.3%, 사람들의 편견·시선이 17.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교통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과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 개선 및 선거일 운행차량 증가 조치가 요구된다.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편람에 따르면 각 선거별 1층 투표소 설치상황을 살펴보면 총 13,246개소 중 학교 6,629개소로 501.%, 읍·면·동사무소 1,887개소로 14.3%, 공공기관 998개소로 7.5%, 주민회관 949개소로 7.2%, 종교시설 849개소로 6.3%, 기타 1,934개소로 14.6%로 나타났고, 각 선거별 1층 투표소 설치상황을 살펴보면 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투표소는 총 투표소 13,246개소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만 설치한 투표소는 9,014개소로 68.1%, 투표도우미만 배치한 투표소가 4,219개소로 31.9%였고 장애인 편의시설과 도우미를 동시에 배치한 투표소가 9,008개소로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부재자 및 거소투표 신고제도 이용이 저조하여 부재자 신고 명칭 변경과 허위 부재자 신고 관련 벌칙 강화가 요구된다.

2.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1)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개념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장애인 선거운동 방법은 ①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②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와 방송연설 ③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 ④ 인터넷 광고 ⑤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 이때,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의 횟수를 선거별로 제한한다. 중앙선

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에 한하여 방송 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가 비용 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중계방송을 허용한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선관위 게시판에 게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신을 원하는 장애인 선거인 등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된 매체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가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선호하는 매체와 부합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유권자는 장애인 선거에 대한 홍보 자료나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국내 장애인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후보자 인지 정보원으로 TV가 30.5%로 가장 높고, 정당·후보자의 홍보물이 21.5%이고, 이어서 언론보도가 18.8%이다. 이중 언론 보도는 최근 선거에서 그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이다. 반면 후보자 인지 정보원으로서 인터넷의 비율은 1.7% 정도로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선거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TV와 인터넷을 선거운동이나 후보자·정당 정보 제공의 주력 매체로 활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국내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신문과 같은 공적인 인쇄 매체가 누락되어 있어 인쇄매체를 선호하거나 특화된 계층의 장애인선거 참여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1) 언론 매체에 의한 선거정보

국내 선거에서 허용되는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중 신문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장애인선거에서 허용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만, 광고비용을 감안하여 일정회수별로 제한하는 것은 돈 안 드는 선거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현대의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유권자에게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는 인쇄매체인 신문에서 시청각 매체인 TV로 비중이 옮겨 가고 있다.

(2)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선거정보

국내 선거에서 허용되고 있는 전화, 정보통신망, 인터넷 광고 모두 장애인 선거에서도 허용된다. 전 세계를 무제한으로 연결하는 인터넷은 이메일의 1세대를 지나 공개·공유·참여를 키워드로 하는 웹2.0시대에는 UCC나 트위터와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어 내일의 모습을 예측하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행정전산망 구축을 시작으로 1990년대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선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정보통신을 이용하고 있고, 유무선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서 급속히 인쇄매체를 대신하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익명성을 이용한 근거 없는 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에 대한 규제는 기술적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신속한 규제가 필요한 선거의 영역에서는 실익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인터넷 광고처럼 규제를 풀고 선거비용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더 주효 하다.

(3) 인쇄물 시설물에 의한 선거정보

국내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전벽보(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공보(공직선거법 제65조), 명함 교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간판(공직선거법 제61조 제6항), 현수막(공직선거법 제67조), 어깨띠(공직선거법 제68조) 등 시설물 이용의 선거운동은 모두 장애인 선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인쇄물에 대해 실명제 외에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선전물의 부착장소에 대해 부분적으로 규제가 있어 공공장소 부착 금지와 주정부 단위에서 도로변이나 도로 중앙에 꽂아 두는 표지에 대해 규정하는 수준이다. 인쇄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선거과열, 낭비, 일상생활 불편 초래 등의 사유로 국내 선거에서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애인선거의 경우는 이외에도 현지 국가와 불필요한 행정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전면 불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경험적 연구

(1) 언론매체 관련 경험적 연구

한국농아인협회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청각장애인의 선거에 대한 정보 습득실태조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 습득은 TV가 41.4%, 전단 및 선전물 16.2%, 선거유세 13.6%, 신문·잡지 13.6%, 인터넷 1.5% 순으로 나타남. 선거관련방송 실태는 TV대답이 66%로 가장 높았고, 경력방송 14.5%, 후보자연설 5.5%, 후보자광고 3.8% 순으로 나타났고 방송위원회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TV방송 정보접근 수신기 85,000대(74.5억) 보급 가운데 자막방송용이 25,000대, 화면해설용 17,000대, 난청요인용 43,000대가 보급되었다.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수신기가 부족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수신기 및 보청기 등 보급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농아인협회에서 2002년도에 실시한 청각장애인의 선거에 대한 정보습득실태에 따르면 선거토론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이해가 20%인 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함이 22%에 달함.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수화통역이 너무 작거나 보이지 않아서가 39%,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가 34% 수화통역사의 수화가 너무 영성해서 12%, 수화통역이 자주 끊기기 때문이 9%로 나타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장애인실태보고서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전달은 말이 8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화 5.6%, 구화 4.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의 TV 등 선거방송 이해도가 저조하여 청각장애인 수화 교육 기회 제공 및 장애인 단체 육성 지원이 요구된다.

국무조정실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장애인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TV시청에 있어 자막방송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나 부가서비스로 인식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이 나타났고 방송위원회의 2008년도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한 방송제작 실태를 보면 자막방송이 78.1%, 수화방송 3.8%, 화면해설방송 5.4%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 제작이 매우 부

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 방송 관계자의 낮은 인식으로 방송의 책임성 제고가 요구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선거기간 전에 TV토론 방송을 실시하면서 후보자토론에 대한 수화통역이나 자막방송을 대부분 실시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와 관련한 후보에 관한 바른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의 임의성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을 통한 점자생활 환경조성과 선거공보내용의 음성안내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2) 정보통신매체 관련 경험적 연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8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장애인의 컴퓨터 보유율은 70.7%로 전체국민 보유율 80.9%에 비해 10.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컴퓨터 보유율은 전체 53%로 장애유형별로 중증 54%, 경증 52.7%, 연령별로 17세 이하 82%, 18세-44세 이하 76%, 45-64세 이하 61.2%, 65세 이상 28.7%로 연령대별로 보유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2009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지역 장애인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56.1%로 전체가구 컴퓨터 보유율 80.9%보다 24.8% 낮았고 인터넷 보유율도 군지역이 40.7%, 도시지역이 52.9%로 군지역이 10.2%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컴퓨터 보유율은 53%로 전체가구 보유율 80.9%보다 2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컴퓨터 및 인터넷 보유 활용이 요구된다. 장애인 컴퓨터 및 인터넷 보유 활용이 취약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확대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에 실시한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은 51.8%로 전체 국민이용률 77.1%에 비해 25.3%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에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사용자는 전체 25.7%로 낮게 나타났고 장애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인 26.1%, 경증장애인 26.9%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연령

별로 17세 이하 55.4%, 18세-44세 이하 62.7%, 45-64세 이하 25.6%, 65세 이상 3.6%로 연령대별로 보유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도 38.2%로 전체국민의 인터넷 이용률 77.1% 보다 38.9%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에 따라 지체장애가 다른 장애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도시지역이 군지역보다 높았으며, 고연령 층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저소득일수록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이 취약하여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에 발간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5.1%로 나타났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9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격차가 심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지체장애인은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움(32.4%), 시각과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이용의 어려움(27.4%)을 들고 있다. 이외에 이용 필요성 부재(17.4%)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이 미흡하여 교육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가 2008년도에 발간한 “장애인 정보화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보화 교육받은 장애인 수는 313,749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 2,233,410명의 13.7%에 그치는 적은 수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시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쓰는지 잘 몰라서(9.7%), 배우기 싫어서(4.6%), 이용방법을 몰라서(63.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정보화 활용 지수는 일반국민의 66%로 정보 활용 격차가 심하고 장애인 중 고연령층(28.3%)과 저소득층(28.3%)은 전체 국민(77.1%)보다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 정보격차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

(3) 인쇄매체 관련 경험적 연구

공직선거법 제65조 6항와 공정선거관리규칙 제30조 5항에 따르면 후보

자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제4항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제한된 정보에 접근하게 된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의 임의성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의 의무화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8대 국회의원선거편람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상황에 따르면 후보자 1,119명 가운데 99.3%의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였으나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상황을 보면, 법정 제출매수가 307,580매인데 제출매수는 186,028매로 법정제출매수의 60.5%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차원에서 볼 때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법정매출매수의 40%를 제출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당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내용의 차별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방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 2 절 장애인 투표참여의도 선행연구

장애인 투표참여는 장애인들이 선거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투표지침이나 지시 등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즉 투표참여는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행동규칙이나 규정에 대한 반응이다. 투표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표대상 집단의 참여가 있어야 투표의 효과가 나타난다. 대체로 투표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유인책이 있을 때, 그리고 법적인 강제력을 가질 때 투표참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투표자체의 특성과 투표 집행기관의 압력, 그리고 투표 집행환경과 투표대상 집단의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투표 불참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지침상의 행동규정과 집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행동규정에 대해 투표집행자나 투표대상집단이 불일치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투표불참의 발생요인에 대해서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투표자체의 특성이 불명확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투표집행기관과의 의사전달과정, 그리고 투표대상 집단의 이해관계 등에 부합하지 못할 때 투표불참이 발생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투표 참여와 포기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호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이 통합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투표참여 혹은 투표불참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관련한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투표 참여와 투표 기권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면서 투표 참여에 관련된 요인들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투표참여 영향요인을 정리하면, 첫째, 투표 자체와 관련된 요인으로 투표의 가치, 명확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투표집행기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투표집행기관의 능력, 투표집행자의 태도, 신뢰도, 선거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조직구조, 정통성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투표 집행 환경요인으로 정치, 경제, 문화적 환경 등과 관련된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넷째, 투표대상 집단 요인으로 투표에 대한 지식, 사회적 압력, 대상 집단의 규모, 조직화, 리더십, 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1. 투표참여의도

1) 투표참여의도 개념

투표참여의도라는 개념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은 여러 연구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정의가 있어왔다. 투표참여 개념은 유권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인지적 차원에서부터 집회참가, 투표, 그리고 각종 투표활동에 참가하는 행동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다. 용어상으로도 투표참여는 정치적 이슈에 주목하는 정치관여,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의 정치개입, 그리고 기타 정치활동 등의 개념과 혼재되어왔다. 따

라서 투표참여의도의 개념을 하나의 차원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투표참여의도 논의들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이것이 “정부나 정책,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직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적 유권자들의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Verba&Nie 1972,2), 즉 공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2) 투표참여의도 유형

투표참여의도는 사회과학영역에서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지배적인 정치문화에 따른 합법성과 수용성에 근거하여 크게 체제내의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관습적 투표참여’와 가두시위나 항의 행위 등을 포함하는 ‘비관습적 투표참여’로 구분된다. 관습적 투표참여의 대표적인 유형은 투표행위, 선거유세활동, 공동체적 행위, 개별적 접촉 행위 등이고 (Verba&Nie 1972), 비관습적 투표참여의 유형에는 단순한 정치의례적 행위나 불법적인 행위인 정치적 파업, 보이코트, 교통차단 행동, 물리적 충돌 등이 해당된다.

관습적 정치 참여는 다시 ‘선거활동’과 ‘비선거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거활동이란 투표행위와 선거유세 행위 등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말하며, 비선거 활동이란 공동체적 행위와 개별적 기여행위를 뜻한다. 최홍석(2001)은 투표참여를 선거활동과 비선거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요인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투표참여행위를 크게 정당적 참여, 공공기관 접촉, 투표, 유권자 운동적 참여 등의 네 유형을 나누고 있다. 여기서 투표를 제외한 세 유형이 비선거 활동에 해당한다. 한편, 박종민(1994)은 비선거 활동을 7개의 범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부 관리나 정치인을 찾아가는 행위, 정부관서에 진정서를 내는 행위, 정당에 호소하는 행위, 종교 혹은 사회단체에 호소하는 행위, 언론기관에 전화하거나 투고하는 행위 . 항의대회에 참석하거나 시위에 가담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Conway(1991)는 광범위한 투표참여의도 개념을 채택하여 이를 다시 능동적·수동적 참여의 형태로 나누었다. 능동적 참여는 일반적인 투표참여의도의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투표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해당 관청에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말한다. 수동적 참여는 일반적인 행사에 참여하거나 정치과정에서 일어나는 제 현상에 단순히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3) 투표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거의 경험적 연구들은 특정 변수가 유권자 전체의 투표선택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검하고 변수에 대한 가설적인 수준의 설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투표행태는 사회학적 변수군인 성별, 교육수준, 직업 등의 변수와 사회심리학적인 변수군인 정당일체감,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미지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해 왔다. 투표참여의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로 도출해낸 이론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이다. 근대적 선거연구의 효시로 평가되는 컬럼비아학파의 1940년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에서 발견한 것은 선거 운동의 주된 역할이 유권자로 하여금 본래의 정치 성향과는 대립되는 새로운 투표의사를 형성하기 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투표의사를 더욱 공고화 하거나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잠재해있던 본래의 정치적 성향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다. 이후 컬럼비아 학자들은 본래의 정치적 성향을 수량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와 도시와 농촌의 주거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분석틀은 사회학이라는 그들의 학문적 배경으로부터 유래하였고, 이 점에서 컬럼비아 학파는 이후 이들을 계승·포섭하였다는 심리학적 분석틀에 근거한 미시간 학파의 심리학적 접근법과 구별된다. 컬럼비아 학자들의 연구를 집대성한 1954년의 연구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연구가 미시간 학파의 심리학적 연구로 이어지는 교량 구실을 한다(한국정치학회 2007). 이 연구에서

Lazarsfeld, Berelson and McPhee 등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행태를 교육, 소득, 직업, 종교, 연령, 노조와 같은 사회적 집단요소로 설명하는 한편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이 이러한 배경들이투표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Conway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고소득 계층의 정치 반응성, 참여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결과적으로 컬럼비아학과의 연구는 유권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투표참여의 동인으로 보는 것 같지만 인종, 성별, 소득, 교육 등의 차이로 분리된 집단을 보는 것으로, 사회결정론적인 이론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합리적 유권자 모델은 정치행위를 경제행위와 같은 원칙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으로 기존의 정치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로 전체의 틀 속에서 구성원의 행위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는 작업을 해온 것에 반해 Downs, Olsen 등은 실제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단위는 개인이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행위가 확대되어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구조화 된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변화나 현상의 변화는 체제차원 또는 시스템으로서 변화되어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개인들의 선호가 상호작용하여 체제나 현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논리이다. 투표 참여 등과 같은 정치 행위는 유권자 개인이 사회적 압력과 상관없이 이득이 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상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합리적 유권자 모델은 개인행위의 중요성은 강조하나 집단이나 사회의 독자적 중요성은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셋째 미시간학과의 심리학적 접근이다. 이들에 따르면 정당 일체감은 보통 18세 이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으로 정의되고, 이후의 성장과정에서 변화될 가능성 보다는 시기가 지난에 따라 그 강도와 안정성 면에서 공고화된다고(한국정치학회 2007). 사회적 집단요소는 장기적 요인이기 때문에 선거마다 급변하는 국가적인 선거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Campbell, Converse, Millerand Stokes등은 사회심리학적 변수군인 정당일체감, 정치적 효능감 등을 투표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 요인으로 보고, 이는 투표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후보자에 대한 태도, 집

단이익, 정부업적에 대한 상대평가와 같은 중요한 투표결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간접적인 투표선택 효과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시간 모델의 경우 정책투표, 전략 투표 등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의 동인으로 정치적 효능감, 정치관심도 등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미시간 모델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장애인 유권자 투표참여의 심리적 동인

1) 정치적 관심

민주적 유권자는 공적활동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가정되지만 실제로는 선거 기간에 모든 유권자가 정치적 관심이 높은 것은 아니다. Verba에 의하면 유권자가 정치에 대하여 추적하고 정치계의 사건과 선거의 승패 등에 대하여 심리적 관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은 정치에 대해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하는 경향이 많을 뿐 아니라 공직에 출마하거나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Verba와 Nye(1972)는 정치적 관심을 정치적 토론과 정치뉴스 미디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Milbrath와 Goel은 정치에 관한 심리적 관여를 선거 운동과 대선에서의 특정후보의 당락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측정한 바 있다. 정치적 관심도는 특히 교육수준과 관계가 깊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으며 당파심 또한 정치적 관심과 양의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치적 효능감

민주주의는 정치과정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유권자들이 정치과정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사회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제대로 확립되기 힘들기 때문에 유권자들 스스로가 정치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자신들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950년대 초 미국

에서 정치과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정치 효능감은 1954년 캠벨과 그의 동료들이 이러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4개 문항을 만들어 사용한 이후 오늘날까지 중요한 정치적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박상호·성동규 2005).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행위가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럴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해서 자신의 유권자적 의무를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감지하는 것으로, 정치 효능감이 투표참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며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투표참여를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Conway(1991) 또한 정치효능감은 투표참여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Bandura(1997)는 능동적 미디어이용이 투표참여과정과 정치효능감에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용자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미디어 이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치효능감은 일반적으로 내적 효능감과 외적 효능감으로 나뉘어진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물음을 의미하며, 외적 효능감은 개인의 그런 요구에 대해 정치집단 및 정부가 응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뜻한다.(Converse 1972)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 정치적 효능감은 개별 유권자의 투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인식되어왔다.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투표를 비롯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정치적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정치체계에 압도되거나 정부의 순응성에 부정적이므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정치체계에 관한 신뢰수준, 정당에 대한 충성도의 변수는 정치심리학적 측면에서 정치적 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며(안형기 1999), 유권자들의 정치적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쳐 민주주의 성숙도와도 깊은 관련을 가진다.

제 3 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국내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인구·사회·경제적 배경변수와 투표참여의 심리적 동인 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 중 성별, 연령, 교육, 직업, 거주지의 5개 배경변수와 주관적 의식 변수 중 정치적 관심, 효능감, 인지도의 3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변수에 관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거주지 등을 통하여 정치적 관심, 그리고 효능감이 장애인 유권자의 속성에 따라 각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투표참여의 심리적 동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이에 더해 투표참여의 심리적 동인들이 투표참여의도 그리고 비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볼 것이다. 또한 이상의 논리적 구조와 관련한 구조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 분석 모델 전체에 대한 조망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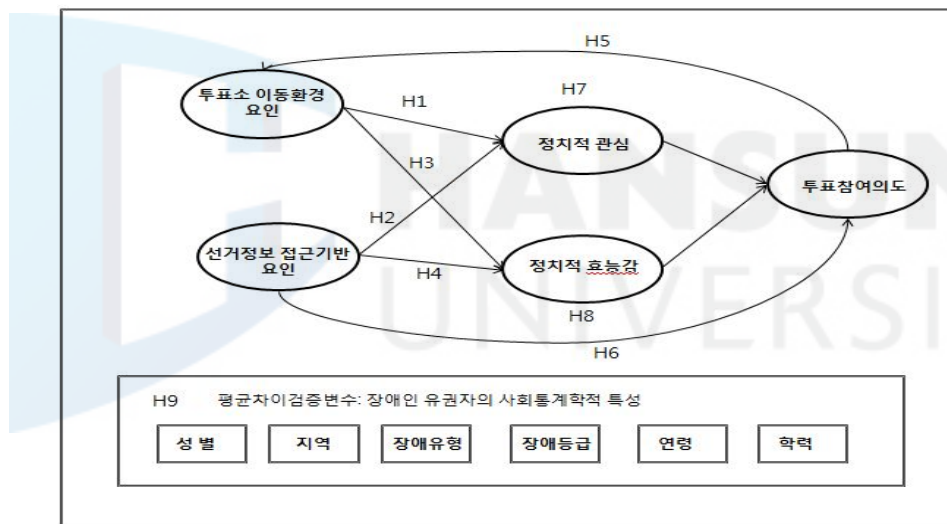


제 3 장 연 구 방 법

제 1 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1.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에 관련된 요인과 그들이 투표참여의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측정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모형의 검증을 통해서 첫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참여 의도의 결정요인이 되는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들의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마지막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인 사용자 성별, 유권자 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유권자 연령, 유권자 학력 등에 따라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였다.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연구모형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장애인 선거환경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대한 연구가설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관계에 관한 가설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결정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정하여 설정한 연구가설 H1, H2, H3, H4는 아래와 같다.

H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정치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정치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3.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에 관한 가설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높아질수록 그들이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정하여 설정한 연구가설 H5, H6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H 5.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 6. 장애인 선거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의도가 향상되는데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는 잠정적 매개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설 H7, H8, H9, H10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H 7.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장애인 선거환

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이 매개할 것이다.

- H 8.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 H 9.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 H 10.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가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였을 경우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선거참여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검증하고자 연구가설 H11-1, H11-2, H11-3, H11-4, H11-5를 설정하도록 하였다.

- H11-1.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H11-2.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H11-3.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 H11-4.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H11-5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 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연구자가 실험변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나타나고 있는 측정변수들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투표참여의도의 5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장애인 유권자들의 특성 또는 장애인 선거환경 특성에 관한 요인을 뜻하는 것으로, 장애인 유권자 개인의 특성에 관하여 선거참여 하는 장애인에 있어서 심리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이 선거참여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지각된 비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선거 참여 행위에 있어서 지각된 비용이 의사결정의 중요한 영향요인이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개인 사용자 요인에 있어서 잠재적 유권자가 가진 가치관 및 신념, 경험, 욕구 등에 대한 적합성이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에 관련한 개인적 속성을 뜻하는 유권자 요인에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다양한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중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가 수행하고 있는 선거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대상자를 특정화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수행중인 선거에 대한 적합성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측정 변수로써 조작화하도록 하였다.

(1)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본 연구는 선거 참여를 기존의 것과 다른 생각과 행동이 개인에게 인지되고 이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측정변수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을 “특정 장애인 유권자에 대하여 다른 유권자보다 선거 참여를 먼저 하려는 정도”라고 정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장애인 선거환경에 맞추어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통계분석의 용이한 처리를 위해서 Likert 5점의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측정도구로 구성하였다.

(2)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본 연구는 선거 참여를 유권자 개인의 배경과 욕구에 서비스가 부응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도록 하였으며, 선거 참여를 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 및 가치관에 일치하는 정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을 “유권자가 선거참여를 수행하고자 할 때 기대하는 욕구 및 선거참여에 대한 인지와 부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Likert 5점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측정도구로써 명확화 하였다.

2)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본 연구에 있어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은 선거참여에 대한 잠재적 유권자의 사용과 참여를 예측하고자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본 연구의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측정도구로써 활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이동성과 다양성 등의 특성이 사용자에게 주는 인식의 정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을 측정하고자,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을 선택적으로 측정변수로써 활용하였다.

(1) 정치적 관심

정치적 관심은 새로운 참여하였을 때 유권자가 목표달성과 생활수준 및 환경개선,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이러한 선거 참여가 기여한 정도를 인지하는 주관적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장애인 선거 참여를 유용하게 인지하는 정도로써 정의하였으며, Likert 5점의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을 측정도구로써 명확화 하였다.

(2)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효능감은 장애인 유권자가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선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정도로써 정의한다. Likert 5점의 등간척도로 이를 구성하여 측정도구로써 명확화 하였다.

3)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선거환경 도입 이후의 투표참여의도를 사용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 선거환경 도입 이전과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투표참여의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측정하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제 2 절 조 사 설 계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인 선거환경 결정요인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이 매개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 유권자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방법을 통해 1000명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자기기입식 설문 문항 형태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통계처리의 유용성을 위해서 리커트 5점의 등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2011년 8월 9일부터 2011년 10월 28일까지 배부 및 회수된 설문지 700부 중 불성실 응답자 및 결측값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685부를 본 연구의 데이터로써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설계를 요약한 것은 아래의 [표3-1]과 같다.

[표 3-1] 조사의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장애인 선거에 참여하는 장애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조사방법	통계처리의 용이성을 위해 리커트 5점 등간척도로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방법
조사표본	회수된 설문지 700부 중 불성실 응답자 및 결측값 제외 685 부 (N=685, 회수율 90%)
조사기간	2011년 8월 9일 ~ 2011년 10월 28일

2.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의 조사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을 측정하는 q1-1 ~ q1-7의 총 10개의 문항과, 선거 정보 접근기반 요인을 측정하는 q2-1 ~ 2-4의 10개의 문항,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을 측정하는 q3-1, 3-2의 2개 문항, 정치적 효능감을 측정하는 q4-1, 4-2의 2개 문항, 장애인 선거환경 도입에 따른 투표참여의도를 측정하는 q5-1 ~ q5-2의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설문지를 토대로 분석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Cronbach' α 의 신뢰계수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표 3-2] 설문지의 구성

측정변수			설문지 항목
독립 변수	장애인 선거환경요인	투표소이동 환경요인	문항 q1-1, 1-2, 1-3, 1-4, 1-5, 1-6, 1-7
		선거정보접근 기반요인	문항 q2-1, 2-2, 2-3, 2-4
매개 변수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정치적관심	문항 q3-1, 3-2
		정치적 효능감	문항 q4-1, 4-2
종속 변수	투표참여의도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문항 q5-1, 5-2, 5-3, 5-4, 5-5, 5-6, 5-7, 5-8, 5-9
사회 통계 특성	유권자 성별, 유권자 지역, 장애인유형, 장애인등급 연령, 학력, 직업		문항 q6-1, 6-2, 6-3, 6-4, 6-5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나타난 신뢰계수의 값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내적일관성이 검증된다고 판단하는 .600 이상의 계수값이 나타났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신뢰도분석의 결과 나타난 신뢰계수는 .790이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신뢰계수는 .898이었다. 또한 잠정적 매개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의 신뢰계수는 .755였으며, 정치적 효능감의 신뢰계수는 .600이었고, 종속변수로 설정한 선거참여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계수는 .796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계수의 값이 .600 이상의 신뢰계수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든 측정도구가 신뢰성 즉, 내적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표3-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 문항별 빈도수 및 비율, 무응답자로 인한 결측값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의 신뢰도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셋째, 본 연구가 핵심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관계와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 및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투표참여의도가 어떠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증해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영향력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선성통계량의 확인과 Dubin-Watson의 잔차 검증방법을

통해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05 미만에서 유의성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9.0 win 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4 장 연 구 결 과

제 1 절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표 4-1] 조사대상자 및 무응답자의 빈도분석 결과

구 분	유권자 성별	유권자 지역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	유권자 직업
유효표본수	685	685	685	685	685	685
무응답자	0	0	0	0	0	0
전체(N)	685명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장애인 선거에 참여할 있는 유권자 집단으로, 설문을 통해 취합된 총 685명의 데이터를 조사 분석의 표본집단으로써 활용하고 있다. 위 [표4-1]에 따르면 표본집단 전체 685명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은 유권자 성별, 유권자 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 유권자 학력의 6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었으며, 각각의 특성에 대한 조사에서 무응답하고 있는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표본 집단을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4-2] 장애인 유권자의 성별 분포

구 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수	남자	447	65.3	65.3	65.3
	여자	238	34.7	34.7	100.0
	전체	685	100.0	100.0	

빈도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유권자의 성별분포를 확인한 결과, 남성 집단이 447명 65.3%, 여성집단이 238명 34.7%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값은 0명으로 나타났다.

[표 4-3] 장애인 유권자의 연령대 분포

구 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20대	48	7.0	7.0	7.0
	30대	109	15.9	15.9	22.9
	40대	159	23.2	23.2	46.1
	50대	212	30.9	30.9	77.1
	60대	118	17.2	17.2	94.3
	70대이상	39	5.7	5.7	100.0
	전체	685	100.0	100.0	

장애인 유권자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50대 집단이 212명 30.9%, 40대집단이 159명 23.2%로 가장 많았고, 60대 집단이 118명 17.2%, 70대 이상 집단이 가장 적은 39명 5.7%로 나타났다.

[표 4-4] 장애인 유권자의 장애유형 분포

구 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지체장애	359	52.4	52.4	52.4
	뇌병변장애	81	11.8	11.8	64.2
	시각장애	78	11.4	11.4	75.6
	청각장애	74	10.8	10.8	86.4
	지적장애	58	8.5	8.5	94.9
	정신장애	35	5.1	5.1	100.0
	전체	685	100.0	100.0	

조사대상자가 장애인 선거환경에서 선거 참여에 있어서 장애인 유형은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유권자가 359명 52.4%, 뇌병변장애 유권자가 81명 11.8%, 시각장애 유권자가 78명 11.4%, 청각장애 유권자가 740명 10.8%, 지적장애 유권자가 58명 8.5%로 그다음으로 적었고, 정신장애 유권자가 35명 5.1%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4-5] 장애인 유권자의 장애등급별 분포

구 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1급	112	16.4	16.4	16.4
	2급	208	30.4	30.4	46.7
	3급	191	27.9	27.9	74.6
	4급	57	8.3	8.3	82.9
	5급	65	9.5	9.5	92.4
	6급	52	7.6	7.6	100.0
	전체	685	100.0	100.0	

장애인 선거환경에서 선거참여에 대한 장애인 등급별 분포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들은 장애인 2급 유권자가 208명 3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3급 유권자는 191명 27.9%로 나타났다, 1급 유권자자가 112명 16.4%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4-6] 장애인 유권자의 학력 분포

구 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초졸이하	41	6.0	6.0	6.0
	초등학교졸업	63	9.2	9.2	15.2
	중학교졸업	163	23.8	23.8	39.0
	고등학교졸업	282	41.2	41.2	80.1
	대학교졸업	117	17.1	17.1	97.2
	대학원이상	9	1.3	1.3	98.5
	기타	10	1.5	1.5	100.0
	전체	685	100.0	100.0	

조사대상자들이 장애인 선거참여에서 장애인 유권자 학력을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유권자가 9명 1.3%로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장애인 유권자가 282명 41.2%, 중학교 졸업인 장애인 유권자가 163명 23.8%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대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장애인 유권자가 117명 17.1%로 나타났다.

[표 4-7] 장애인 유권자의 직업별 분포

구 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무직	301	43.9	43.9	43.9
	사무직	117	17.1	17.1	61.0
	전문직	32	4.7	4.7	65.7
	생산직	44	6.4	6.4	72.1
	공무원	4	.6	.6	72.7
	자영업	56	8.2	8.2	80.9
	서비스업	39	5.7	5.7	86.6
	학생	5	.7	.7	87.3
	기타	87	12.7	12.7	100.0
	전체	685	100.0	100.0	

조사대상자들이 직업을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사무, 기획, 관리와 같은 일반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유권자가 117명 17.1%로 나타났고, 무직인 장애인 유권자가 301명 43.9%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 유권자는 4명 0.6%로 가장 적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유권자는 56명 8.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빈도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에 장애인 선거참여 유권자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구분된 집단별로 각각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2.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투표참여의도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한 연구가설 H11-1, 11-2, 11-3, 11-4, 11-5를 검증하고자할 목적으로 장애인 유권자 성별과 같은 자유도가 1인 두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 밖의 특성들에 대해서는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통해서 평균차이를 분석해 살펴 보았다.

1)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1) 장애인 유권자 성별

우선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성별에 따라서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 각 집단들이 나타내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차이를 t-test를 통해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4-8]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성별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남 성	447	25.83	12.345	1.718	.086
	여 성	237	24.13	12.285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남 성	447	21.02	11.105	.457	.648
	여 성	238	20.61	11.695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평균차이 검정에

따른 t값이 1.718, 유의확률이 .086로 성별로 구분된 두 집단의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었고,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있어서도 t값이 .457, 유의확률이 .648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경우 여성의 평균값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경우에도 남성의 평균값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 보다 장애인 선거 참여 좀 더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2) 장애인 유권자 연령

다음 순으로 유권자 연령대에 따라서 이들을 20대, 30대, 40대, 50대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어떠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결과이다.

[표 4-9] 연령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20~30세미만	37	19.2973	4.21548	3.827	.011
	30~40세미만	139	18.1583	4.19154		
	40~50세미만	34	20.3235	3.58212		
	50~60세미만	4	22.2500	3.59398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20~30세미만	37	13.7027	3.74807	.398	.755
	30~40세미만	139	13.1295	3.40254		
	40~50세미만	34	13.0882	3.18489		
	50~60세미만	4	12.2500	3.59398		

분석의 결과, 장애인 유권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였을 경우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에 있어서는 F값이 3.827, 유의확률이 .011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에 있어서는 F값이

.398, 유의확률이 .755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은 50세~60세 미만인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40세~50세 미만, 20세~30세 미만, 30세~40세 미만 집단의 순으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인 투표참여의사에 더 긍정적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써 오히려 장애인 유권자들 중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참여의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3) 장애인 유형

조사대상자들이 장애인 유형에 따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및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분석은 분산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4-10]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지체장애인	52	20.1346	4.34326	3.685	.003
	뇌병변장애	60	18.0000	4.27448		
	시각장애	34	17.4412	3.35018		
	청각장애	30	18.6333	4.31104		
	지적장애	8	20.3750	2.61520		
	정신장애	14	21.3571	3.65023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지체장애인	52	13.1538	3.21994	1.093	.365
	뇌병변장애	60	13.7667	3.66091		
	시각장애	34	12.8824	3.54849		
	청각장애	30	12.5000	3.32960		
	지적장애	8	14.8750	.83452		
	정신장애	14	12.7143	3.42903		

분석결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에서 분산분석의 결과 도출된 F값이 3.685, 유의확률이 .003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정신 장애 활용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적장애인 집단, 지체장애인 집단, 청각장애인 집단, 뇌병변장애인 집단, 시각장애인 집단의 순으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장애인 학력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학력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평균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4-1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11] 장애인 학력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중졸이하	138	18.2101	4.24170	5.806	.004
	고졸	19	21.1579	3.18439		
	대졸 이상	15	20.4667	3.62268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중졸이하	138	13.3478	3.33452	.173	.841
	고졸	19	13.1579	3.04162		
	대졸 이상	15	13.8000	2.85857		

분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경우 F값이 5.806, 유의확률이 .004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선거정보 접

근기반 요인의 경우엔 F값이 .173, 유의확률이 .841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장애인 유권자 지역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들이 장애인 선거환경을 사용하기 시작한 전체 지역에 따라 장애인 선거환경요인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하고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4-1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유권자 지역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영남권	9	20.2222	4.26549	4.062	.008
	호남권	77	17.8961	4.38774		
	충청권	105	18.7905	4.11305		
	수도권	22	21.1818	2.77122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영남권	9	14.2222	5.04425	1.851	.139
	호남권	77	13.6623	3.54894		
	충청권	105	12.6000	3.20036		
	수도권	22	13.4091	2.87285		

위의 [표4-12]에 따르면, 유권자 지역에 따른 집단의 구분에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장애인 선거환경요인은 F값이 4.062, 유의확률이 .008로 나타나고 있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집단은 장애인 선거환경을 사용한 기간이 조사대상자들 중 가장 오래된 수도권 집단이었으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집단의 순으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장애인 유권자 직업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환경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는 장애인 선거환경요인이 어떠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13] 장애인 유권자 직업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사무, 기획, 관리 등 일반사무직	32	19.5000	3.28241	15.072	.000
	기술, 설비, 제조 등 기능직	115	17.3565	4.06351		
	임원 및 관리직	4	17.7500	2.98608		
	연구개발직	57	21.4035	3.46338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사무, 기획, 관리 등 일반사무직	32	13.2188	2.93735	.167	.919
	기술, 설비, 제조 등 기능직	115	13.3652	3.62334		
	임원 및 관리직	4	12.5000	5.06623		
	연구개발직	57	13.0702	2.85894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직업에 따라서 구분된 집단의 평균차이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F값 15.072, 유의확률 .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F값 .167, 유의확률 .919로 평균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집단은 연구개발 직무유형을 가진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 운영, 기획, 관리와 같은 주로 실내 근무를 많이 하는 일반사무 직무유형을 가진 집단이 그 뒤를 이었고, 회사의 임원 및 와 같은 관리직무 유형을 가진 집단, 기술, 설비, 부설, 제조 등과 같은 기능직무 유형을 가진 집단의 순으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

본 연구는 앞서 실시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유권자들의 다양한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이어서 잠재적 매개변수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과 종속변수인 장애인 선거환경 구성에 따른 선거참여에는 어떠한 평균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장애인 유권자 성별

장애인 유권자들을 성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t-test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결과이다.

아래의 [표4-14]에 나타난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의 t값이 1.462, 유의확률이 .145, 정치적 효능감의 t값이 .985, 유의확률이 .326, 투표참여의도의 t값이 1.738, 유의확률이 .084로 평균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던 모든 측정변수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유의수준인 .05 미만의 값이 관측되지 않고 있어 성별에 따른 집단의 구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표 4-14] 성별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정치적 관심	남 성	171	7.6433	1.31784	1.462	.145
	여 성	50	7.3400	1.18855		
정치적 효능감	남 성	171	7.8012	1.54013	.985	.326
	여 성	50	7.5600	1.45910		
투표참여 의도	남 성	171	27.1871	4.78479	1.738	.084
	여 성	50	25.8800	4.28400		

(2) 장애인 유권자 연령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들을 그들의 연령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집단별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가 어떠한 평균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4-1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의 F값은 6.987, 유의확률은 .000이었으며, 정치적 효능감의 F값은 7.312, 유의확률 .000, 투표참여의도의 F값은 4.264, 유의확률은 .006으로 모든 측정변수에서 연구자가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정한 유의수준인 .05 보다 낮은 값의 유의확률이 나타나고 있어,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이 40세~50세 미만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정치적 관심을 나타나고 있었으며, 20세~30세 미만, 50세~60세 미만, 30세~40세 미만의 순으로 평균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40세~50세 미만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50세~60세 미만 집단이 그 뒤를 이었고 20세~30세 미만 집단, 30세~40세 미만의 순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선거참여의 경우엔 50세~60세 미만의 연령집단이 가장 높은 투표참여의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40세~50세 미만 집단, 30세~40세 미만 집단이 뒤를 이었고, 20세~30세 미만 집단의 투표참여의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4-15] 연령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선거참여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치적 관심	20~30세미만	37	7.6486	1.53145	6.987	.000
	30~40세미만	139	7.3453	1.24942		
	40~50세미만	34	8.4412	.92740		
	50~60세미만	4	7.5000	1.00000		
정치적 효능감	20~30세미만	37	7.6216	1.68904	7.312	.000
	30~40세미만	139	7.5324	1.51945		
	40~50세미만	34	8.8235	.86936		
	50~60세미만	4	8.2500	1.50000		
투표참여 의도	20~30세미만	37	27.1622	5.62985	4.264	.006
	30~40세미만	139	26.1583	4.27032		
	40~50세미만	34	29.0588	5.05090		
	50~60세미만	4	30.0000	2.94392		

(3) 장애인 유형

조사대상자들이 각 집단별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를 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는 아래의 [표4-16]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의 F값이 2.625, 유의확률이 .025였으며, 정치적 효능감의 F값이 3.209, 유의확률이 .006, 선거참여의 F값이 4.173, 유의확률이 .001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선거참여의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었다.

장애인 유형에 따른 정치적 관심은 지적장애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정신장애 활용하고 있다는 집단, 청각장애인 집단, 뇌병변장애인 집단, 지체장애인 집단, 시각장애인 집단의 순으로 정치적 관심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장애인 유형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치적 관심	지체장애인	52	7.4038	1.38987	2.625	.025
	뇌병변장애	60	7.5667	1.18417		
	시각장애	34	7.2059	1.22547		
	청각장애	30	8.0000	1.43839		
	지적장애	8	8.3750	.74402		
	정신장애	14	8.1429	1.02711		
정치적 효능감	지체장애인	52	7.4615	1.69731	3.209	.008
	뇌병변장애	60	7.6000	1.39247		
	시각장애	34	7.4412	1.59908		
	청각장애	30	8.3333	1.56102		
	지적장애	8	8.7500	.70711		
	정신장애	14	8.5714	1.15787		
투표참여 의도	지체장애인	52	26.8269	5.32004	4.173	.001
	뇌병변장애	60	26.2833	4.30645		
	시각장애	34	25.6471	3.59193		
	청각장애	30	27.5000	5.56931		
	지적장애	8	32.3750	2.66927		
	정신장애	14	29.8571	3.97796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적장애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

을 나타내었으며, 정신장애인 집단이 그 뒤를 이었고, 청각장애인 집단, 뇌병변장애인 집단, 지체장애인 집단, 시각장애인 집단의 순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유형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의 차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선거참여를 나타낸 집단은 장애인 유형이 지적장애인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집단, 청각장애인 집단, 지체장애인 집단, 뇌병변장애인 집단, 시각장애인 집단의 순으로 투표참여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장애인 학력

조사대상자들이 장애인 학력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평균차이는 어떠한지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아래의 [표4-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4-17] 장애인 학력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치적 관심	중졸이하	138	7.4275	1.31742	5.803	.004
	고졸	19	8.4737	.90483		
	대졸 이상	15	7.3333	1.29099		
정치적 효능감	중졸이하	138	7.6014	1.57322	6.451	.002
	고졸	19	8.8947	.87526		
	대졸 이상	15	7.3333	1.79947		
투표참여 의도	중졸이하	138	26.3478	4.47157	4.111	.018
	고졸	19	29.3684	4.71653		
	대졸 이상	15	27.6000	3.90604		

이에 따르면, 장애인 학력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 의도는 정치적 관심의 F값이 5.803, 유의확률이 .004, 정치적 효능감의 F값이 6.451, 유의확률이 .002, 투표참여의도의 F값이 4.111, 유의확률이 .018로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었다.

정치적 관심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 집단은 고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졸이하 집단, 대졸이상 집단의 순으로 장애인 선거환경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정치적 효능감의 경우엔 역시 정치적 관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졸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 대졸이상 집단의 순으로 평균값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장애인 유권자 지역

조사대상자들이 장애인 유권자 지역에 따라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산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4-18]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변수로는 F값이 3.289, 유의확률이 .022인 정치적 관심과 F값이 3.679, 유의확률이 .013인 정치적 효능감 및 F값이 4.819, 유의확률이 .003인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치적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수도권 집단이었으며, 영남권인 집단, 충청권 집단, 호남권 집단의 순으로 정치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효능감은 수도권 집단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영남권인 집단, 충청권 집단, 호남권 집단의 순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투표참여의도에 있어서도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단이 가장 높은 투표참여의도 인식을 나타내었으며, 영남권인 집단, 충

청권 집단, 호남권 집단의 순으로 투표참여의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표 4-18] 유권자 연령에 따른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치적 관심	영남권	9	8.0000	1.32288	3.289	.022
	호남권	77	7.3506	1.32552		
	충청권	105	7.5619	1.29291		
	수도권	22	8.2727	1.03196		
정치적 효능감	영남권	9	8.4444	1.23603	3.679	.013
	호남권	77	7.4286	1.58470		
	충청권	105	7.7905	1.51718		
	수도권	22	8.5000	1.14434		
투표참여 의도	영남권	9	29.4444	6.76593	4.819	.003
	호남권	77	26.5065	4.77004		
	충청권	105	26.2762	4.32901		
	수도권	22	29.9091	4.56601		

(6) 장애인 유권자 직업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의 직업에 따라서는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인지 및 투표참여의도가 어떠한 평균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산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4-19]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의 F값은 2.119, 유의확률이 .099였으며, 정치적 효능감의 F값은 1.766, 유의확률은 .155로 나타났고, 투표참여의도의 F값은 1.939, 유의확률은 .124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과 투표참여의도에 관련된 모든 변수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유권자들을 직업에 따라 구분함에 있어서는 장애인 유권자 심리

요인 및 선거참여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것에 의미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는 연구설계의 단계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H11-1, H11-2, H11-3, H11-4, H11-5를 검증할 수 있었으며,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는 변수들을 토대로 장애인 선거환경들의 연령, 학력 및 장애유형 등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표 4-19] 유권자 학력에 따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차이

구 분		N	평균값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정치적 관심	사무, 기획, 관리 등 일반사무직	32	7.9375	1.13415	2.119	.099
	기술, 설비, 제조 등 기능직	115	7.4522	1.29265		
	임원 및 등 관리직	4	6.7500	1.25831		
	연구개발직	57	7.7368	1.26104		
정치적 효능감	사무, 기획, 관리 등 일반사무직	32	8.1250	1.07012	1.766	.155
	기술, 설비, 제조 등 기능직	115	7.6261	1.50123		
	임원 및 등 관리직	4	6.7500	1.25831		
	연구개발직	57	7.8947	1.60005		
투표참여 의도	사무, 기획, 관리 등 일반사무직	32	27.4688	4.24252	1.939	.124
	기술, 설비, 제조 등 기능직	115	26.2609	4.69245		
	임원 및 CEO 등 관리직	4	28.7500	7.13559		
	연구개발직	57	27.8596	4.43782		

제 2 절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유권자 심리요인 및 투표참여의도의 관계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절차로써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 가정하고 있는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및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공선성통계량

본 연구는 변수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분산확대인자를 뜻하는 공선성통계량(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확인함으로써 독립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적정한지를 알아보고, 다중회귀분석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공선성통계량은 아래의 [표 4-20]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분석의 결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요인의 공차는 .899 VIF는 1.112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요인의 공차는 .899 VIF는 1.112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의 공차는 .843, VIF는 1.187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정치적 효능감의 공차는 .869, VIF는 1.151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변수들의 공선통계량 VIF의 값이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10.000에 근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같은 결과에 따라서 모든 독립변수들이 적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20]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및 유권자 심리요인의
공선성통계량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공 차	.899	.899
공선통계량 VIF	1.112	1.112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정치적 관심	정치적 효능감
공 차	.843	.869
공선통계량 VIF	1.187	1.151

2) 각 회귀모형에 따른 잔차의 다중공선성 진단(Durbin-Watson)

다음으로 본 연구는 변수들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계된 회귀모형이 가지는 잔차들 사이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 통계량을 분석하도록 하였다.

[표 4-21] Durbin-Watson의 잔차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구 분	회귀모형	Durbin-Watson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 투표참여의도	1.801
2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 → 투표참여의도	1.968
3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 정치적 관심	2.116
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 정치적 효능감	1.820
5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정치적 관심 → 투표참여의도	1.815
6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정치적 효능감 → 투표참여의도	1.819

잔차는 회귀모형을 통해 얻어진 추정값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 관측값의

차이인 편차를 의미하며, 회귀모형에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관계된 회귀모형들의 잔차에 다중공선성이 없어야만 회귀모형이 적합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과 4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는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분석결과 1.7에서 2.3 사이의 값인 경우 잔차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어 회귀모형이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 본 연구가 가설의 검증을 위해 확인하고 있는 모든 회귀모형에서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표4-21]과 같이 2.0의 값에 가깝게 수렴하고 있었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이 만족되고 있었다.

따라서 앞서 실시한 공선성통계량의 확인결과와 잔차의 독립성 확인 결과에 따라서 본 분석에 있어서는 다중공선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회귀모형들이 모두 적합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유권자 심리요인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잠정적 매개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 H1, H2, H3, H4를 검증할 목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4-22]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2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정치적 관심의 관계

모델요약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수정값의 표준오차
.397a	.157	.150	1.19325

분산분석a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값	58.221	2	29.110	20.445	.000a
잔 차	311.820	219	1.424		
총 합	370.041	221			

a. 독립변수: (상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b.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계 수a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	4.892	.428		11.418	.000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084	.021	.276	4.072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085	.025	.231	3.383	.001

a.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먼저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t 값이 4.072, 유의확률이 .000이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t 값이 3.383, 유의확률이 .001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모두 정치적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경우 표준화 베타값의 크기가 .266으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한 단위만큼 높아질수록 정치적 관심이 26.6%만큼 영향을 받아,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에 있어서도 표준화 베타값이 .221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치적 관심이 22.1% 영향을 받아 그 값이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임이 검증되고 있었다.

위의 회귀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F 값이 20.445,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미성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회귀선이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는 회귀식 설명력을 뜻하는 조정된 R 제곱의 값이 .150으로 15.0%만큼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인 정치적 관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23]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23] 장애인 선거환경 요인과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

모델요약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수정값의 표준오차
.362a	.131	.123	1.42432

분산분석a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값	67.093	2	33.547	16.536	.000a
잔 차	444.281	219	2.029		
총 합	511.374	221			

- a. 독립변수: (상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b. 종속변수: 정치적 효능감

계 수a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	4.921	.511		9.622	.000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113	.025	.307	4.616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053	.030	.119	1.786	.075

- a. 종속변수: 정치적 효능감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경우 t값이 4.616,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경우엔 t값이 1.786, 유의확률이 .075로 연구자가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한 유의수준인 .05보다 높은 값의 유의확률이 나타나고 있었으므로 통계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적 관련성이 검증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표준화 베타값의 크기가 .307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높아지면 높아질 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30.7% 만큼 영향을 받아 그 값이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회귀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F값이 16.536, 모형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미성을 획득하고 있었으며, 독립변수들이 투입된 회귀선이 종속변수를 설명하고 있는 회귀식 설명력을 뜻하는 조정된 R제곱의 값이 .123으로 12.3%만큼 회귀모형이 종속변수인 정치적 효능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종속변수인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정하고 있는 연구가설 H5와 H6을 검증하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와의 영향력을 비교 할 목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4-2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2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

모델요약

R	R 제곱	조정된 R 제곱	수정값의 표준오차
.681a	.463	.458	3.45416

분산분석a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회귀값	2254.080	2	1127.040	94.462	.000a
잔 차	2612.933	219	11.931		
총 합	4867.014	221			

a. 독립변수: (상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b. 종속변수: 선거참여

계 수 a

모 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상수)	10.440	1.240		8.418	.000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425	.059	.374	7.161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642	.073	.462	8.851	.000

a. 종속변수: 선거참여

위에 나타난 분석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t값은 7.161, 유의확률은 .000이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t값은 8.851, 유의확률은 .000으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이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표준화 베타값의 크기가 .374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의도가 37.4% 만큼 영향을 받아 함께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에 있어서도 표준화 베타값의 크기가 .462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의도 역시 46.2% 만큼 영향을 받아 높아지는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4.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 요인과 투표참여의도 간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 검증

[표 4-25]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모형구분	Step1		Step2		Step3	
종속변수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의도		투표참여의도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	유의 확률	표준화 베타값	유의 확률	표준화 베타값	유의 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266	.000	.374	.000	.307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221	.001	.462	.000	.407	.000
정치적 관심	-	-	-	-	.250	.000
조정된 R제곱	.150		.458		.509	
모형적합도 F	20.445		94.462		77.396	
Slg.	.000		.000		.000	

위의 [표4-25]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step1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유의확률 .001)은 잠재적 매개변수인 정치적 관심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검증되고 있었으며, step2에서 독립변수로 설정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유의확률 .000)이 모두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검증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step3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그리고 잠재적 매개변수인 정치적 관심이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표준화 베타값이 .307, 유의확률이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표준화 베타값이 .407, 유의확률이 .000, 정치적 관심의 표준화 베타값이 .250,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와 잠재적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고 있었다.

따라서 매개변수가 투입된 step3에서 검증되고 있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영향력인 .307 보다 step2에서 검증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영향력 .374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step2에서 검증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영향력 .407 보다 step3에서 검증된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영향력 .462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가 검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 간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표 4-26]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모형구분	Step1		Step2		Step3	
종속변수	정치적 효능감		투표참여의도		투표참여의도	
독립변수	표준화 베타값	유의 확률	표준화 베타값	유의 확률	표준화 베타값	유의 확률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	.307	.000	.384	.000	.309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119	.075	.472	.000	.437	.000
정치적 효능감	-	-	-	-	.212	.000
조정된 R제곱	.123		.458		.496	
모형적합도 F	16.536		94.462		73.354	
SIg.	.000		.000		.000	

위의 [표4-26]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장애인 선거환경 구성에 따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step1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은 잠재적 매개변수인 정치적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검증되고 있었으나,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경우엔 유의확률이 .075로 잠재적 매개변수인 정치적 효능감과 통계적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step2에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유의확률 .000)이 모두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step3에서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선거참여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 그리고 잠재적 매개변수인 정치적 효능감이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표준화 베타값이 .309, 유의확률이 .000,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의 표준화 베타값이 .437, 유의확률이 .000, 정치적 관심의 표준화 베타값이 .212,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투입된 모든 독립변수와 잠재적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투표참여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고 있었다.

따라서 매개변수가 투입된 step3에서 검증되고 있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영향력인 .309 보다 step2에서 검증된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의 영향력인 .374가 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장애인 선거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어서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에 있어서는 step1에서 독립변수의 매개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유권자 심리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본 연구가 연구 설계의 단계에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하여 가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구성하였던 연구가설 H1, H2, H3, H4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4-27]과 같다.

[표 4-27]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유권자 심리요인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구 분	연 구 가 설	검증 결과
H 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정치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정치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3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의 검증결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유의확률 .000)은 모두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과 정치적 효능감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검증되고 있고, 통계적 관련성이 나타난 모든 변수들의 관계가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연구설계의 단계에서 설정하였던 가설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고 있었으며, 그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연구가설 H1, H2, H3, H4 는 채택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과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에 관한 가설 H4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어 해당 연구가설은 기각되었다.

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에 관한 가설검증

다음으로 본 연구가 연구 설계의 단계에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하여 가정하고 변수들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구성하였던 연구가설 H5, H6을 검증하고 있는 결과는 아래의 [표 4-28]와 같다.

[표 4-28]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구 분	연 구 가 설	검증 결과
H 5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투표참여의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 6	장애인 선거환경 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투표참여의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의 검증결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유의확률 .000)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유의확률 .000)이 모두 장애인 투표참여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가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투표참여의도의 관계에 관하여 설정하였던 가설의 영향력이 검증되고 있었으며,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증가할수록 투표참여의도 역시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관계에 관한 방향성이 일치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가설 H5, H6은 채택되었다.

3.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던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설정한 연구가설 H7, 8, H9, H10의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4-29]과 같다.

[표 4-29]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구 분	연구 가 설	검증 결과
H 7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투표 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이 매개할 것이다.	채택
H 8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 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채택
H 9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투표 참여의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채택
H 10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 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의 검증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 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잠정적 매개변수인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속에서 매개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그 영향력이 검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검증을 가정하고 있는 해당 연구가설 H7, H8, H9, H10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연구가설 H10은 기각되었다.

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가설검증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을 장애인 유권자들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 및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과 선거참여가 어떠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연구가설 H11-1, H11-2, H11-3, H11-4, H11-5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가설의 검증결과는 아래의 [표4-30]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30]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평균차이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구분	연구가설		검증결과
H11-1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유권자성별,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 유권자 직업	부분 채택
H11-2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유권자성별	부분 채택
H11-3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	부분 채택
H11-4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정치적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	부분 채택
H11-5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 투표참여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	부분 채택

가설의 검증결과,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에 있어서는 유권자성별,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장애인 유권자 학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선거정보 접근 기반 요인에 있어서는 유권자 성별만이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에 있어서는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으로, 정치적 효능감에 있어서는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으로 집단을 구분하였을 경우,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며, 선거참여에 있어서는 유권자연령, 장애인 유형, 장애인 등급, 유권자 연령으로 유권자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고 있었다.

따라서 평균차이 검증을 확인하고자 설정하였던 연구가설 H11-1, H11-2, H11-3, H11-4, H11-5는 모두 사회통계학적 특성 중 일부분에 있어서 그 평균차이가 검증되고 있었으므로 부분채택 되었다.

이러한 가설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선거환경들의 선거참여를 높여주기 위한 개인행태와 제도적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 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력을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모두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은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효능감과 통계적 관련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인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은 모두 투표참여의도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앞서 실시한 분석의 결과를 전제로, 장애인 선거참여 환경요인과 선거참여의 긍정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장애인 유권자 심리요인인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선거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치적 관심의 매개효과가 검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 역시 검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 선거참여 환

경요인인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이 투표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정치적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었다.

2. 정책적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거소지로부터 투표소 까지 이동하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통 편의시설부터 투표소에서 투표까지 필요한 투표소 편의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를 나타내는 투표소 이동환경 요인과 선거 후보자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장애인 유권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도에 대한 인지를 나타내는 선거정보 접근기반 요인을 개선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러한 관계를 정치적 관심과 정치적 효능감이 매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피선거자가 선거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유권자들 스스로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참여 관련 본원적 서비스나 지원적 서비스가 증대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의 시사점을 토대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도록 하였다.

1)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 개선방안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심층인터뷰에 응답한 장애인 피선거자들은 장애인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 피선거권자들이 응답한 내용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투표소 이동환경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투표소 ‘교통편의 제공’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종교시설도 투표소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당일 본인이 원할시 교통편의 제공과 투표소가 장애인 출입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여의치 않을시 종교시설도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야하며, 투표소에 충분한 선거용 보조기구 보급,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별 장애인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사건을 접수시켜 시정해 나가야 한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 7개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비장애인의 인식부족, 왜곡·편향된 시선 등이 문제이다. 법의 제정과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효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7월 개정되어 10월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장애인이 지방의회 회의 등을 방청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둘째, 투표소 전용 시설을 마련하고 편의시설 잘 갖춰진 투표소는 장애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투표소를 정할 때 주변시설이 마땅치 않다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투표소 전용 시설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비용부담이 따르겠지만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올바른 투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이 같은 곳을 투표소로 선정하는 한편, 장애인 투표참여가 가능한 투표소 위치 및 갖춰진 편의시설 사항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투표참여율이 확대될 것이다.

셋째, 모든 장애인 유권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소에 접근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해선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각 장애인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각 투표소마다 선거보조용구, 보조원 등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투표소를 되도록 1층으로 선정하되, 안될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하고 계단이 조금이라도 있을시 경사로 설치, 차량 지원 등 이동편의 제공해야 한다.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 단체를 중심으로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범연대를 구성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에까지 투표장의 1층 또는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권리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법률까지는 아니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전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며,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기보다는 각 장애인단체의 중앙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문제로 판단된다.

넷째, 인터넷 투표 개발 등 전자투표 도입이 필요하다. 참정권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편의시설인데 선거투표소에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개선 방안으로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선관위에 상당한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편의시설 미비로 참정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거소투표를 유도하는 것도 일시적인 방안이긴 하나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투표를 전자투표로 한다면 특정지역의 투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확실한 정당 편의라면 장애인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투표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참정권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편의시설인데 선거투표소에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개선 방안으로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선관위에 상당한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편의시설 미비로 참정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거소투표를 유도하는 것도 일시적인 방안이긴 하나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투표를 전자투표로 한다면 특정지역의 투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선거정보 접근성 기반 개선 방안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심층인터뷰에 응답한 장애인 피선거자들이 응답한 내용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성 기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선거참여 보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점자 선거공보물 제작 및 내용, 선거 방송의 수화·자막방송 실시 등에 있어서 강행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 규정들을 강행규정화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애인의 선거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로 장애인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이 비장애인 보다 더 제한적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장애인 선거처럼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를 발송해주는 선거운동의 공영관리 마저 실시하지 못하므로, 장애인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TV와 인터넷 매체에 의존해야 하는 애로가 있다. 비장애인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획득이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정보 전달 특성이 TV와 다르고 수요층도 상이한 인쇄매체인 신문에 대해 전면 규제한 광고를 일정한 횟수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UCC 등 신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속한 기술발전 추세를 좇아 규제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국내가 아닌 국외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전송되는 콘텐츠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실효성 없는 규제만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장애인 선거운동에 대해 관리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장애인 신문광고, 장애인 선거정보 통합 사이트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

여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뢰도 높은 공적기관이 제공함으로써 유권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지 않고도 정당이나 후보자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투표참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개선방안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심층인터뷰에 응답한 장애인 피선거자들이 응답한 내용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 유권자들에게 국회 내에 장애인 비례대표 의석과 같이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애인 유권자와 일반 국민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장애인 유권자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자신들의 대표자로 하여금 국회에서 자신들을 위한 입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게 하고, 장애인의 관점에서 국가적 관심사에 대한 토론에 참석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WTO(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 비율 15%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등록장애인 인구 251만명(5%)에 대해서도 정치참여 보장 제도가 미약하다. 이에 장애인의원 비율은 WTO에서 권고하는 정치참여보장 비율 15%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율인 10%(국회, 지방의회)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장애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뿐 아니라 대의원 수를 일정비율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다수의 장애인 후보 출마가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국방방 곳곳 지역구에 출마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도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선거법에는 장애인 피선거권자에게 1명씩 선거운동원을 늘려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 피선거권자의 제약된 선거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형별 장애를 갖고 있는 피선거권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거운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다양한 계층, 연령 등에서 피선거권자가 배출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피선거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단체의 노력도 필요한 때이다. 장차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문제. 수화통역사 의무 지원문제 등 시험에 대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줘야 함.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 있다.

세째, 장애인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으로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직접 투표하고, 내가 뽑은 후보자에 의해 장애인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투표율은 점점 향상될 것이다. 이에 장애인 투표율이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장애인 표를 두려워 할 것이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든 사항들은 어찌먼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선거를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야 하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만들어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본인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필요하며, 유력한 후보를 선정해 출마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전 선거구를 장애인단체에서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1) 단행본

- 강원택, 『한국의 선거정치:이념·지역·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2001.
- 국회사무처, 『공명선거 실현방안』, 2001.
- 국회입법조사처, 『2008미국 대선후보의 주요정책 비교와 시사점』, 2008.
- _____, 『2009입법 및 정책 현안과제』, 2009.
- 김광수, 『선거와 정당』, 서울 :박영사, 2001.
- 김광웅, 『방법론 강의』, 서울:박영사, 1996.
- 김상욱 외, 『한국종합사회조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 김세훈, 『공공부문의 고객지향성 확보를 위한 정책마케팅』, 서울:한국학술정보, 2006.
- 김영석, 『사회조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2008.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2007.
-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2008.
- 박동천,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서울 :책세상, 2000.
- 박상철, 『한국정치법학론』, 서울 :리북, 2008.
- 박승식, 『선거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대영문화사, 1985.
- 전용주 외,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조기숙, 『합리적 선택: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6.
- _____,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서울 :나남출판, 2000.
- 조진만·최준영, 『선거제도의 변화와 17대 총선』,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국의 선거제도』, 2001.
- _____, 『각 국가의 재외선거 위법행위 발생사례와 투표율 향상

- 을 위한 방안(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09-1호)』, 2009.
- _____,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2003.
- _____,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2009.
- _____, 『국외부재자투표 도입방안 연구』, 2006.
- _____, 『국외부재자투표 도입에 관한 재외국민 여론조사』, 2007.
- _____, 『미국 연방선거운동 관계법』, 2004.
- _____,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I』, 2005.
- _____,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분석집 II』, 2005.
- _____, 『인터넷 선거운동(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2009-5호)』, 2009.
- _____, 『일본 공직선거법령집 I (한국어판)』, 2004.
- _____, 『일본 재외선거편람』, 서울 : 일지사, 2007.
- _____, 『재외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2009.
- _____,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참여중심의 민주시민교육』, 2006.
- _____, 『제17대 대통령선거(2007.12.1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2008.
- _____,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2008.
- _____, 『제17대 대통령선거 총람』, 2008.
- _____,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4.9)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2008.
- _____,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2008.
- _____,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2008.
- _____, 『주요국가의 투표참여 확대 제도 및 선거범죄조사와 형사소추(해외통신원 지정과제 제6호)』, 2008.

2) 논문

- 강경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참여·기권에 관한 실증적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제10집 2호, 2002.
- 강명세,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개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 2005.
- 강원택,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002.
- 강정인, “정치불참의 의미와 성격”, 김광웅(편), 『정당, 선거, 여론』,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6.
- 김광웅, “민주의식과 투표행태”, 『제6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1985.
- _____,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소고”, 김광웅(편), 『정당, 선거, 여론』, 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6.
- 김대균, “선거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상보성 고찰”,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1집 2호, 2008.
- 김왕식, “투표 참여와 기권: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6집, 2008.
- 김 욱,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 푸른길, 1998.
- 김형준, “한국의 선거와 민주시민교육”, 선거연수원, 『현대사회의 변동과 민주시민 교육: 도전과 대응』, 서울, 2008.
- 박이석,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 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박찬욱, “유권자의 선거관심도, 후보인지능력과 투표참여의사: 제14대 총선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3호, 1992.
- 엄기홍, “합리적 선택이론과 투표행태 : 경제학적 관점”,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 한울, 2009.

- 이남영, “투표참여와 기권”,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1993.
- 이현우, “Lisrel기법을 이용한 기권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분석:15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국정치학회 월례학술발표회 논문집』, 1997.
- 임성학,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투표행태:사회학적 관점”,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전용주, “투표행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조성대, “투표 참여와 기권”, 전용주 외,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_____,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2호, 2006.
- 조진만,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최준영, “선거 이슈와 투표행태”,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 한정택,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사회심리학적 관점”, 『투표행태의 이해』, 서울 :한울, 2009.

2. 외국 문헌

1) 문헌

- Campbell, Angus, G. Gerald and W. E. Miller, *The Voter Decides*, EvanstonIllinois:Row Peterson, 1954.
- Crozier, M.J., Samuel, P. Huntington, and J. Watanuki,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2) 논문

- Burnham, & WalterDean, "The Changing Shape of the American Political Univer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9,

1965.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Cleavage Structure,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Seymour Martin Lipset and Stein Rokkan(eds.), Party System and VoterAlignments: Cross 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The Free Press, 1967.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Resources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 :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6), 1997.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1968.



【부 록】

양적 설문지

ID	:	:	:
----	---	---	---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본 설문지는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에 관한 설문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며,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장애인이 피선거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데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기에 상대 후보와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선거권자 역시 선거 후보자의 공약·정책 등의 정보접근이 어렵기에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기본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환경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 입후보자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및 제도 개선과 선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귀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설문조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양적 설문지 문항 *

구 분	총 문 항 수	연 번	질문 유형	문 항 수
I. 인적 사항 일반	6	① ~ ⑥	인적 사항	6
II. 선거참여 실태 및 선거의식	12	① ~ ⑧	선거참여 실태 및 만족도	8
		⑨ ~ ⑫	선거의식	4
III. 투표소 편의시설 이용 여부 및 편리성	10	① ~ ⑩	편의시설 이용 여부 및 편리한 정도	10
IV. 투표환경	12	① ~ ⑥	정보 습득 환경	6
		⑦ ~ ⑫	투표소 환경 및 개선사항	6
V. 후보자 정보접근 획득방법 에 대한 질문	10	① ~ ⑩	후보자 정보를 얻기 위한 이용 도구 및 편리한 정도	10
합 계	50			50

I. 인적 사항 일반

각 문항에 귀하와 관련된 항목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 1) 남자 ☐ 2) 여자
2. 지 역	☐ 1) 서울특별시 ☐ 2) 경기도 ☐ 3) 강원도 ☐ 4) 인천광역시 ☐ 5) 대전광역시 ☐ 6) 대구광역시 ☐ 7) 부산광역시 ☐ 8) 광주광역시 ☐ 9) 울산광역시 ☐ 10) 경상남도 ☐ 11) 경상북도 ☐ 12) 전라남도 ☐ 13) 전라북도 ☐ 14) 충청남도 ☐ 15) 충청북도 ☐ 16) 제주도 ☐ 17) 기타 ()
3.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1) 간장애 ☐ 2) 간질장애 ☐ 3) 뇌병변장애 ☐ 4) 시각장애 ☐ 5) 신장장애 ☐ 6) 심장장애 ☐ 7) 안면장애 ☐ 8) 언어장애 ☐ 9) 자폐성장애 ☐ 10) 장루·요루장애 ☐ 11) 정신장애 ☐ 12) 지적장애 ☐ 13) 지체장애 ☐ 14) 청각장애 ☐ 15) 호흡기장애 ☐ 1) 1급 ☐ 2) 2급 ☐ 3) 3급 ☐ 4) 4급 ☐ 5) 5급 ☐ 6) 6급
4. 연 령	☐ 1) 20대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 6) 70대 이상
5. 학 력	☐ 1) 무학 ☐ 2) 초등학교 졸업(일반) ☐ 3) 초등학교 졸업(특수) ☐ 4) 중학교 졸업(일반) ☐ 5) 중학교 졸업(특수) ☐ 6) 고등학교 졸업(일반) ☐ 7) 고등학교 졸업(특수) ☐ 8) 대학 졸업 ☐ 9) 대학교 졸업 ☐ 10) 대학원 이상 ☐ 11) 기타 ()
6. 직 업	☐ 1) 무직 ☐ 2) 사무직 ☐ 3) 전문직 ☐ 4) 생산직 ☐ 5) 공무원 ☐ 6) 자영업 ☐ 7) 서비스업 ☐ 8) 전업주부 ☐ 9) 학생 ☐ 10) 임시고용(아르바이트 및 일용직 등) ☐ 11) 농어업, 임업, 수산업 ☐ 12) 단순노무(노점, 막노동 등) ☐ 13) 기타()

II. 선거참여 실태 및 선거의식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참여했다
- ☐ 2) 관심이 없어서
- ☐ 3) 선거일을 몰라서
- ☐ 4) 투소표의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 ☐ 5) 참여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 ☐ 6)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공약을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
- ☐ 7) 기타 ()

2. 귀하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으셨습니까?

- ☐ 1) 투표하지 않았다
- ☐ 2) 정책과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보고
- ☐ 3) 후보자의 인물 됴됨이를 보고
- ☐ 4) 정당에 대한 신뢰감
- ☐ 5) 자신과의 관계(학연·지연·혈연)
- ☐ 6) 기타 ()

3. 귀하는 후보를 결정할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 ☐ 1) 투표하지 않았다
- ☐ 2) 가족 및 지인
- ☐ 3)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
- ☐ 4) 방송매체 및 책자
- ☐ 5) 선거운동원
- ☐ 6) 각 정당 입후보자
- ☐ 7) 기타 ()

4. 귀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 결과는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만족하고 있다
- ☐ 2) 내세웠던 공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 3) 내가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다
- ☐ 4) 당선되고 나서 신념이 변한 것 같다
- ☐ 5)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 ☐ 6) 정당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
- ☐ 7) 기타 ()

5.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 아래 보기 정당은 18대 국회의원 목록(지역구별) 토대로 작성

- | | |
|--|------------------------------------|
| ☐ 1) 없다 | ☐ 2) 한나라당 |
| ☐ 3) 민주당 | ☐ 4) 미래희망연대 |
| ☐ 5) 자유선진당 | ☐ 6) 민주노동당 |
| ☐ 7) 창조한국당 | ☐ 8) 진보신당 |
| ☐ 9) 기타 (_____) | |

6. 귀하는 위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 ☐ 2)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맞아서
- ☐ 3) 정당의 정책이 좋아서
- ☐ 4) 소외계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 ☐ 5)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힘쓰는 것 같아서
- ☐ 6) 정당 운영방식이 좋아서
- ☐ 7) 기타 (_____)

7. 귀하는 내년에 있을 총선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실 생각입니까? 만약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참여할 생각이다
- ☐ 2) 아직 모르겠다(공약 보고 결정)
- ☐ 3) 당선 후 공약 실천이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서
- ☐ 4) 투표소 접근이 힘들어서(점자, 경사로, 활동보조인 등 편의시설 부족)
- ☐ 5) 이동지원수단의 부족
- ☐ 6)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 ☐ 7) 기타 (_____)

8. 귀하는 내년에 있을 총선 및 대통령선거에 장애인 후보가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1) 무조건 지지한다
- ☐ 2) 공약을 보고 결정한다
- ☐ 3) 능력을 보고 결정한다
- ☐ 4) 정당을 보고 결정한다
- ☐ 5) 별로 관심없다
- ☐ 6) 기타 (_____)

9. 귀하는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 2) 관심 있는 편이다 |
| ☐ 3) 보통이다 | ☐ 4) 관심 없다 |
| ☐ 5) 전혀 관심 없다 | |

10. 귀하는 각 정당이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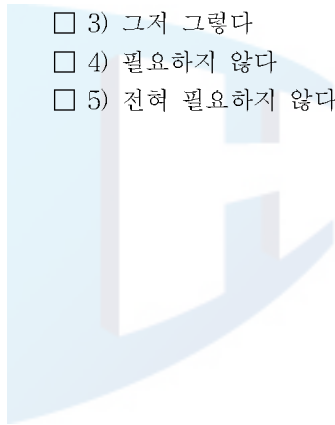
- | | |
|--------------------------------------|---------------------------------------|
| ☐ 1) 매우 관심 있다 | ☐ 2) 관심 있는 편이다 |
| ☐ 3) 보통이다 | ☐ 4) 관심 없다 |
| ☐ 5) 전혀 관심 없다 | |

11. 귀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정부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노력하는 것 같다
- ☐ 2) TV토론회 및 방송연설의 수화 및 자막방송이 부족하다
- ☐ 3)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물 제작, 보급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 4) 후보에 대한 정보습득이 힘들다
- ☐ 5) 아직까지 투표소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 ☐ 6) 기타 (_____)

12. 귀하는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가 되어 정치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필요하다
- ☐ 2) 필요하다
- ☐ 3) 그저 그렇다
- ☐ 4) 필요하지 않다
- ☐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HANSUNG
UNIVERSITY

Ⅲ. 투표소 편의시설 이용 여부 및 편리성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한 시설만 표시)

구분	질 문	응답보기	편리한 정도					
			(이용한 분만 응답 ☒ 표)					
편의시설종류			1)이용안함	2)매우편리	3)편리	4)보통	5)불편	6)매우불편
1.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점자블록)								
2. 장애인 전용 주차장								
3. 출입문(점자블록, 규격)								
4. 계 단								
5. 엘리베이터								
6.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7. 기표대 / 장애인 겸용 기표대								
8. 투표소 위치 안내표시판(점자)								
9. 투표보조용구(점자투표용지)								
10. 기 타 ()								

Ⅳ. 투표환경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선거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편하십니까? 만약 불편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정보 얻기가 편했다
☐ 2) 수화방송 화면이 너무 작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 3) 자막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 4) 점자형 선거공보물이 없거나 내용이 부족하다(공약 無)
☐ 5) 통역사들이 내용을 빼먹는 것 같다
☐ 6)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 7) 기타 ()

2. 귀하는 선거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 ☐ 1) 정보를 얻지 못했다
☐ 2) TV 및 라디오
☐ 3) 선관위 홈페이지
☐ 4) 각 후보자 홈페이지
☐ 5) 간담회·토론회
☐ 6) 안내지나 선거공보물
☐ 7) 가족 및 지인
☐ 8) 기타 ()

3. 귀하는 선거 때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로부터 투표참여권유 및 각 정당 입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4. 귀하는 선거 때 후보의 방송연설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 1) 5번 이상

☐ 2) 3~4번

☐ 3) 1~2번

☐ 4) 안봤다

☐ 5) 보질 못했다

5. 방송연설을 볼 때 불편했던 점 및 안보거나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막방송이 안돼서

☐ 2) 수화방송이 안돼서

☐ 3) 방송매체가 없어서

☐ 4) 방송 일자·시간을 몰라서

☐ 5) 관심이 없어서

☐ 6) 기타 (_____)

6. 귀하는 선거 때 투표방법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 1) 받지 못했다

☐ 2) 문자안내로 받았다

☐ 3) 장애인단체를 통해 안내 받았다

☐ 4)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보물을 통해 안내 받았다

☐ 5) 선거운동단체를 통해 안내 받았다

☐ 6) 가족, 친척, 지인의 도움으로 안내 받았다

☐ 7) 기타 (_____)

7.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 가는 것이 편하셨습니까? 만약 불편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편했다

☐ 2) 움직이기 불편해서 투표하지 않았다

☐ 3) 가는 길에 공사를 하는 구간이 있어서 불편했다

☐ 4)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불편했다

☐ 5)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안내인이 없어서) 불편했다

☐ 6) 투표소가 2층 이상이어서(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했다

☐ 7) 기타 (_____)

8. 귀하는 선거 때 투표함에 표를 넣기까지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 1) 투표하지 않았다

☐ 2) 집에서 투표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었다

☐ 3) 계단이 많아서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 4)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불편했다

☐ 5) 휠체어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공간이 좁았다

☐ 6) 선거안내요원이 불친절했다

☐ 7) 기타 (_____)

9.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의 편의시설이 없었을 경우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도움 받은 적이 있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 ☐ 1) 혼자 힘으로 스스로 투표했다
- ☐ 2)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 ☐ 3) 가족 또는 친척
- ☐ 4) 투표소에 배치된 선거안내요원
- ☐ 5)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원봉사자 및 활동보조인
- ☐ 6) 이웃
- ☐ 7) 기타 (_____)

10.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기까지 도움을 주는 안내요원이 있다는 사전 홍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내받았습니까?

- ☐ 1) 안내 받은 적이 없다
- ☐ 2) 직접 투표소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
- ☐ 3) 안내 문자가 왔다
- ☐ 4) 안내 전화가 왔다
- ☐ 5) 주변 사람이 알려줬다
- ☐ 6)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았다
- ☐ 7) 기타 (_____)

11. 귀하는 정부 또는 선관위에서 장애인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정보습득 기회 확대
- ☐ 2) 투표안내요령 리플릿 배포
- ☐ 3) 자원봉사자 배치와 연결
- ☐ 4)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 ☐ 5) 투표소까지의 이동지원
- ☐ 6) 투표보조용구(점자투표용지·장애인 기표대 등) 충분히 제공
- ☐ 7) 기타 (_____)

12. 귀하는 개선해야 할 편의시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설치되어진 시설
- ☐ 2) 시설과 설비에 주로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 ☐ 3)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건물과 시설로 확대
- ☐ 4)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 ☐ 5) 장애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수단에 관련된 편의시설의 확충
- ☐ 6) 기타 (_____)

V. 후보자 정보접근 획득방법에 대한 질문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받은 정보에만 표시)

구분	질 문		편리한 정도					
			(제공 받았거나 이용한 분만 응답 ☒ 표)					
	응답보기		1)이용안함	2)매우편리	3)편리	4)보통	5)불편	6)매우불편
안내수단								
	1. 각 입후보자 홈페이지							
	2.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							
	3. 선거공보물(집자 포함)							
	4. 방송매체의 수화 및 자막방송							
	5. 전자 우편 안내(선관위)							
	6. 전화 음성 안내(선관위)							
	7. SMS 및 MMS(선관위 문자메시지)							
	8. SNS(페이스북·트위터)							
	9. UCC 등 동영상							
	10. 거리 선거 운동							

※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투표소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해 변화를 요구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적어주시시오.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심층 인터뷰』



<표 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참여자	성명 소속정당	장애 유형/ 등급	성 별	구 분	직 책	설 명	업 무
참 여 자 분 류	A	이정선 한나라당	지체 1급	여	전국구 의원	비례대 표 ❖비례 대표 란? 지지정당의 득표율에 비 례해서 각 정당의 등록된 대표순위에 따라 의석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 입법에 관한 일 ○ 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 법률 제정 및 개정 ○ 조약 체결, 비준 동의 ★ 재정에 관한 일 ○ 예산안 심의확정 ○ 결산심사 ○ 재정 입법 ★ 일반 국정에 관한 일 ○ 국정 감사 및 조사 ○ 탄핵소추권 ○ 기타의 권한 - 긴급 재정 경제 처분,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
	B	박은수 민주당	지체 1급	남			
	C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척수 장애	남			
	D	심재철 한나라당	지체 3급	남	지역구 의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일반 국정에 관한 일 ○ 국정 감사 및 조사 ○ 탄핵소추권 ○ 기타의 권한 - 긴급 재정 경제 처분,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
	E	이상민 자유선진당	지체 3급	남		대전광역시 유성구	
						특정지역에 출마하여 자신을 시민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국회의원	
	F	고만규 한나라당	지체 1급	남	광역 의 회 의 원	서울특별시	시·도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 :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사항 총괄
	G	이영옥 한나라당	시각 1급	여		대전광역시	
	H	장호철 한나라당	지체 3급	남		경기도	
	I	문상필 민주당	지체 4급	남		광주광역시	
	J	박은기 민주당	지체 6급	남		서울특별시	
	K	이진수 한나라당	지체 4급	남		부산광역시	
	L	전용철 민주당	뇌병변 4급	남		인천광역시	
	M	정병문 민주당	지체 1급	남		광주광역시	
	N	최진섭 민주당	청각 4급	남		충청북도	
	O	박귀룡 한나라당	지체 3급	남	기 초 의 회 의 원	경상북도 경주시	구·시·군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 :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사항 총괄
	P	서미화 민주당	시각 1급	여		전라남도 목포시	
	Q	조남수 민주당	지체 1급	남		서울특별시 노원구	
	R	곽윤희 한나라당	지체 3급	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S	송재석 민주당	지체 5급	남		경기도 화성시	
	T	양균열 한나라당	지체 1급	남		대구광역시 수성구	

	U	윤정자 민주당	지체 5급	여			서울특 별시 성북구		
	V	이동만 민주당	지체 2급	남			서울특 별시 양천구		
	W	이원규 민주당	지체 3급	남			강원도 춘천시		
	X	정기영 민주당	지체 1급	남			경기도 성남시		
	Y	황준환 한나라당	지체 3급	남			서울특 별시 강서구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심층 인터뷰 내용 요약

No.	질문	응답 No.	요약 내용	응답 수
I. 정 치 참 여	1. 현 장애인정책 분야 중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및 아쉬운 부분은?	i .	인권문제	4
		ii .	일거리 창출(고용 촉진) 등 자립정책	11
		iii .	장차법(상충법안 개정)	2
		iv .	편의시설 확충	11
		v .	함께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특수교육문제	2
		vi .	재활의료체계	4
	2. 각 정당마다 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을 당헌·당규에 규정해서 비율을 정하는 정당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도 있는데, 공천 비율이 명문화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며, 제도화 할 수 있는 명분은?	i .	최소 10%	5
		ii .	국회 10%, 지방 5%	4
		iii .	강제 비율 보단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능력 배양-경쟁력 확보	1
		iv .	여성 공천 비율과 동등 or 확대	2
		v .	5%, 장애인정책에 대해 비장애인 의원과 소통 필요	6
		vi .	국회-모든 정당에서 당선권 안에 여성 장애인, 남성장애인 각 1인씩 공천(중증장애인 우선)	1
		vii .	5~10%, 지역적 특성 감안	2
		viii .	국회·광역의원 - 5~10% 상당히 설득력 있음. 지방의원 - 몇% 할당을 요구하는	2

II. 선 거 운 동 과 정				자체가 문제, 1번에 성 구분 없이 장애인 배정 or 가산점제도 도입	
			ix.	지방-10~15%, 남성장애인도 1번, 짝수가 아닌 홀수도 될 수 있게...	1
			x.	광역·기초에서 각 지역 1명씩 추천	1
	3.	장애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한 사항 및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좌관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은?	i.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관 지원은 필수!!	22
			ii.	광역의원 - 보좌관 필요 기초의원 - 아직은 불필요, 단 중증장애 인에게는 특별법 등 제정	1
			iii.	법적 보좌관 제도는 시기상조!!	1
			iv.	약간의 불편함만 감안하면 의정활동 하기엔 무리 없을 듯. 중증일 경우 법·제도적으로 완벽하진 않으나 한정된 부분 도움 받을 수 있음.	1
	4.	장애 유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은?	i.	추가 보조인 지원보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등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해야!!	2
			ii.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13
			iii.	평등해야할 선거에 있어 현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차별 존재 - 국회 정개특위에서 문제제기 및 개선을 요구 할 예정	1
			iv.	현재 수화통역사 시간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음.	1
			v.	편의제공	1
			vi.	지속적인 건의	1
			vii.	홍보물로 대체	1
			viii.	유권자 마음잡기	1
			ix.	장애인도 앞번호로	1
			x.	농아인-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점역사 지원	1
III. 장 에	5.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은?	i.	‘교통편의 제공’ 강행규정으로 개정!!	1 이 정 선 의 원

인 유 권 자 의 참 정 권			ii.	국회 정개특위, 참정권 보장 제반사항 제검토 필요!!	1 <u>심재철</u> 의원
			iii.	편의제공 내용, 선거법 개정내용에 담아야...	2 <u>정하균</u> <u>이상민</u> 의원
			iv.	선관위 움직일 권력있는 조직 필요!!	1 <u>박은수</u> 의원
			v.	편의시설 갖춰진 투표소 적극 홍보	1
			vi.	선관위, 장애인단체 노력	9
			vii.	교통편의 제공, 종교시설도 투표소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2
			viii.	장차법 준수	2
			ix.	투표소 전용 시설 마련	1
			x.	범연대 구성, 적극적인 권리운동	1
			xi.	비장애인의 장애인관련법에 대한 왜곡· 편향된 시선 등 인식 개선	1
			xii.	각 장애인단체 중앙회의 의지	1
			xiii.	인터넷 투표 개발	1
			xiv.	전자투표 도입	1
	6.	장애인 정치세력화가 되려면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지만 우선 장애인의 투표참여 활성 화가 되어야한다. 이에 투표율 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은?	i.	참정권 제도적 보장, 강행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조항 → 강행규정화	3
			ii.	당선 유력 후보 선정 및 공약 개발	3
			iii.	선거참여 인식 개선 - ‘내가 뽑은 후보 자에 의해 장애인정책 개선된다’	9
			iv.	참정권 보장 = 장애인 X, 국민의 한사 람 O 라는 당위성 공감	1
			v.	부제자투표(거소투표) 활성화, 적극 홍보	5

			vi.	다수의 장애인 후보 출마	3
			vii.	일부 장애인의원 초심으로 돌아가야... 장애인의원 존재감 부각	1
			viii.	비장애인의 배후다는 의식 변화, 일부 그릇된 장애인단체 형태 변화	1
IV. 기 타	7.	장애인 선거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	-	참정권을 보장해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는 당당한 주체임을 깨닫자!! 투표참여를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 선거권을 철저히 행사하자!!	-

I. 정치참여 관련

Q. 장애인 정책 분야

인권문제

○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f) 최근 문제가 된 '광주인화학교' 사건에서 나타나듯 장애인이란 이유로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을 무시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장애인 미인가시설의 정부지원금 횡령, 폭행·감금·성폭행 등의 인권유린 사건이 심각. (참여자 A, D, E, P)

일거리 창출(고용 촉진) 등 자립정책

○ 장애인의 자립정책을 위해 필수조건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f) 성취도 증대, 생활 안정 등 다양한 가치 실현 가능. (참여자 A, F, G, H, J, K, R, T, U, W, Y)

장차법(상충법안 개정)

○ 제17대 국회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만들어지면서 큰 기대를 했으나 담당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미비로 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차법의 올바른 실현 및 장차법 상충법안 개정의 역점을 두고 있다. (참여자 B, N)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기에 편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편의시설 관련 법 규정 이외에는 더 확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ex) 육교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승강시설이 없어 장애인과 노인의 이용이 힘든 상황인데 육교가 설치된 지점에서 300m 부근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기준이 있어 보행권에 큰 제약을 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장애인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으나 승강기 시설이 미흡

하여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교통약자(중증장애인)는 사회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에 활동보조인 및 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참여자 E, F, H, I, M, O, P, S, T, U, X)

함께할 수 있는 교육환경 및 특수교육문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더불어 장애인 특수 교육에 있어 프로그램 미흡, 교사의 전문성 부족 등 문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cf)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지 않고 있는 특수교사의 비율이 80%~90%에 이르고, 취업한 장애인 비율도 50%가 안 되는 수준으로 장애인 특수교육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 (참여자 E, U)

재활의료체계

○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뇌병변과 산재, 교통사고 등 이러한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 발생 후 처음엔 병원에서 급한 치료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장애가 생기는 경우 꾸준한 재활운동이 필요하다. 이에 범국가적 재활의료체계의 확대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cf) 보건복지부에서 재활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6개 권역에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했으나 중앙에서 관리·감독할 컨트롤 타워가 없으며, 일부 건립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문제 발생. (참여자 C, F, J, Q)

Q. 장애인 비례대표 비율 도입 및 적정선 모색

최소 10%

○ WTO(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를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장애인 정치참여보장 비율 15%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등록장애인 인구 251만명(5%)에 대해서도 정치참여보장 제도가 미약하다. 이에 장애인의원 비율은 WTO에서 권고하는 정치참여보장 비율 15%를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율인 **10%(국회, 지방의회)**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이 장애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뿐 아니라 대의원 수를 일정비율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A, C, E, S, U)

국회 10%, 지방 5%

○ 현재 민주노동당과 같이 **국회 10%, 지방의회 5%**가 적당한 것 같다. 어디든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장애인 복지와 정책은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가 대변하고 장애인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f) 여성장애인을 여성과 장애인비율에 집어넣는 꼼수를 부리므로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각각 1명 이상씩 공천. (참여자 B, I, G, L)

강제 비율 보단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능력 배양-경쟁력 확보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으로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결정권’을 찾아 당당히 주체자의 역할을 할 때이다. 물론 사회적 환경이 아직 장애인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지만 제도만 개선하게 된다면, 이에 안주하고 스스로 주체자의 역할에 소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제18대 장애인 국회의원은 총 7(비례대표 4, 지역구 3)명이 포진돼있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을 무기로 경쟁력 있는 후보자가 될 수 있기에 비율을 강제로 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갖도록 경쟁력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참여자 D)

여성 공천 비율과 동등 or 확대

○ 각 정당이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재 시행중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공천 비율과 동등하거나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당헌·당규로 정하는 것이야 말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H, M)

5%, 장애인정책에 대해 비장애인 의원과 소통 필요

○ 5%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권에 장애인당사자가 많이 진입하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많이만 들어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 적은 숫자가 제도권에 들어가더라도 동료의원들에게 정당성이나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 장애인정책 문제를 논의하고 비장애인 의원들이 장애인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F, J, K, N, O, T)

국회-모든 정당에서 당선권 안에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각 1인씩 공천(중증장애인 우선)

○ 장애인 비례대표 할당은 국회의원일 경우 모든 정당에서 당선권 안에서 여성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 남성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당사자 각 1인을 당선권 안에 반드시 공천하되 중증장애인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의회에 진입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P)

5~10%, 지역적 특성 감안

○ 최저 5%, 최고 10% 사이에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R, Y)

국회·광역의원 - 5~10% 상당히 설득력 있음.

지방의원 - 몇% 할당을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 1번에 성 구분 없이 장애인 배정 or

○ 국회나 광역의원의 경우, 선출직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5~10%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요구사항인 것 같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전체 의원수가 7명인 곳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몇% 할당을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지방 비례대표 정원이 1명에서 최고 3명뿐인데, 5%, 10%는 정치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속임수일 뿐이다. 아울러 비례대표 1번은 여성에게 배정되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지방의원 같은 경우 성 구분 없이 장애인을 배정하게 된다면 많은 장애인이 정치참여 기회를 얻게 될 것 같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공천심사과정에서 장애인에게 가산 점제도 도입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참여자 W, X)

지방-10~15%, 남성장애인도 1번, 짝수가 아닌 홀수도 될 수 있게...

○ 국회가 아닌 지방의원 할당 비율을 1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이 국민의 10%가 넘으며, 비등록장애인까지 포함한다면 15%는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일 여, 야당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15%를 할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여성비장애인이 1번이 아닌 남성장애인도 1번이 될 수 있으며, 짝수가 아닌 홀수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참여자 Q)

광역·기초에서 각 지역 1명씩 추천

○ 공천 비율은 광역과 기초에서 각 지역에서 1명씩 추천하여 장애인 비례대표를 선출함이 좋을 듯 싶다. (참여자 V)

Q. 의정활동시 애로사항 및 지방의원 보좌관 지원 방안

-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으로는 지체장애가 있을 경우 각종 행사 및 모임 참석에 있어 곳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나 예산, 사업, 행정감사 등을 위한 자료 이용 불편과 보이지 않는 불편한 여성으로 겪는 성차별적 사항 등을 애로 들었다. 아울러 장애인이 주민 대표라는 시민들의 시선, 손에 장애가 있어 악수할 때 불편하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국회뿐 아니라 지방의원들에게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 또는 활동보조인을 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아

래와 같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관 지원은 필수!!

○ 국회의원의 경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관이 지원되지만, 기초·광역의원
의 경우 보좌관을 지원받지 못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회 장애인의원은 그 어려움이 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체인 만큼, 원
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각 지자체별 사정(예산, 여론 등)
으로 지방의회 보좌관의 일괄적 설치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장애인의원이 장애로
인한 불편 때문에 의정활동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좌인원 지원은 꼭 제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f) 18대 국회에서부터 장애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활동보조
요원을 1명씩 배정하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서류 준비에서부터 회의
진행, 발언 등에 여러 불편한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를 비롯, 서울시-2명당 1명,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지원조례를 개정, 3급 이상 장애의원 1명에게 1명의 보조인 지원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선출직 장애인(일정급수 이상)에게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요원이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way) 보조인을 정규공무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 (참여자 A ~ T, V, X)

광역의원 - 보좌관 필요

기초의원 - 아직은 불필요, 단 중증장애인에게는 특별법 등 제정

○ 현재 광역의원에게는 보좌관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초단체의원들은 꼭 보좌
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장애를 가진 의원일 경우, 몸이 불편하여 활동
에 제약이 따르긴 하겠지만 충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그다지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단, 휠체어나 목발 등을 이용해야 하는 지체장애의원 등
중증장애인에게는 특별법 등을 제정해 보좌관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
다고 생각된다. (참여자 U)

법적 보좌관 제도는 시기상조!!

○ 법적으로 보장되는 의정활동 보좌관 제도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보여진
다. 지방의회나 의원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국
회에서와 같이 전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보좌관 제도가 선행된 후에 고려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W)

약간의 불편함만 감안하면 의정활동 하기엔 무리 없을 듯.

중증일 경우 법·제도적으로 완벽하진 않으나 한정된 부분 도움 받을 수 있음.

○ 휠체어나 목발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일 경우 보좌관의 도움이 필요할 시 법적,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에서 도
움 받을 수 있기에 약간의 불편함만 감안한다면 의정활동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참여자 Y)

II. 선거운동과정 관련

Q. 장애 유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추가 보조인 지원보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등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해야!!**

○ 선거운동시 장애인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원 수에 산입되지 않는 ‘활동보조인’을 1명 들 수 있으며, 지원되는 인원을 수화통역사로 채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에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인원을 또다시 배치한다면, 오히려 비장애인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로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무적 수화통역사 지원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 연설시간 연장에 관한 방안으로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방송연설의 수화·자막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한다면, 언어·뇌병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cf)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각한 우리사회에서 선출직 장애인이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야할 또 하나의 거대한 산과 같은 과제이고 상당부분 시간이 필요하며 막대한 비용적 예산 추가가 반드시 있어야 함. (참여자 A, P)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현재 선거법에는 장애인 피선거권자에게 1명씩 선거운동원을 늘려주고 있다. 이는 장애인 피선거권자의 제약된 선거운동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형별 장애를 갖고 있는 피선거권자에 대해서도 충분히 선거운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하며, 다양한 계층, 연령 등에서 피선거권자에 배출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피선거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단체의 노력도 필요한 때이다. cf) 장차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문제. 수화통역사 의무지원문제 등 시험에 대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지원을 해줘야 함.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후보자가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 있음. (참여자 B, C, D, F, I, J, K, L, M, N, O, T, Y)

**평등해야 할 선거에 있어 현실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차별 존재
-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문제제기 및 개선을 요구 할 예정**

○ 사실상 선거와 관련해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평등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에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 후보들에게는 활동보조인과 보조기구도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고,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설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나 연설시간을 충분히 늘려주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다. (참여자 E)

현재 수화통역사 시간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음.

○ 현재 비장애인 후보자와 장애인 후보자의 의견에 똑같은 시간을 주며, 수화통역사 시간은 별도로 주고 있다. (참여자 G)

편의제공

○ 장애인(장애인 유형별)후보자가 선거운동시 불편이 없도록 차량 및 장애인 보조기구, 보조원 등을 지원하여 선거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며, 특히 장애인은 경

제활동이 열악하여 선거비용 등 재정부분이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여자 H)

지속적인 건의

○ 선거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고, 비장애인과의 선거운동 등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위 사항을 다른 의원과 당에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 및 의견을 나누고 있어 사후에 이 내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자 S)

홍보물로 대체

○ 모든 장애인 후보자들은 홍보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참여자 V)

유권자 마음잡기

○ 선거는 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며,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평등한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장애를 가진 후보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함으로써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물론 휠체어나 동아인 후보자 등에게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선거운동원을 더 증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 했으면 함. (참여자 U)

장애인도 앞번호로

○ 법률로서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중선거구 제도이며,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는데 기호 배정에 있어 정당별, 지역별 자율성을 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여성후보자에게 앞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에게도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선출직 장애인 후보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리라 본다. (참여자 W)

동아인-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점역사 지원

○ 선거운동에 지난 지방선거부터 활동보조인을 지원제도가 생겼으며 저 또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아 조금이나마 예전에 비해 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으며, 지체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인 1명 외에 동아인에게는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역사를 지원해야 공평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 연설원고를 자막처리하여 동시에 표현한다면 시간상의 제약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기에 방송연설 부분에 있어 장애인에게 시간을 더 배정해야한다는 점은 좋지 않은 듯 싶다. (참여자 X)

III.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관련

Q.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방안

‘교동편의 제공’ 강행규정으로 개정!!
국회 정개특위, 참정권 보장 제반사항 제검토 필요!!
편의제공 내용, 선거법 개정내용에 담아야...
선관위 움직일 권력있는 조직 필요!!

- 이번 질문에서는 설문 참여자 대부분, 장애인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나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에 대한 의견에, 이정선(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은 장애인에게 충분한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특정 정당 및 단체에서 장애인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고 있으며,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당일까지도 장애인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애인이 마음 놓고 투표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같은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전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반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에 제약이 따르는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하균(미래통합당), 이상민(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은 투표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비교해 불리한 점이 존재한다면 이는 분명 장차법 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별법 개정내용에 담거나 행안부 시행령을 개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은수(민주당 장애인위원장) 국회의원은 “편의시설 미비는 장차법의 현실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위해 선관위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협회에서 투표소 관련 편의시설 미비 부분을 인권위에 진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 A, B, C, D, E)

편의시설 갖춰진 투표소 적극 홍보

○ 투표소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현재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 공공시설과 종교시설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이 같은 곳을 투표소로 선정하는 한편, 장애인 투표참여가 가능한 투표소 위치 및 갖춰진 편의시설 사항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진다면 투표참여율이 확대될 것이다. (참여자 F)

선관위, 장애인단체 노력

○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소에 접근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선관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각 장애인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ex) 각 투표소마다 선거보조용구, 보조원 등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투표소를 되도록 1층으로 선정하되, 안될 경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하고 계단이 조금이라도 있을시 경사로 설치, 차량 지원 등 이동편의 제공 (참여자 G, H, I, J, K, N, T, U, Q)

교통편의 제공, 종교시설도 투표소로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당일 본인이 원할시 교통편의 제공과 투표소가 장애인 출입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여의치 않을시 종교시설도 가능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투표소에 충분한 선거용 보조기구 보급, 보조원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표소별 장애인 참관인을 두어야 한다는 선거법 제정이 필요하다. (참여자 L, Y)

인터넷 투표 개발

실한 정당한 편의라면 장애인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투표 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참여자 V)

장차법 준수

○ 장차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인차별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사건을 접수시켜 시정해 나가야 한다. (참여자 M, P)

투표소 전용 시설 마련

○ 투표소를 정할 때 주변시설이 마땅치 않다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투표소 전용 시설을 새로 만들었으

면 한다. 물론 비용부담이 따르겠지만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올바른 투표환경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참여자 R)

범연대 구성, 적극적인 권리운동

○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 또는 당사자단체를 중심으로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범연대를 구성해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까지 투표장의 1층 또는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권리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참여자 O)

비장애인의 장애인관련법에 대한 예곡·편향된 시선 등 인식 개선

○ 현행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장애인관련법 7개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문제는 비장애인의 인식부족, 예곡·편향된 시선 등이 문제이다. 법의 제정과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효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단체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7월 개정되어 10월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도 장애인이 지방의회 회의 등을 방청함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이 의무화되는 등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참여자 S)

각 장애인단체 중앙회의 의지

○ 법률까지는 아니라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에 지침 전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며, 지방의원들의 역할 이라기보다는 각 장애인단체의 중앙회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참여자 W)

전자투표 도입

○ 참정권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편의시설인데 선거투표소에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개선 방안으로 편의시설이 없는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선관위에 상당한 많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방법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편의시설 미비로 참정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거소투표를 유도하는 것도 일시적인 방안이긴 하나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투표를 전자투표로 한다면 특정지역의 투표소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당당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여자 X)

Q. 장애인의 투표율 향상 방안

참정권 제도적 보장, 강행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조항 → 강행규정화

○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선거참여 보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투표시 장애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투표소의 1층 설치, 점자 선거공보물 제작 및 내용, 선거방송의 수화·자막방송 실시 등에 있어서 강행조항이 아닌 선언적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관련 규정들을 강행규정화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장애인의 선거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자 A, K, M)

당선 유력 후보 선정 및 공약 개발

○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하지 말고, 선거를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해야 하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계의 요구사항을 공약으로 만들어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단체가 스스로 본인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필요하며, 유력한 후보를 선정해 출마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전 선거구를 장애인단체에서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참여자 B, N, X)

선거참여 인식 개선 - ‘내가 뽑은 후보자에 의해 장애인정책 개선된다’

선거참여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인 내가 비록 몸이 불편하지만 직접 투표하고, 내가 뽑은 후보자에 의해 장애인 정책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지가 있다면 투표율은 점점 향상될 것이다. 이에 장애인 투표율이 당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정치권이나 정부는 장애인 표를 두려워 할 것이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든 사항들은 어쩌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참여자 C, E, G, H, O, P, T, Q, Y)

참정권 보장 = 장애인 X, 국민의 한사람 O 라는 당위성 공감

○ 민주주의의 꽃인 참정권 보장은 장애인이기 때문이라는 인식보다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전 국민이 공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정권을 집행하는 기구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선거제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투표율 향상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 D)

부재자투표(거소투표) 활성화, 적극 홍보

○ 이등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부재자투표-거소투표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증장애인들은 누군가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한 거소투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가장애인이거나 시설입소 장애인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cf) 투표당일 교통편의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일 경우 선관위가 방문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밀 보장이 전제된 전자투표 실시. (참여자 I, J, L, R, V)

다수의 장애인 후보 출마

○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국지방 곳곳 지역구에 출마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도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cf) 한나라당 고만규 의원-노원구에서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며 장애인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원구 선관위를 설득하여 투표일 전에 거리 곳곳에 장애인 투표참여 안내도우미 파견, 현수막설치 및 전단지들을 주민들에게 배부, 투표 독려를 하고, 투표 당일에 장애인 밀집지역 등 각 투표소에 장애인 및 노약자 안내도우미를 선정,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과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투표참여율을 높인 적이 있다. (참여자 F, S, Y)

일부 장애인의원 초심으로 돌아가야... 장애인의원 존재감 부각

○ 장애인의원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 스스로 뺏지를 달기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 열심히 일하고 장애인을 대변하는 참된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장애인 출신 의원들에 대한 존재감이 부각될 때 장애인들이 힘들더라도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cf) 비장애인 스타의원이 있듯이 장애인 중에 스타 장애인의원이 나와야 함. (참여자 U)

비장애인의 배풍다는 의식 변화, 일부 그릇된 장애인단체 행태 변화

○ 장애인 복지문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배풍다는 의식자체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보며 그런 차원에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장애당사자 본인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선거 시 여당 텃밭인 강원도 춘천의 경우 4개 장애인단체장이 각 정당의 장애인관련 정책이나 공약은 도외시하고 무조건 한나라당 지지선언이나 발표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장애인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결국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야 할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투표참여에 방해를 주는 행태의 변화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여자 W)

IV. 기타 의견

Q.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참정권을 보장해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갖는 당당한 주체임을 깨닫자!!
투표참여를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 선거권을 철저히 행사하자!!

○ 기타 의견에서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환경 조성」 심층 인터뷰에 참가한 의원 모두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대해 거듭 언급하며, ‘자기결정권’을 갖는 당당한 주체임을 장애인 스스로 깨닫고 투표참여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철저하게 행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의원은 “장애 당사자들이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참여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나, 장애인 비례대표 및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장 등 장애인의 선출직 공무원 진출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장애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장애인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장애인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권 등 제도권에서는 장애인들이 장소·날씨 등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민의전달에 어려움이 없게끔 ‘선거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장애인 한명 한명은 장애계의 발전을 위해 힘을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눈에 보이는 제도 및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힘을 모을 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보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뤄나갈 때 비로소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장차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장애인정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각 장애인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며, “각 장애인단체들은 긍지를 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아태장애인 10년’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활동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I. 인적 사항 일반

각 문항에 귀하와 관련된 항목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인적사항일반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남자	447	65.3	65.3	65.3
유효 여자	238	34.7	34.7	100.0
합계	685	100.0	100.0	

(2) 지역별

지역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서울특별시	99	14.5	14.5	14.5
경기도	121	17.7	17.7	32.1
강원도	30	4.4	4.4	36.5
인천광역시	43	6.3	6.3	42.8
대전광역시	17	2.5	2.5	45.3
대구광역시	28	4.1	4.1	49.3
부산광역시	42	6.1	6.1	55.5
광주광역시	16	2.3	2.3	57.8
유효 울산광역시	12	1.8	1.8	59.6
경상남도	44	6.4	6.4	66.0
경상북도	63	9.2	9.2	75.2
전라남도	35	5.1	5.1	80.3
전라북도	68	9.9	9.9	90.2
충청남도	34	5.0	5.0	95.2
충청북도	23	3.4	3.4	98.5
제주도	10	1.5	1.5	100.0
합계	685	100.0	100.0	

장애유형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지체장애	359	52.4	52.4	52.4
뇌병변장애	81	11.8	11.8	64.2
시각장애	78	11.4	11.4	75.6
청각장애	74	10.8	10.8	86.4
지적장애	58	8.5	8.5	94.9
정신장애	35	5.1	5.1	100.0
합계	685	100.0	100.0	

장애등급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1급	112	16.4	16.4	16.4
2급	208	30.4	30.4	46.7
3급	191	27.9	27.9	74.6
4급	57	8.3	8.3	82.9
5급	65	9.5	9.5	92.4
6급	52	7.6	7.6	100.0
합계	685	100.0	100.0	

연령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20대	48	7.0	7.0	7.0
30대	109	15.9	15.9	22.9
40대	159	23.2	23.2	46.1
50대	212	30.9	30.9	77.1
60대	118	17.2	17.2	94.3
70대이상	39	5.7	5.7	100.0
합계	685	100.0	100.0	

학력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초졸이하	41	6.0	6.0
	초등학교졸업	63	9.2	15.2
	중학교졸업	163	23.8	39.0
	고등학교졸업	282	41.2	80.1
	대학교졸업	117	17.1	97.2
	대학원이상	9	1.3	98.5
	기타	10	1.5	100.0
	합계	685	100.0	100.0

직업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무직	301	43.9	43.9
	사무직	117	17.1	61.0
	전문직	32	4.7	65.7
	생산직	44	6.4	72.1
	공무원	4	.6	72.7
	자영업	56	8.2	80.9
	서비스업	39	5.7	86.6
	학생	5	.7	87.3
	기타	87	12.7	100.0
	합계	685	100.0	100.0

II. 선거참여 실태 및 선거의식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참여실태및선거의식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참여했다	511	74.6	74.6	74.6
관심이없어서	84	12.3	12.3	86.9
선거일을 몰라서	14	2.0	2.0	88.9
투표소의설치편의로투표를하기어려워서	10	1.5	1.5	90.4
유효 참여해봤자달라지않는것때문에	45	6.6	6.6	96.9
장애인관련정책에대하여후보가관심이없어서	16	2.3	2.3	99.3
기타	5	.7	.7	100.0
합계	685	100.0	100.0	

2. 귀하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으셨습니까?

선거기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투표하지않았다	145	21.2	21.2	21.2
유효 정책과공약의실행가능성보고	242	35.3	35.3	56.5

후보자의 인물됨고 이름을보고	170	24.8	24.8	81.3
정당에 대한 신뢰감	90	13.1	13.1	94.5
자신과 의 관계 지연 연	29	4.2	4.2	98.7
기타	9	1.3	1.3	100.0
합계	685	100.0	100.0	

3. 귀하는 후보를 결정할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선거영향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투표하지 않았다	130	19.0	19.0
	가족및지 인	99	14.5	33.4
	스스로판 단해서결 정	319	46.6	80.0
	방송매체 및책자	79	11.5	91.5
	선거운동 원	9	1.3	92.8
	각정당입 후보자	40	5.8	98.7
	기타	9	1.3	100.0
	합계	685	100.0	100.0

4. 귀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거결과만족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만족하고있다	141	20.6	20.6
	내세웠던공약이제	169	24.7	45.3

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가 뽑은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다	97	14.2	14.2	59.4
당선되고 나서 신념이 변한 것 같다	53	7.7	7.7	67.2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124	18.1	18.1	85.3
정당이 이익만 챙기는 것 같다	64	9.3	9.3	94.6
기타	37	5.4	5.4	100.0
합계	685	100.0	100.0	

5.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 아래 보기 정당은 대한민국 국회 정

당별 의석수를 토대로 작성

지지정당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없다	266	38.8	39.6
	한나라당	232	33.9	74.1
	민주당	131	19.1	93.6
	자유선진당	14	2.0	95.7
	미래희망연대	5	.7	96.4
	민주노동당	18	2.6	99.1
	창조한국당	2	.3	99.4
	진보신당	4	.6	100.0
	합계	672	98.1	100.0
Missing	System	13	1.9	
	합계	685	100.0	

6. 귀하가 위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지이유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	-----	----	------	------

유효	지지하는 정당	274	40.0	40.0	40.0
	자신의 정치관	133	19.4	19.4	59.4
	정당의 정책	49	7.2	7.2	66.6
	소외계층을 대하는 자세	76	11.1	11.1	77.7
	장애인의 인권	105	15.3	15.3	93.0
	정당의 운영 방식	15	2.2	2.2	95.2
	기타	33	4.8	4.8	100.0
	합계	685	100.0	100.0	

7.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관심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지지하는 정당	210	30.7	30.7
	매우관심 있다	43	6.3	36.9
	관심있는 편이다	186	27.2	64.1
	보통이다	161	23.5	87.6
	관심없다	66	9.6	97.2
	전혀관심 없다	19	2.8	100.0
	합계	685	100.0	100.0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참여할생각이다	473	69.1	69.1	69.1
	아직모르겠다(공약보고결정)	126	18.4	18.4	87.4
	당선후공약실천이제대로이뤄지지않아서	19	2.8	2.8	90.2
	투표소접근이힘들거나,투표시간이짧아서,투표소주변의시설부족	20	2.9	2.9	93.1
	이동지원부족	4	.6	.6	93.7
	정치에관심이없어서	38	5.5	5.5	99.3
	기타	5	.7	.7	100.0
	합계	685	100.0	100.0	

		장애인후보지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무조건지 지한다	125	18.2	18.2	18.2
	공약을보 고결정하 다	213	31.1	31.1	49.3
	능력을보 고결정하 다	262	38.2	38.2	87.6
	정당을보 고결정하 다	27	3.9	3.9	91.5

별로 관심 없다	55	8.0	8.0	99.6
기타	3	.4	.4	100.0
합계	685	100.0	100.0	

10. 귀하는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치관심도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 관심 있다	77	11.2	11.2
	관심 있는 편이다	223	32.6	43.8
	보통이다	255	37.2	81.0
	관심 없다	92	13.4	94.5
	전혀 관심 없다	38	5.5	100.0
	합계	685	100.0	100.0

11. 귀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참여보장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노력하는 것 같다	164	23.9	23.9
	TV토론회 및 방송연 설의 수화 및 자막 방 송이 부족 하다	77	11.2	35.2
	시각장애 인용점자 홍보물 제 작, 보급 등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62	9.1	44.2
	후보에 대 한 정보 습 득이 힘들 다	165	24.1	68.3
	아직까지 투표시설 편의 부족 하다	196	28.6	96.9

기타	21	3.1	3.1	100.0
합계	685	100.0	100.0	

12. 귀하는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가 되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직접후보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매우필요하다	274	40.0	40.0
	필요하다	273	39.9	79.9
	그저그렇다	101	14.7	94.6
	필요하지 않다	32	4.7	99.3
	전혀필요하지 않다	5	.7	100.0
	합계	685	100.0	100.0

Ⅲ. 투표소 편의시설 이용 여부 및 편리성

최근 참여한 선거의 투표소(장)에서 이용한 시설에는 보기 2)~6)번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보기 1)번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기타에 아무것도 이용안한 경우 1)번에 ☒

(1) 투표소 편의시설

Ⅲ.투표소편의시설이용여부및편리성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247	36.1	36.1
	매우편리	47	6.9	42.9
	편리	98	14.3	57.2
	보통	166	24.2	81.5
	불편	87	12.7	94.2
	매우불편	40	5.8	100.0
	합계	685	100.0	100.0

(2) 장애인 전용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장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이용안함	294	42.9	42.9	42.9
매우편리	38	5.5	5.5	48.5
편리	83	12.1	12.1	60.6
유효 보통	150	21.9	21.9	82.5
불편	80	11.7	11.7	94.2
매우불편	40	5.8	5.8	100.0
합계	685	100.0	100.0	

(3) 출입문

출입문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이용안함	251	36.6	36.6	36.6
매우편리	27	3.9	3.9	40.6
편리	89	13.0	13.0	53.6
유효 보통	186	27.2	27.2	80.7
불편	95	13.9	13.9	94.6
매우불편	37	5.4	5.4	100.0
합계	685	100.0	100.0	

(4) 계단턱

계단턱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이용안함	200	29.2	29.2	29.2
매우편리	20	2.9	2.9	32.1
편리	67	9.8	9.8	41.9
유효 보통	168	24.5	24.5	66.4
불편	147	21.5	21.5	87.9
매우불편	83	12.1	12.1	100.0
합계	685	100.0	100.0	

(5)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341	49.8	49.8
	매우편리	41	6.0	55.8
	편리	106	15.5	71.2
	보통	102	14.9	86.1
	불편	60	8.8	94.9
	매우불편	35	5.1	100.0
	합계	685	100.0	100.0

(6)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254	37.1	37.1
	매우편리	33	4.8	41.9
	편리	76	11.1	53.0
	보통	155	22.6	75.6
	불편	116	16.9	92.6
	매우불편	51	7.4	100.0
	합계	685	100.0	100.0

(7) 기표대

장애인검용기표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254	37.1	37.1
	매우편리	26	3.8	40.9
	편리	89	13.0	53.9
	보통	200	29.2	83.1
	불편	82	12.0	95.0
	매우불편	34	5.0	100.0
	합계	685	100.0	100.0

(8) 투표소 위치안내

투표소위치안내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이용안함	341	49.8	49.8	49.8
매우편리	22	3.2	3.2	53.0
편리	52	7.6	7.6	60.6
유효 보통	145	21.2	21.2	81.8
불편	81	11.8	11.8	93.6
매우불편	44	6.4	6.4	100.0
합계	685	100.0	100.0	

(9) 투표보조용구

투표보조용구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이용안함	389	56.8	56.9	56.9
매우편리	17	2.5	2.5	59.4
편리	46	6.7	6.7	66.1
유효 보통	144	21.0	21.1	87.1
불편	59	8.6	8.6	95.8
매우불편	29	4.2	4.2	100.0
합계	684	99.9	100.0	
Missing System	1	.1		
합계	685	100.0		

IV. 투표환경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선거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편하십니까? 만약 불편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V.투표환경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정보 얻기가 편했다	224	32.7	32.7
	수화면이 너무 작아 무작정 말을 할지 모르겠다	49	7.2	39.9
	자막방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60	8.8	48.6
	점자형 선공물 없거나 내용이 부족하다(공약無)	53	7.7	56.4
	통역사들이 내용을 잘 듣지 못한다	6	.9	57.2
	정보를 얻어야 할지 모르겠다	261	38.1	95.3
	기타	32	4.7	100.0
	합계	685	100.0	100.0

2. 귀하는 선거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정보획득소스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정보를 얻지 못했다	67	9.8	9.8
	TV 및 라디오	281	41.0	50.8
	선관위 홈페이지	7	1.0	51.8
	각 후보자 홈페이지	15	2.2	54.0

간담회토론회	38	5.5	5.5	59.6
안내지나선거공보물	167	24.4	24.4	83.9
가족및지인	103	15.0	15.0	99.0
8	7	1.0	1.0	100.0
합계	685	100.0	100.0	

3. 귀하는 선거 때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로부터 투표참여권유 및 각 정당 입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투표참여권유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예	316	46.1	46.1	46.1
아니오	369	53.9	53.9	100.0
합계	685	100.0	100.0	

4. 귀하는 선거 때 후보의 방송연설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방송연설횟수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방송을본적이없다	198	28.9	28.9	28.9
1회	158	23.1	23.1	52.0
2회	176	25.7	25.7	77.7
3~4회	113	16.5	16.5	94.2
5회이상	40	5.8	5.8	100.0
합계	685	100.0	100.0	

5. 귀하가 선거관련 방송연설을 볼 때,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방송연설불편한점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방송을본적이없다	183	26.7	26.7	26.7
불편하지않았다	250	36.5	36.5	63.2
수화방송서비스미	58	8.5	8.5	71.7

흡 자막방송 서비스미	51	7.4	7.4	79.1
흡 방송매체 가부족하 다	126	18.4	18.4	97.5
기타	17	2.5	2.5	100.0
합계	685	100.0	100.0	

6. 귀하는 선거 때 투표방법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투표방법안내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받지 못했다	137	20.0	20.0
	문자안내로 받았다	40	5.8	25.8
	장애인단체 를통해안내 받았다	124	18.1	43.9
	선거관리위 원회의공보 물을통해안 내받았다	283	41.3	85.3
	선거운동단 체를통해안 내받았다	13	1.9	87.2
	가족, 친척, 지인의 도움 으로안내받 았다	84	12.3	99.4
	기타	4	.6	100.0
	합계	685	100.0	100.0

7.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불편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투표소이동불편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투표하지않았다	135	19.7	19.7	19.7
불편하지않았다	333	48.6	48.6	68.3
가는길에공사를하는구간이있어서불편했다	46	6.7	6.7	75.0
가는길에횡단보도가설치되어있지않아서불편했다	15	2.2	2.2	77.2
점자블록이설치되어있지않아서(안내인이없어서)불편했다	35	5.1	5.1	82.3
투표소에경사로가없거나2층이상이어서(승강기가없어서)불편했다	97	14.2	14.2	96.5
기타	24	3.5	3.5	100.0
합계	685	100.0	100.0	

8.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표를 넣기까지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투표소불편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투표하지않았다	125	18.2	18.2	18.2
불편하지않았다	332	48.5	48.5	66.7
계단이많아서오르기힘들었다	74	10.8	10.8	77.5
투표방법에대한안내를받는데불편했다	69	10.1	10.1	87.6
유효 월척어가움직이기힘들정도 로공간이좁았다	38	5.5	5.5	93.1
선거안내요원이불친절했다	28	4.1	4.1	97.2
기타	19	2.8	2.8	100.0
합계	685	100.0	100.0	

9.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의 편의시설이 없었을 경우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도움 받는 적이 있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투표소도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혼자힘으로 스스로 투표했다	350	51.1	51.1	51.1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38	5.5	5.5	56.6
가족 및 지인	121	17.7	17.7	74.3
투표소에 배치된 선거 안내요원	88	12.8	12.8	87.2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원봉사자 및 활동보조인	33	4.8	4.8	92.0
주위에 지나가는 행인	10	1.5	1.5	93.4
기타	45	6.6	6.6	100.0
합계	685	100.0	100.0	

10.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 도움을 주는 안내요원이 있다는 사전 홍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내받았습니까?

안내도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안내받은 적이 없다	410	59.9	59.9	59.9
직접 투표소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	9	1.3	1.3	61.2
안내 문자가 왔다	31	4.5	4.5	65.7
안내 전화가 왔다	19	2.8	2.8	68.5
주변 사람이 알려줬다	119	17.4	17.4	85.8
TV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았다	85	12.4	12.4	98.2
기타	12	1.8	1.8	100.0
합계	685	100.0	100.0	

11. 귀하는 정부 또는 선관위에서 장애인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정권보장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정보습득 기회확대	176	25.7	25.7
	투표안내 요령리플렛배포	40	5.8	31.5
	자원봉사자 배치와 연결	104	15.2	46.7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183	26.7	73.4
	투표소까지의 이동 지원	128	18.7	92.1
	투표 보조용구충분히제공	44	6.4	98.5
	기타	10	1.5	100.0
	합계	685	100.0	100.0

12. 귀하는 개선해야 할 편의시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의시설개선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장애인들이 활동할수있도록기능적으로설치되어진시설	171	25.0	25.0
	시설과설비에주로비중을두고있는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률	47	6.9	31.8
	편의시설설치의무대상을모든건물과시설로확대	133	19.4	51.2
	실질적으로장애인의이동과접근권을보장할수있도록개선	202	29.5	80.7
	장애인들이투표에참여하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교통수단에관련된편의시설의확충	121	17.7	98.4
	기타	11	1.6	100.0
	합계	685	100.0	100.0

V. 후보자 정보접근 획득방법에 대한 질문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제공 받았거나 이용한 분은 보기 2)~6)번에,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보기 1)번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후보자홈페이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510	74.5	74.5
	매우편리	11	1.6	76.1
	편리	34	5.0	81.0
	보통	97	14.2	95.2
	불편	27	3.9	99.1
	매우불편	6	.9	100.0
	합계	685	100.0	100.0

선관위홈페이지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508	74.2	74.2
	매우편리	12	1.8	75.9
	편리	39	5.7	81.6
	보통	96	14.0	95.6
	불편	22	3.2	98.8
	매우불편	8	1.2	100.0
	합계	685	100.0	100.0

선거공보물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288	42.0	42.0
	매우편리	44	6.4	48.5
	편리	125	18.2	66.7
	보통	181	26.4	93.1
	불편	33	4.8	98.0
	매우불편	14	2.0	100.0
	합계	685	100.0	100.0

방송매체의수화자막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372	54.3	54.3
	매우편리	21	3.1	57.4
	편리	84	12.3	69.6
	보통	149	21.8	91.4
	불편	47	6.9	98.2
	매우불편	12	1.8	100.0
	합계	685	100.0	100.0

전자우편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439	64.1	64.1
	매우편리	17	2.5	66.6
	편리	60	8.8	75.3
	보통	121	17.7	93.0
	불편	37	5.4	98.4
	매우불편	11	1.6	100.0
	합계	685	100.0	100.0

전화음성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427	62.3	62.3
	매우편리	13	1.9	64.2
	편리	51	7.4	71.7
	보통	119	17.4	89.1
	불편	48	7.0	96.1
	매우불편	27	3.9	100.0
	합계	685	100.0	100.0

SNS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426	62.2	62.2
	매우편리	9	1.3	63.5
	편리	60	8.8	72.3
	보통	115	16.8	89.1
	불편	55	8.0	97.1
	매우불편	20	2.9	100.0
	합계	685	100.0	100.0

페이스북트위터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521	76.1	76.1
	매우편리	7	1.0	77.1
	편리	22	3.2	80.3
	보통	70	10.2	90.5
	불편	51	7.4	98.0
	매우불편	14	2.0	100.0
	합계	685	100.0	100.0

UCC동영상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513	74.9	74.9
	매우편리	12	1.8	76.6
	편리	32	4.7	81.3
	보통	80	11.7	93.0
	불편	41	6.0	99.0
	매우불편	7	1.0	100.0
	합계	685	100.0	100.0

거리선거운동

		빈도수	비율	유효비율	누적비율
유효	이용안함	281	41.0	41.0	41.0
	매우편리	33	4.8	4.8	45.8
	편리	87	12.7	12.7	58.5
	보통	201	29.3	29.3	87.9
	불편	58	8.5	8.5	96.4
	매우불편	25	3.6	3.6	100.0
	합계	685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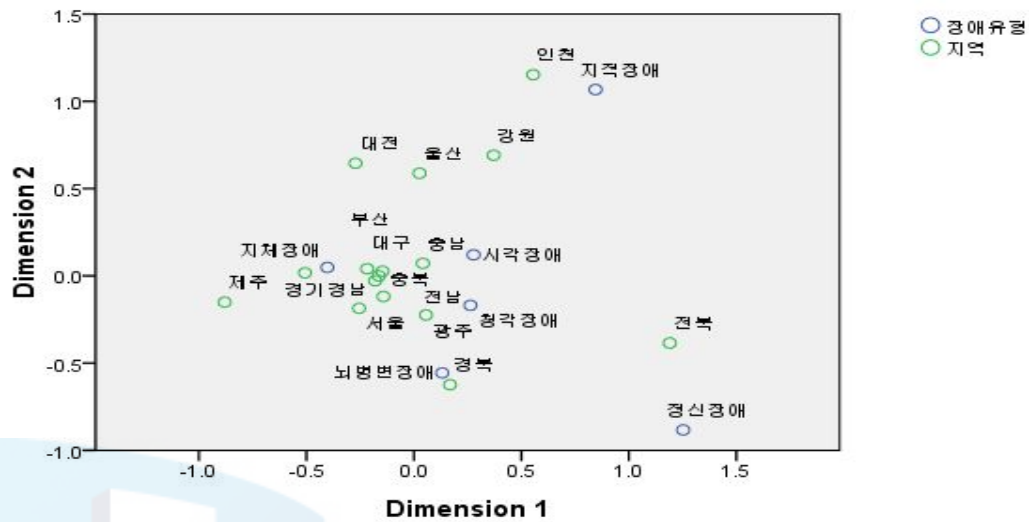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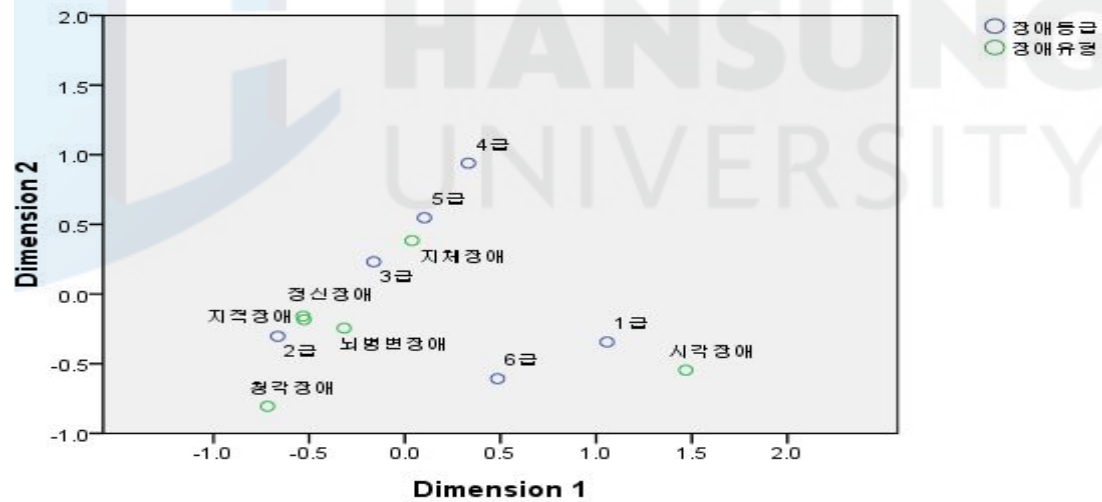
I. 인적 사항 일반

각 문항에 귀하와 관련된 항목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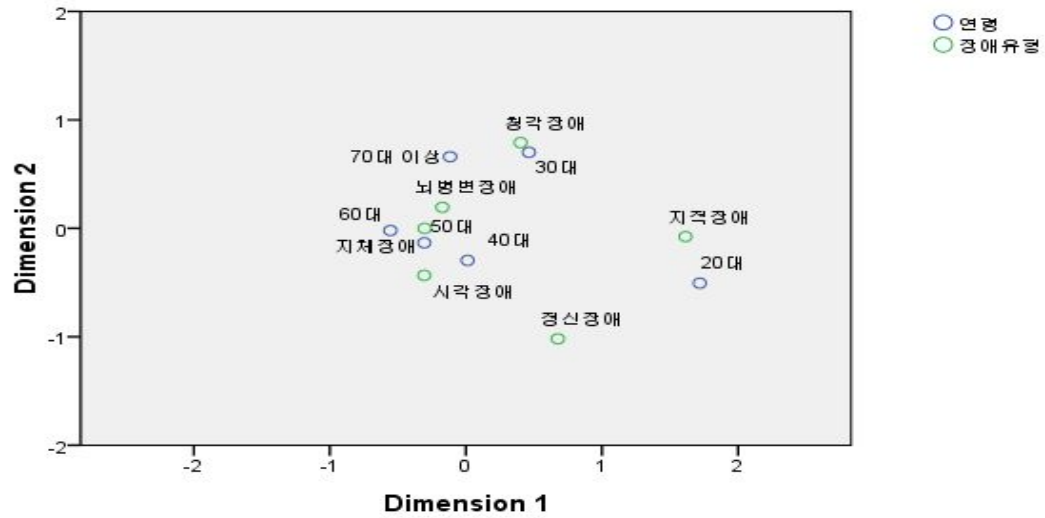
(1)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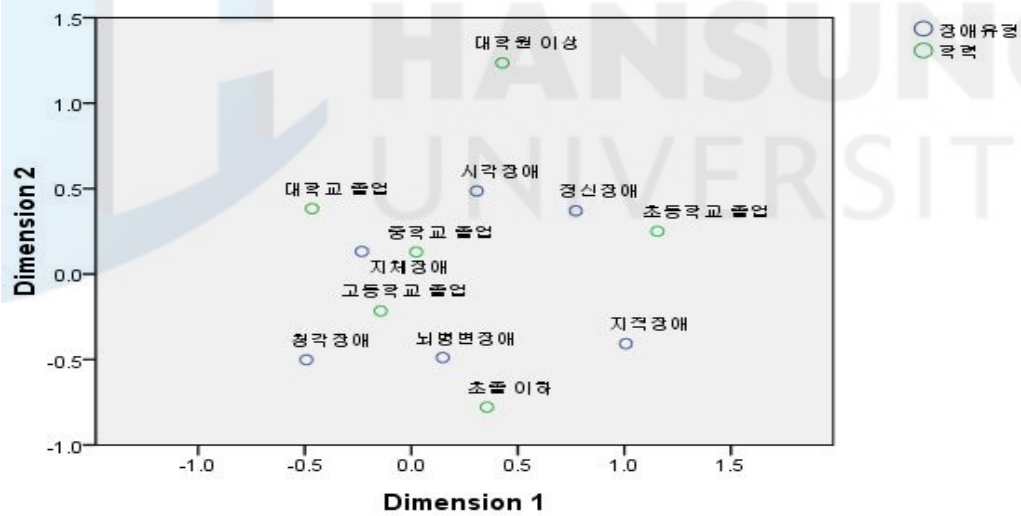
(3) 장애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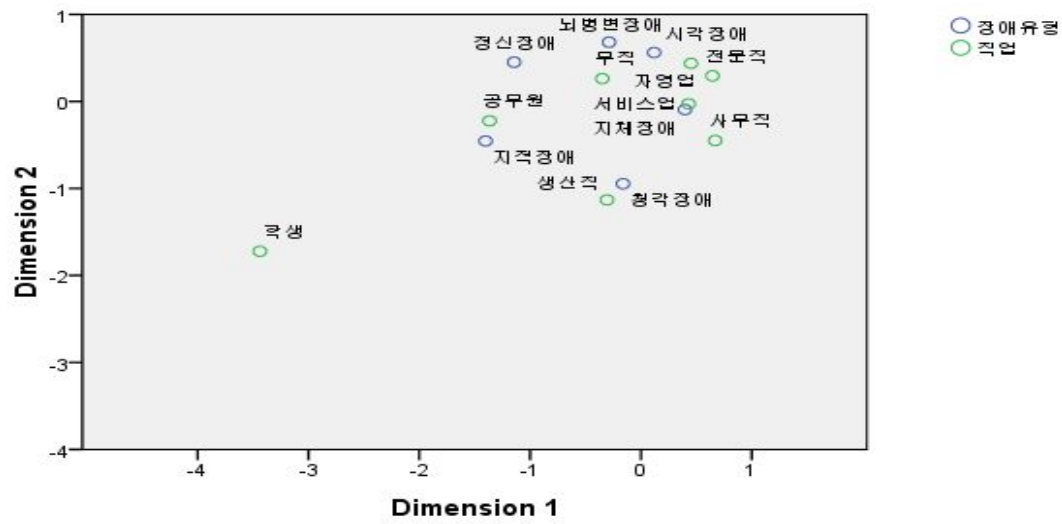
(3) 연령



(4) 학력



(5)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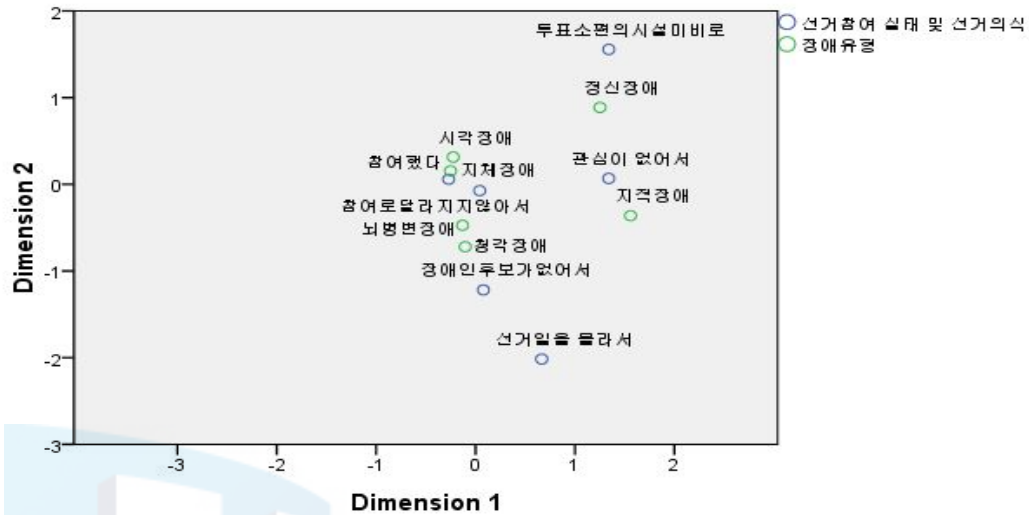


HANSU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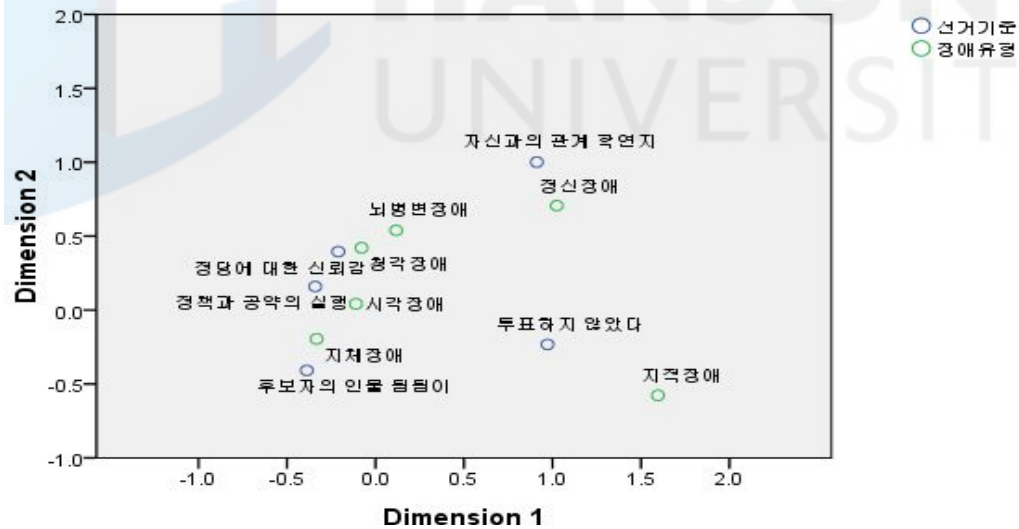
II. 선거참여 실태 및 선거의식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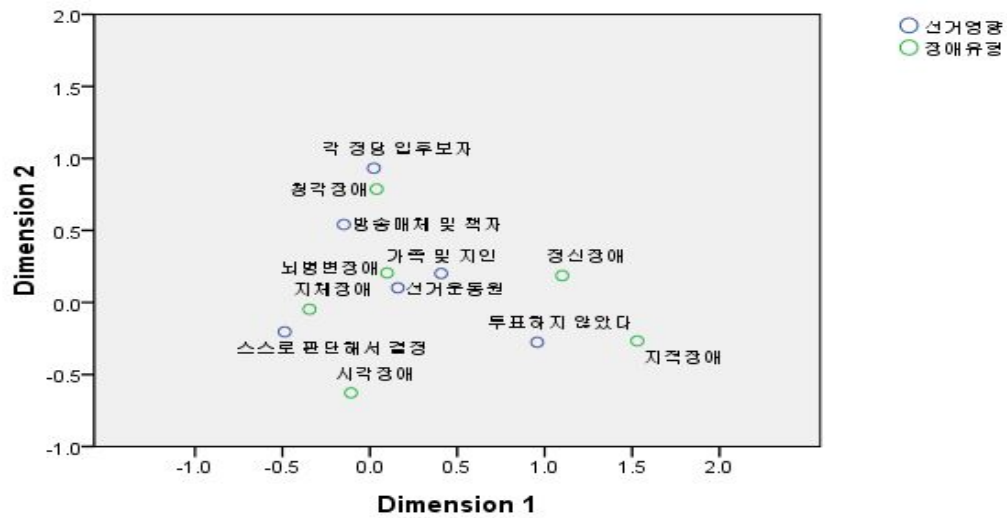
1. 귀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셨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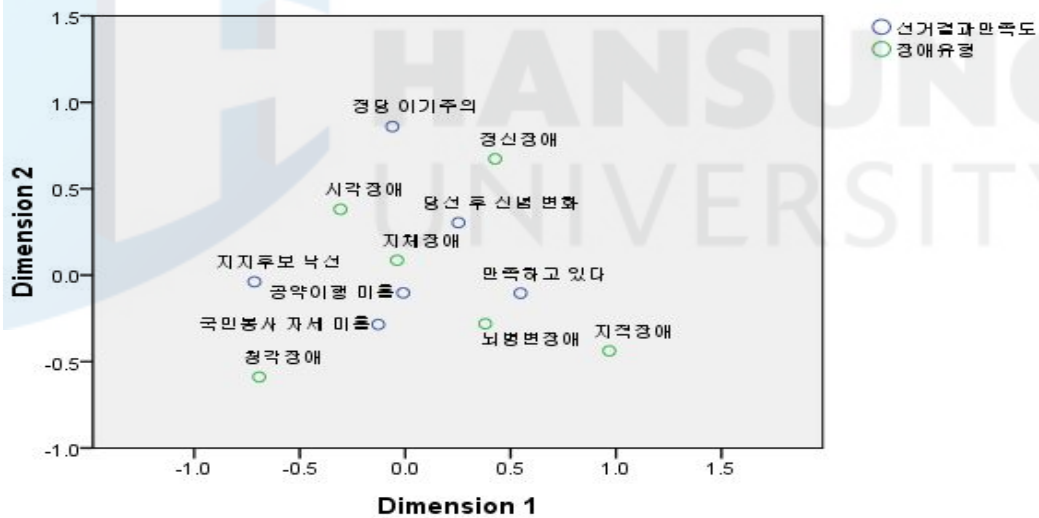
2. 귀하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뽑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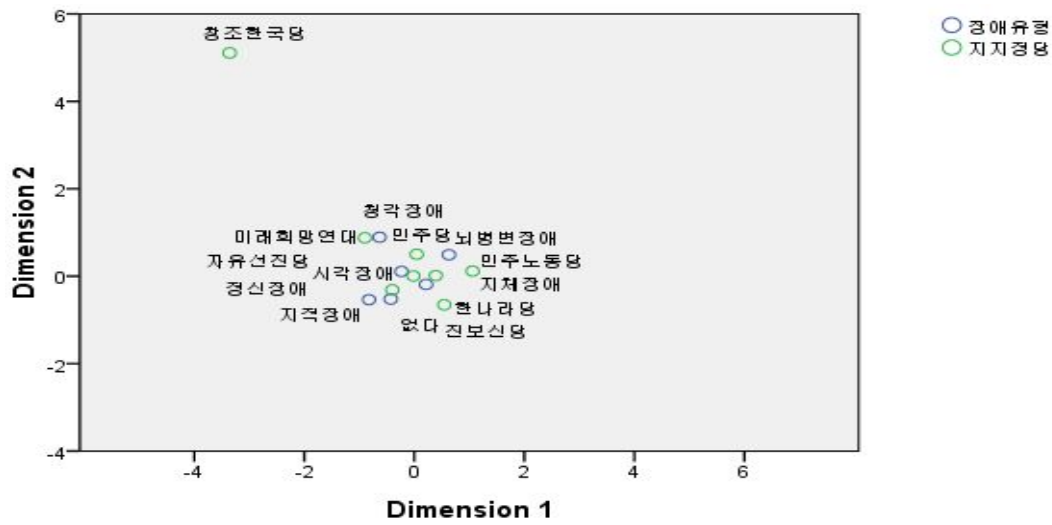
3. 귀하는 후보를 결정할 때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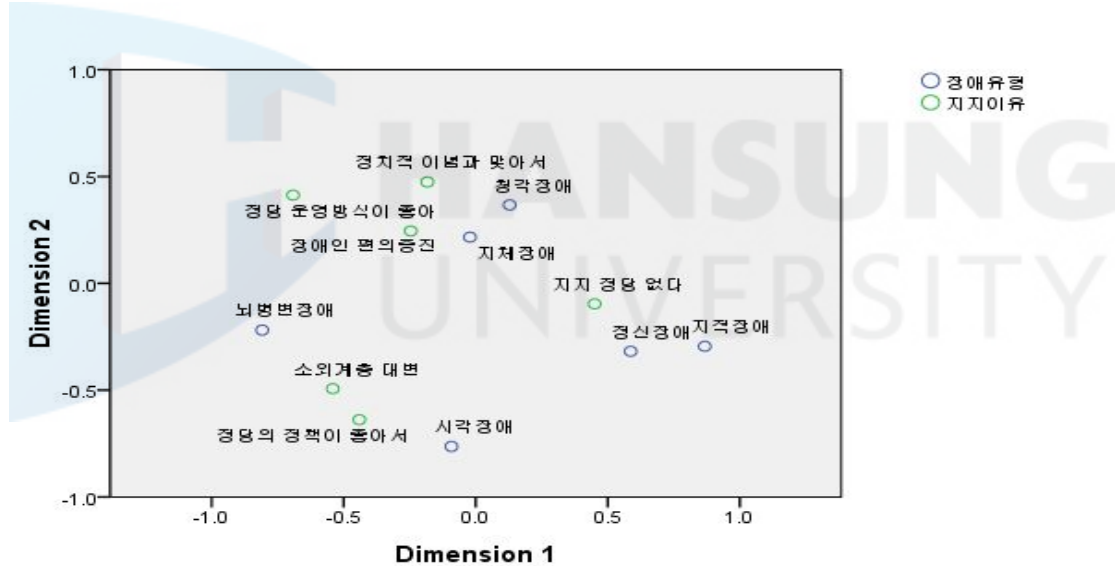
4. 귀하는 지난 지방자치선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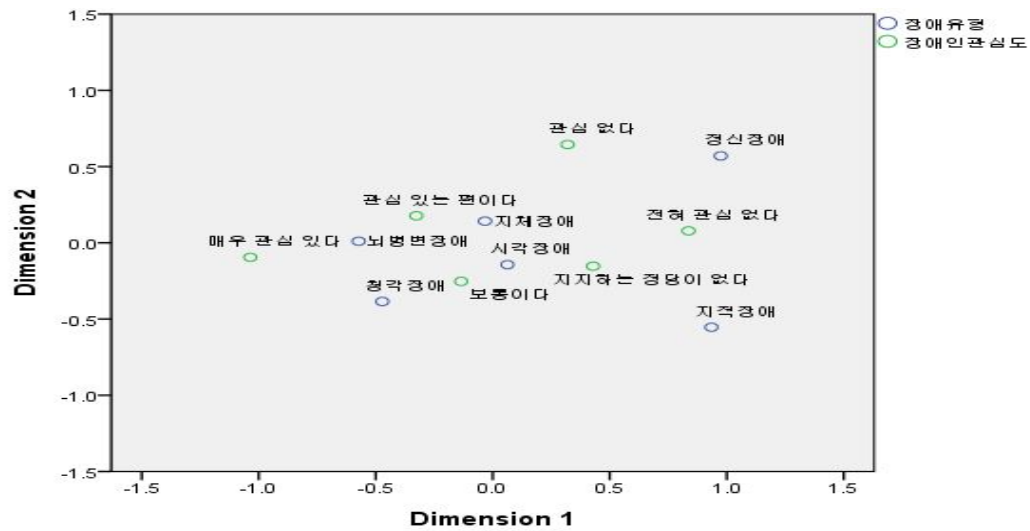
5.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 아래 보기 정당은 대한민국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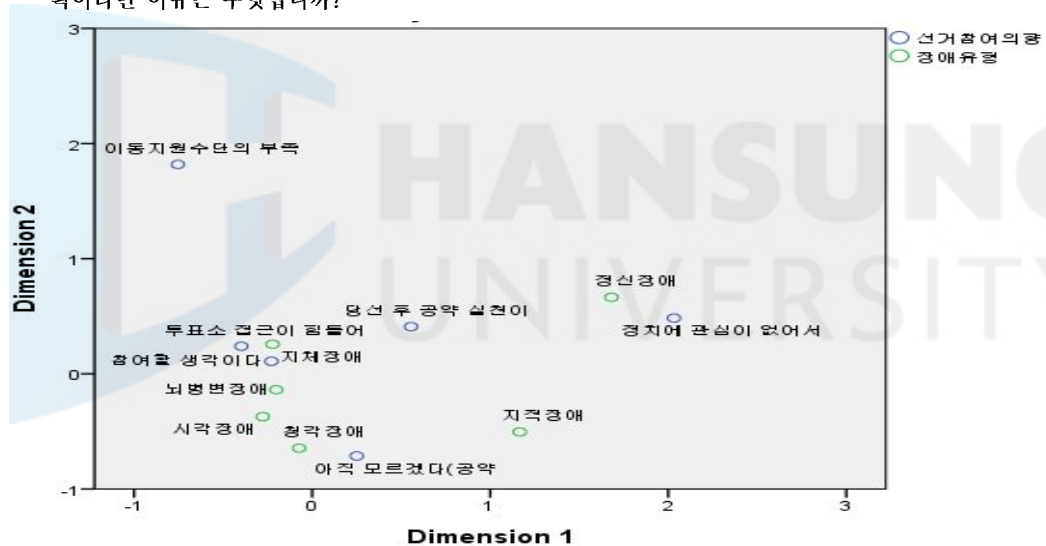
6. 귀하가 위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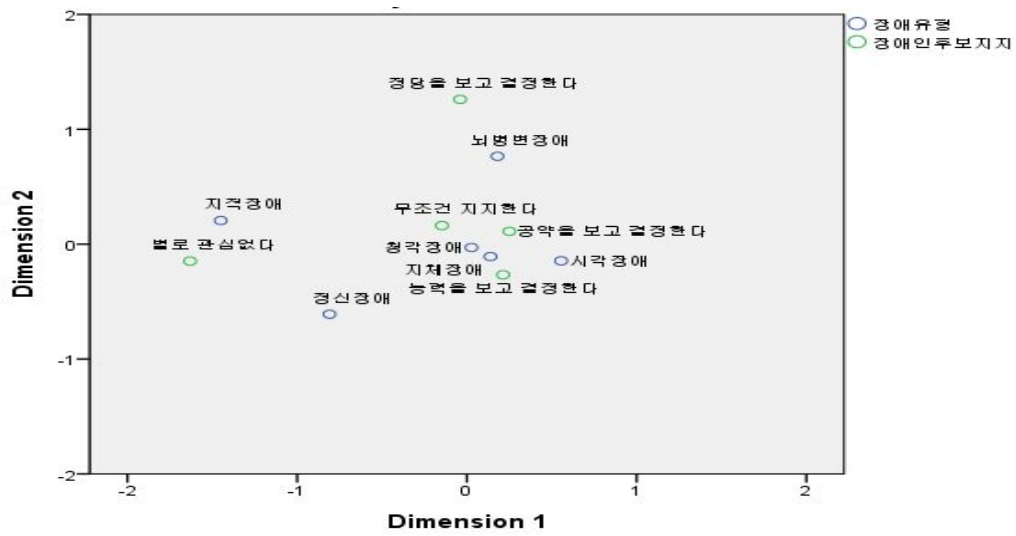
7.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은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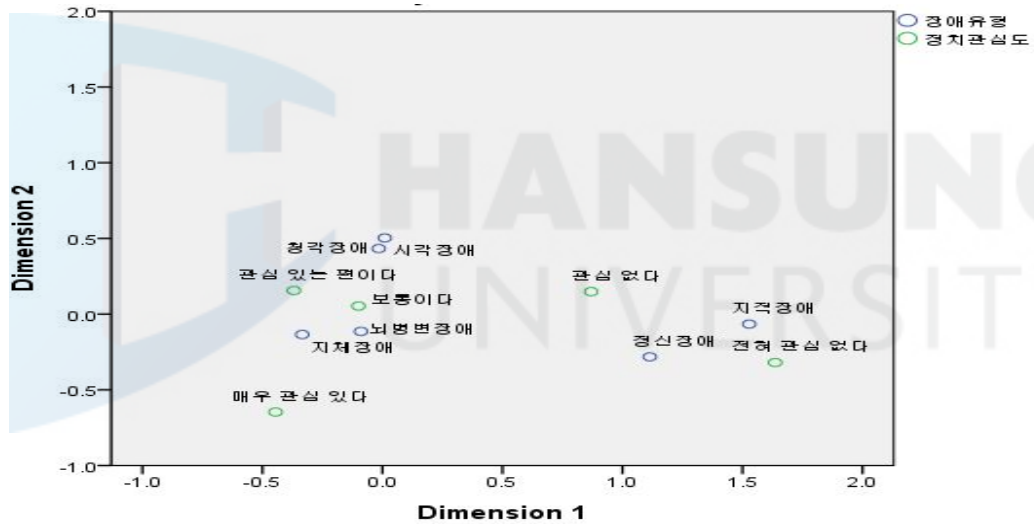
8. 귀하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실 생각입니까? 만약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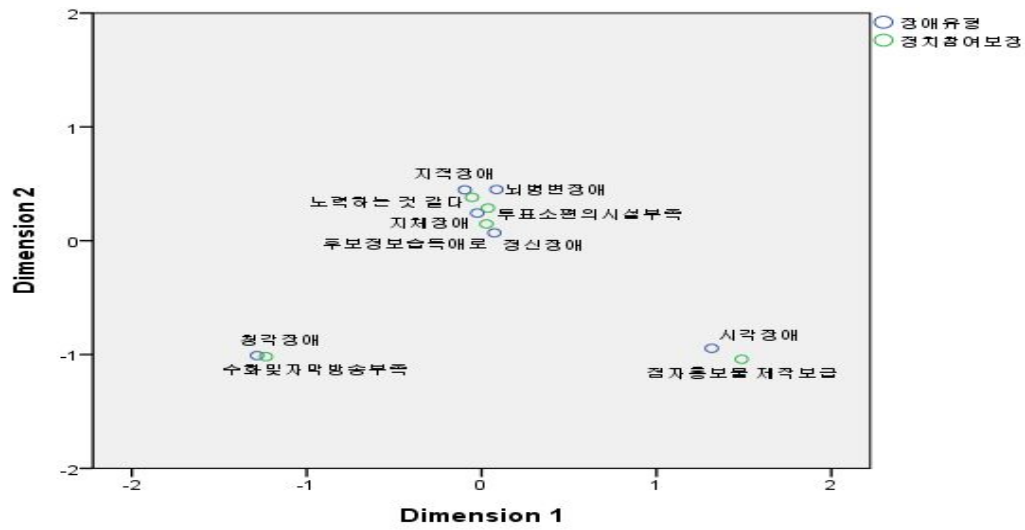
9. 귀하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장애인 후보가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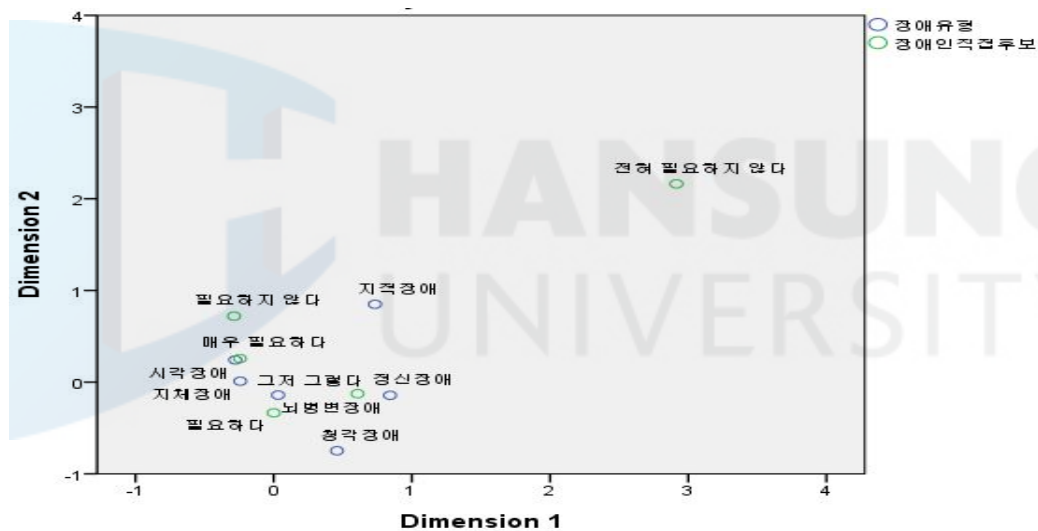
10. 귀하는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1. 귀하는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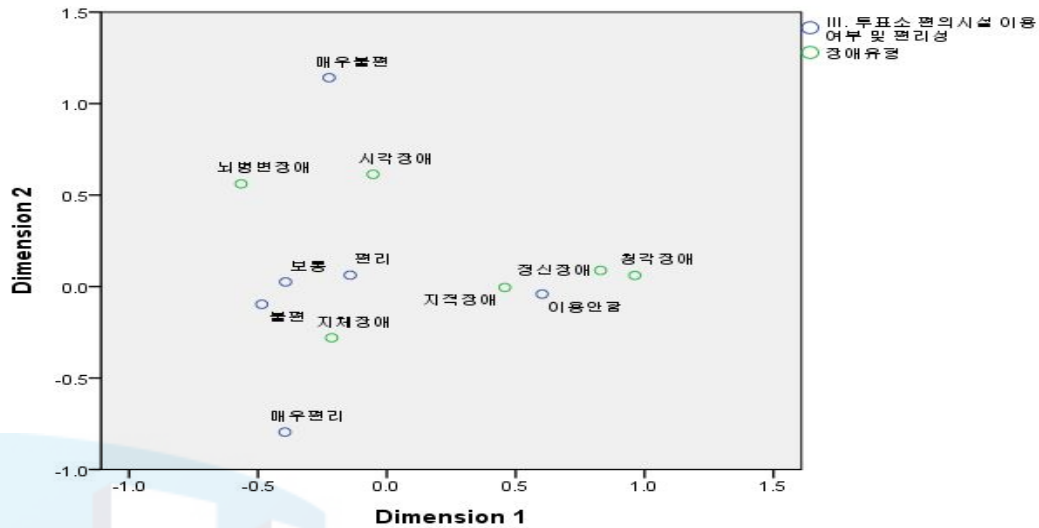
12. 귀하는 인권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후보가 되어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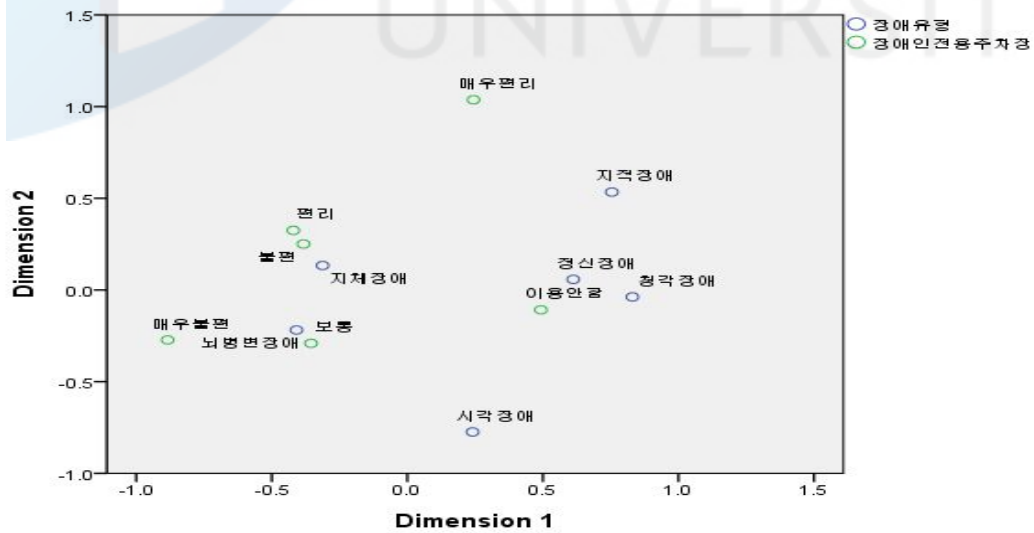
Ⅲ. 투표소 편의시설 이용 여부 및 편리성

최근 참여한 선거의 투표소(장)에서 이용한 시설에는 보기 2)~6)번에,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보기 1)번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문제 기타에 아무것도 이용안한 경우 1)번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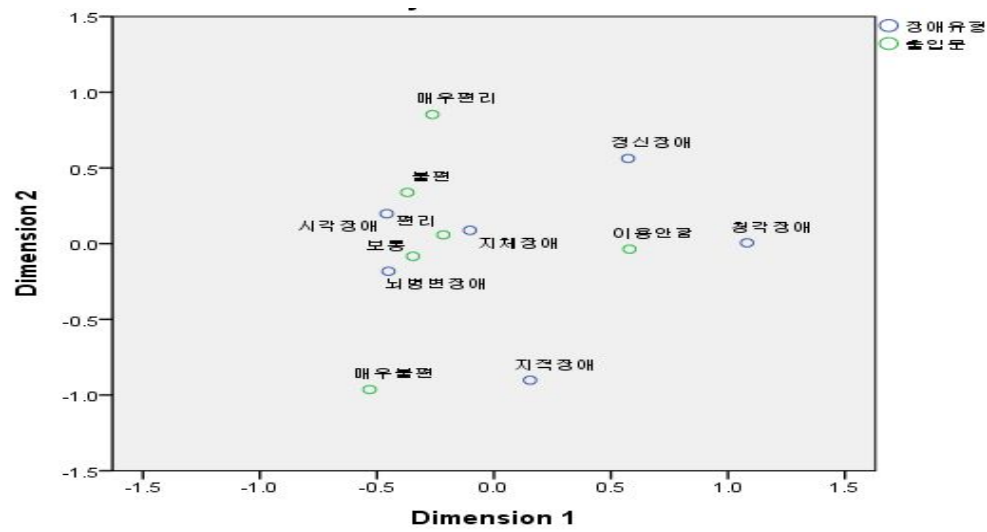
(1) 주출입구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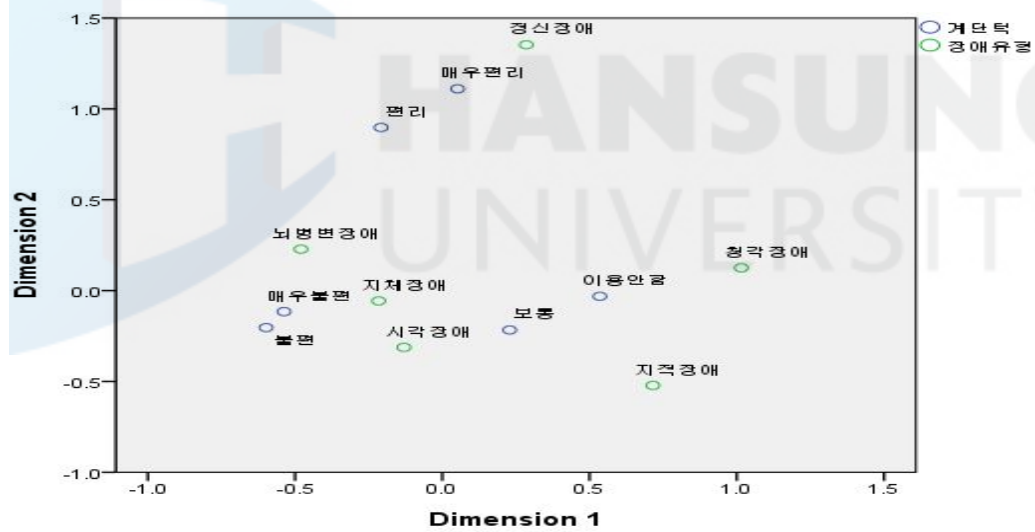
(2) 장애인 전용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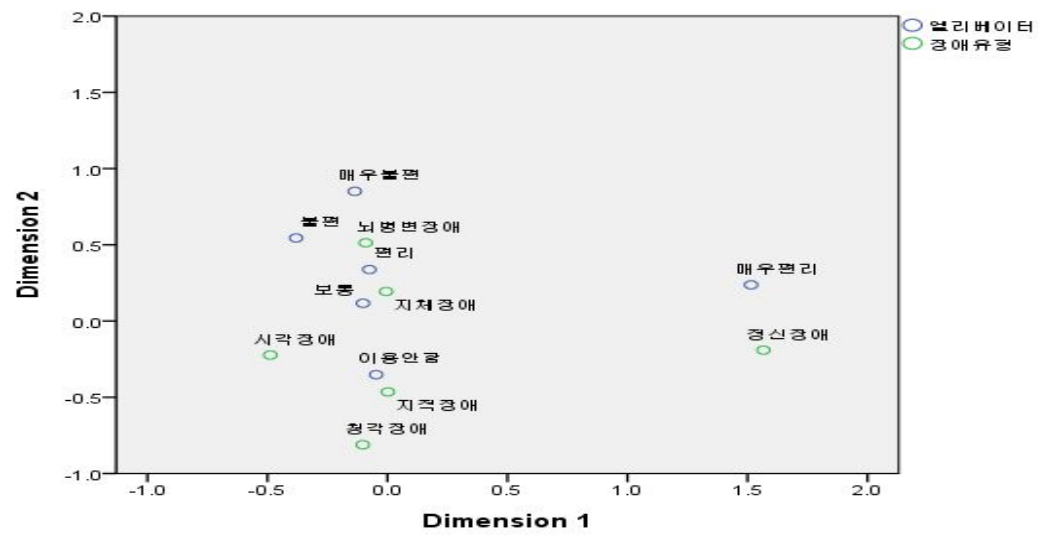
(3)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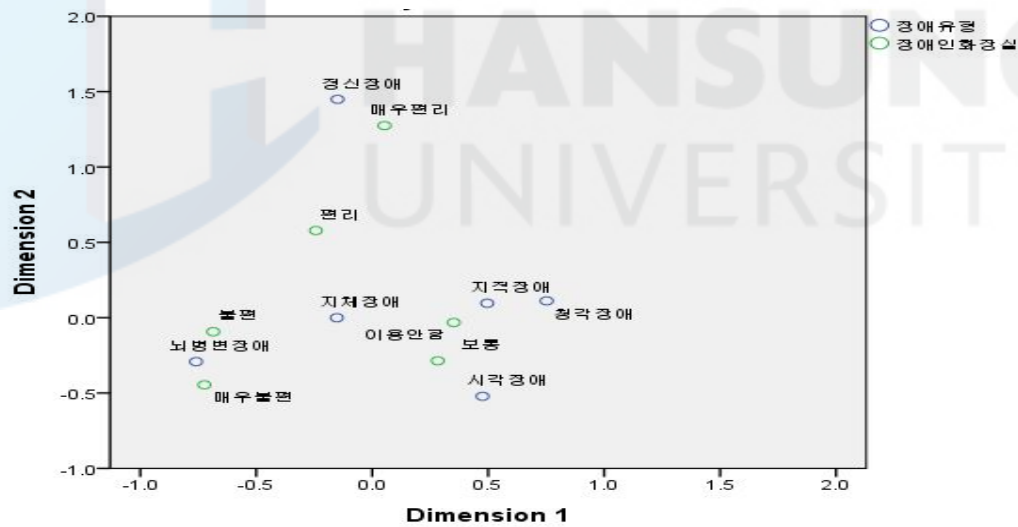
(4) 계단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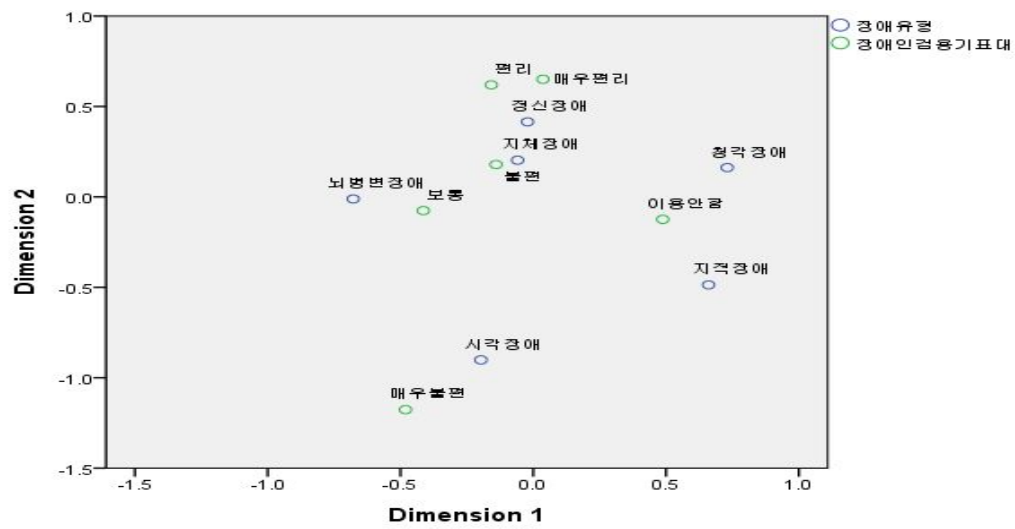
(5) 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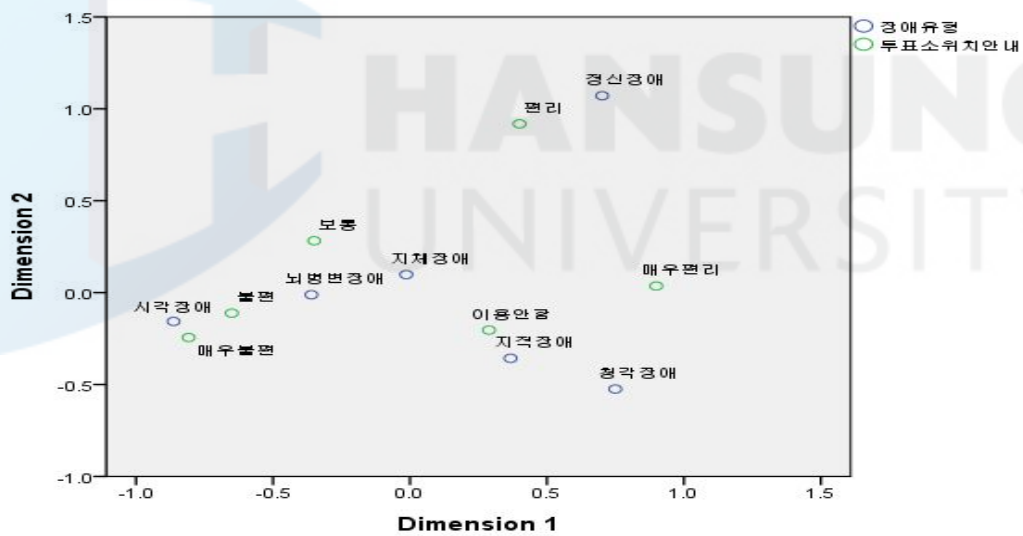
(6) 장애인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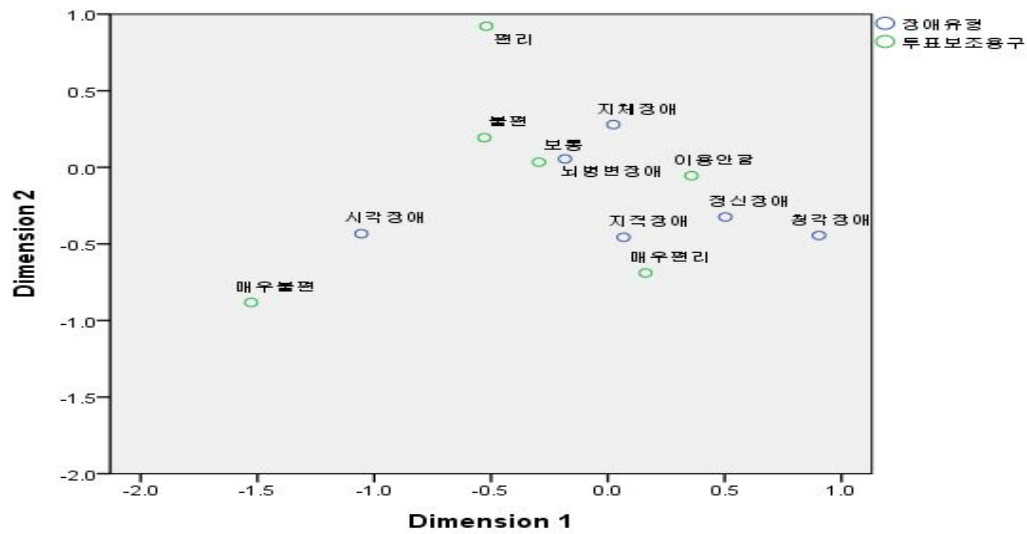
(7) 기표대



(8) 투표소 위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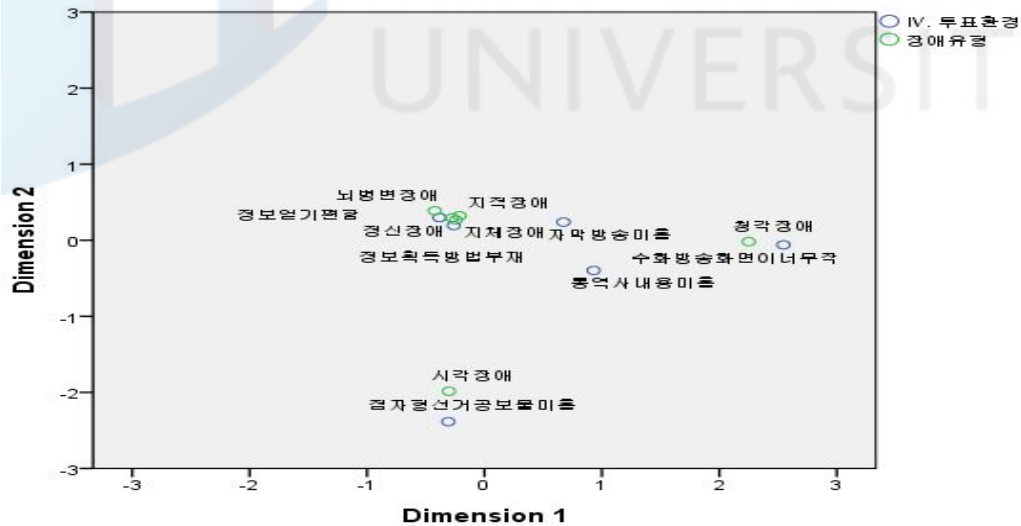
(9) 투표보조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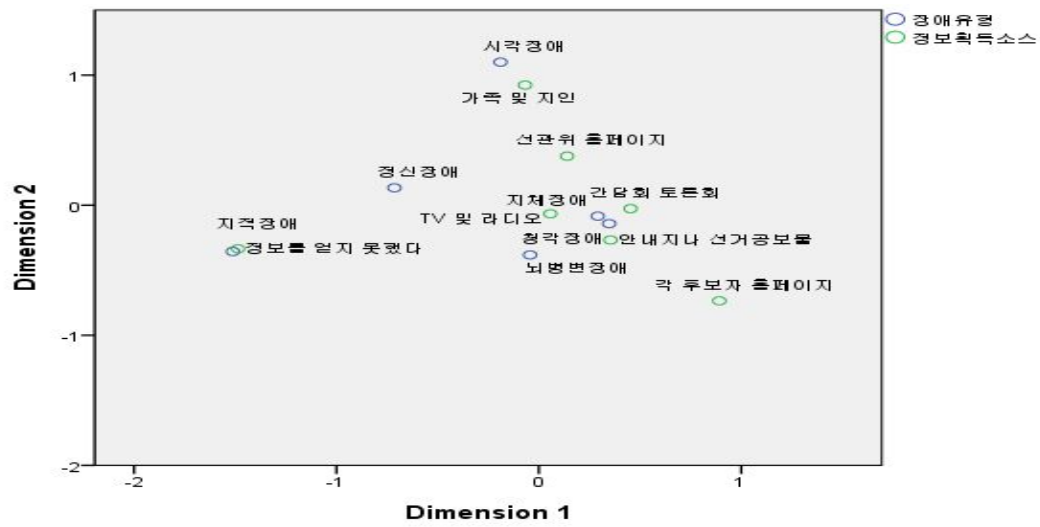
IV. 투표환경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번호에 하나만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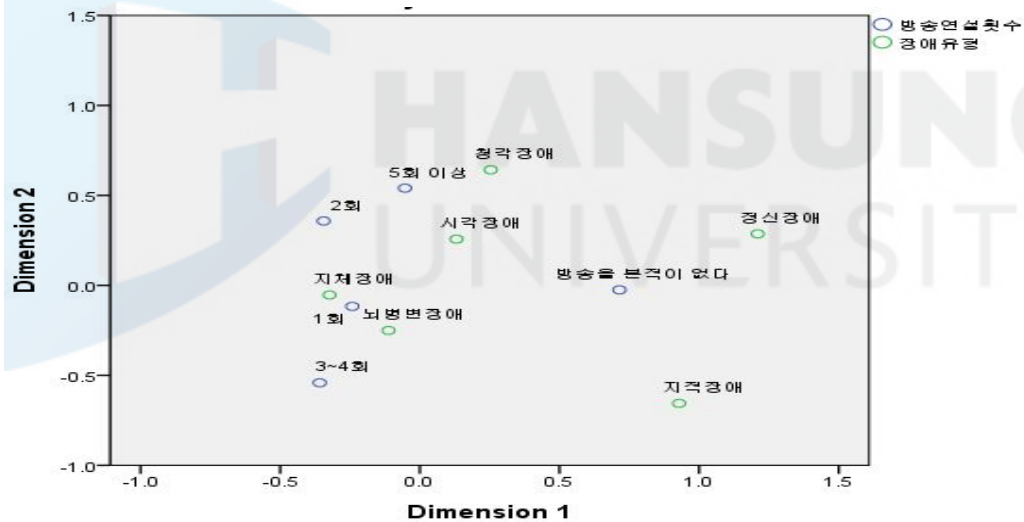
1. 귀하는 선거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편하셨습니까? 만약 불편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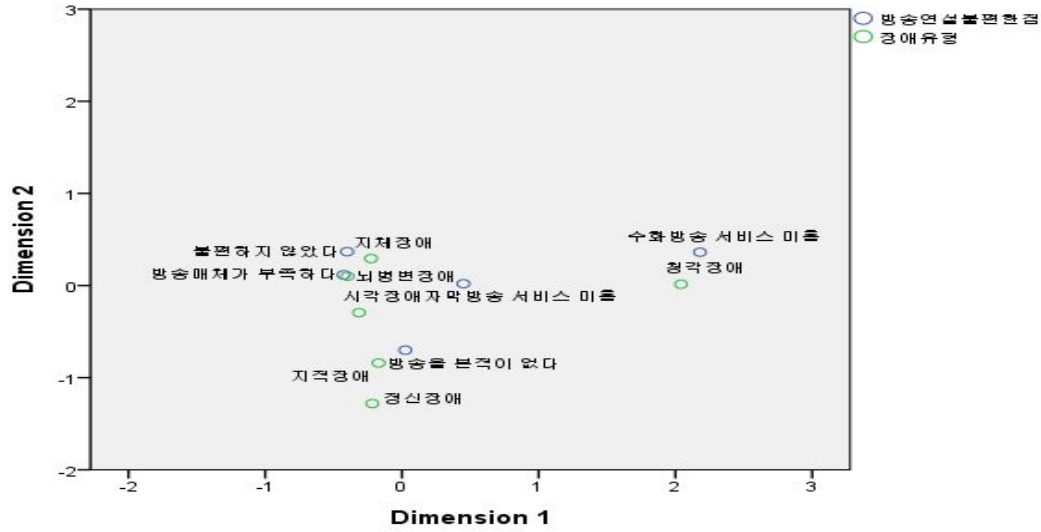
2. 귀하는 선거 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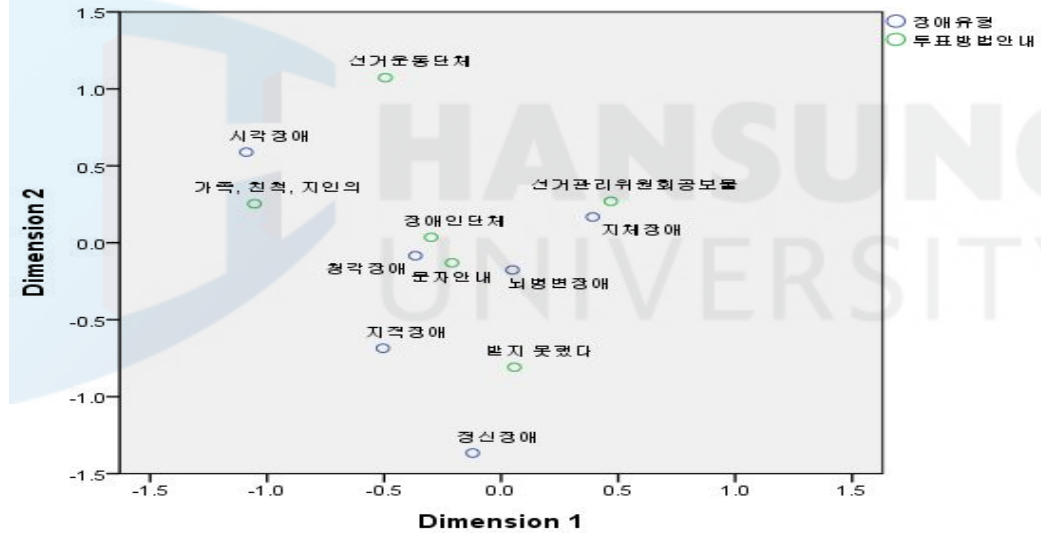
4. 귀하는 선거 때 후보의 방송연설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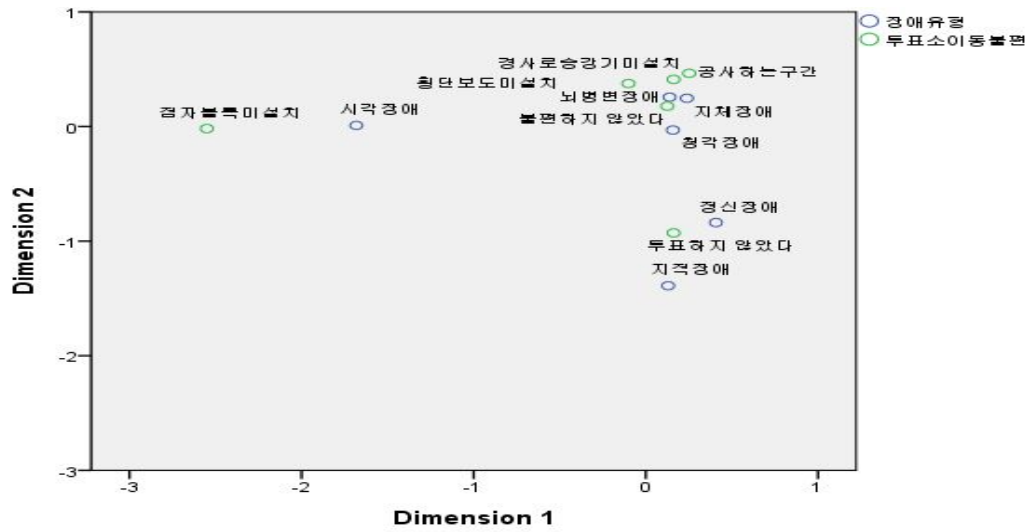
5. 귀하가 선거관련 방송연설을 볼 때,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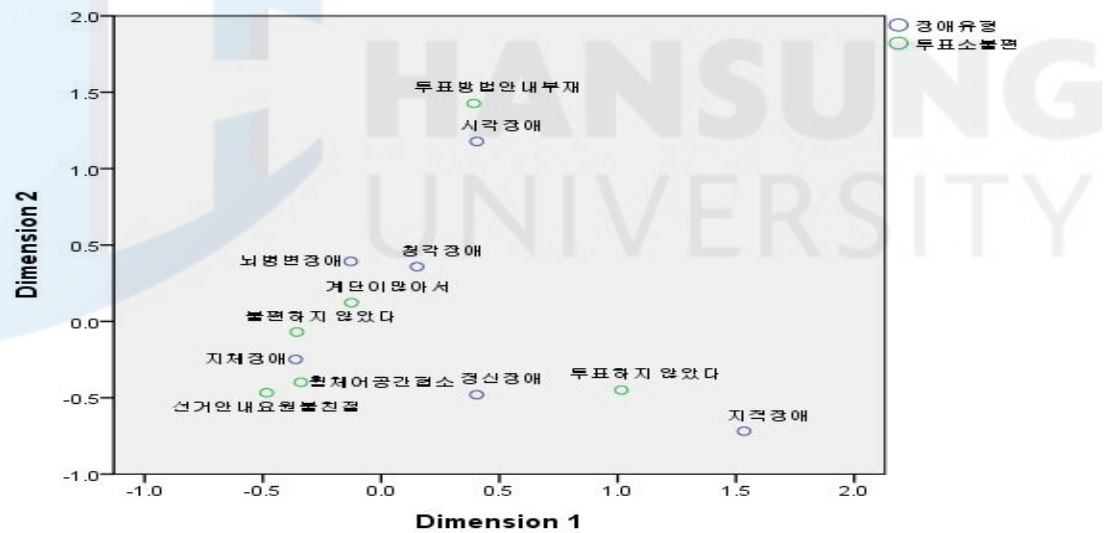
6. 귀하의 선거 때 투표방법에 대해 미리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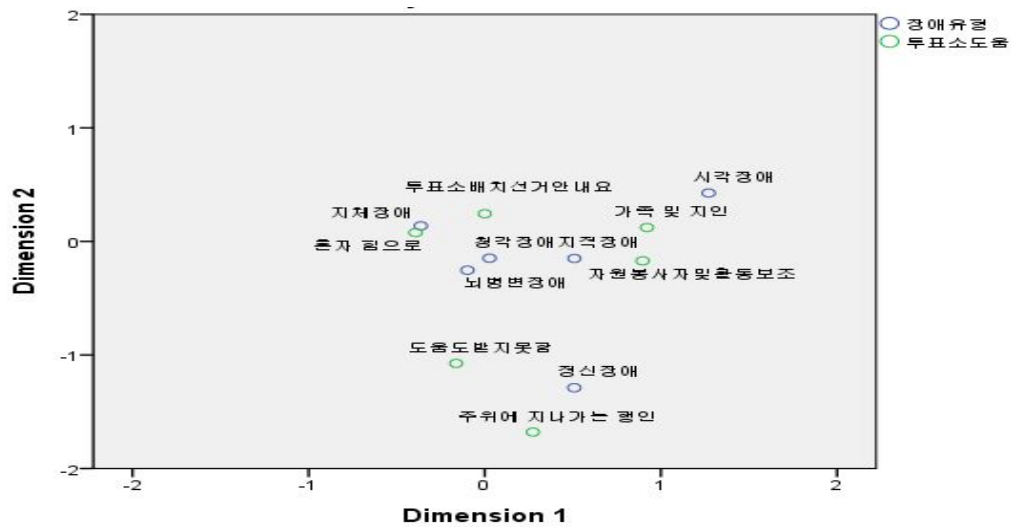
7.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 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불편했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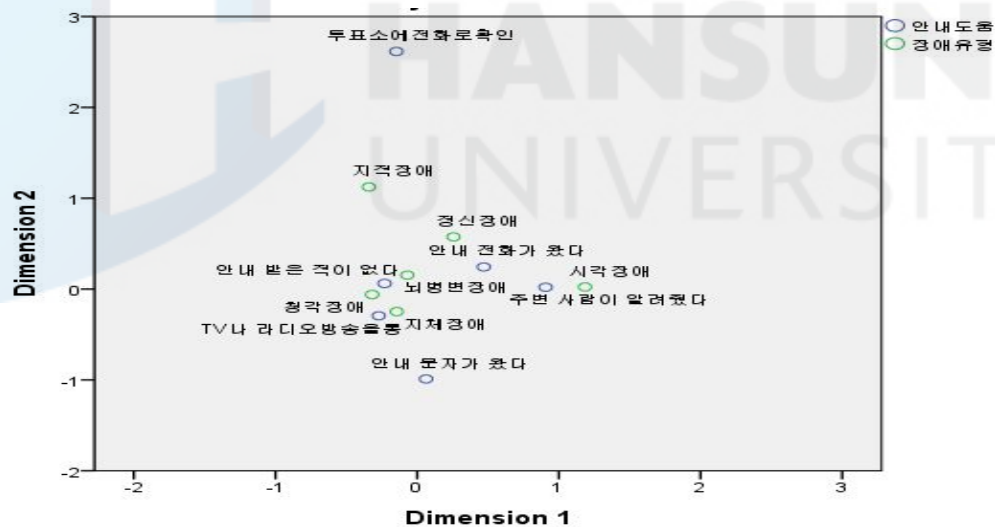
8.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표를 넣기까지 가장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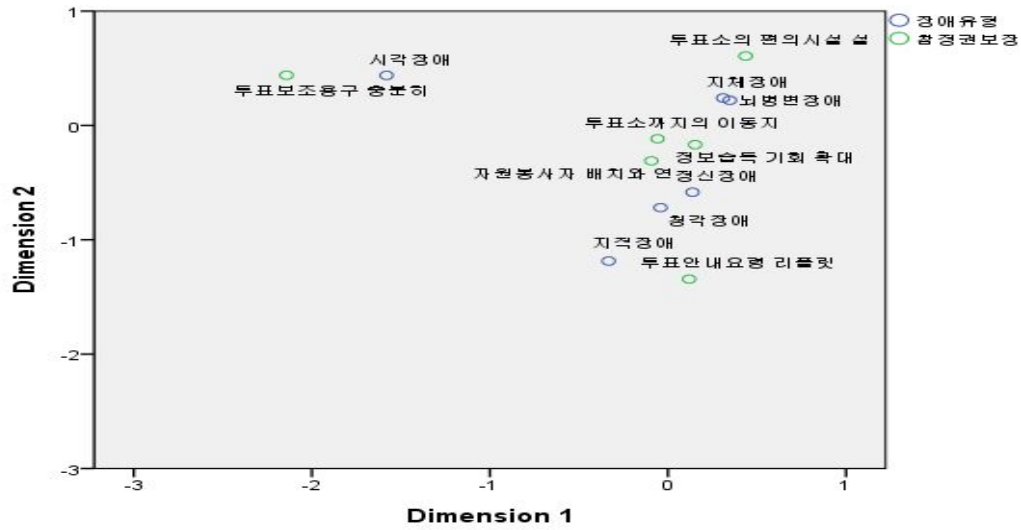
9.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의 편의시설이 없었을 경우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도움 받는 적이 있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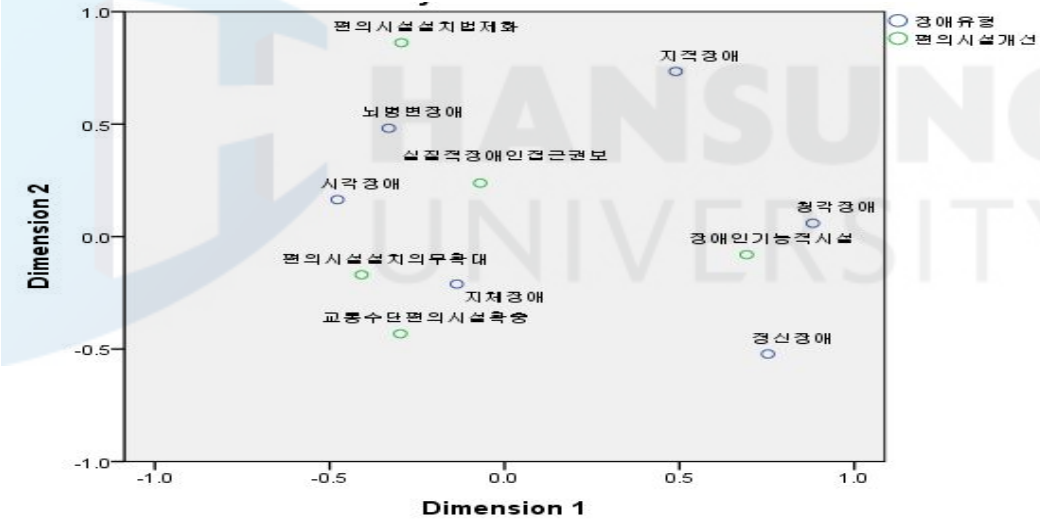
10. 귀하는 선거 때 투표소에 도움을 주는 안내요원이 있다는 사전 홍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안내받았습니까?



11. 귀하는 정부 또는 선관위에서 장애인선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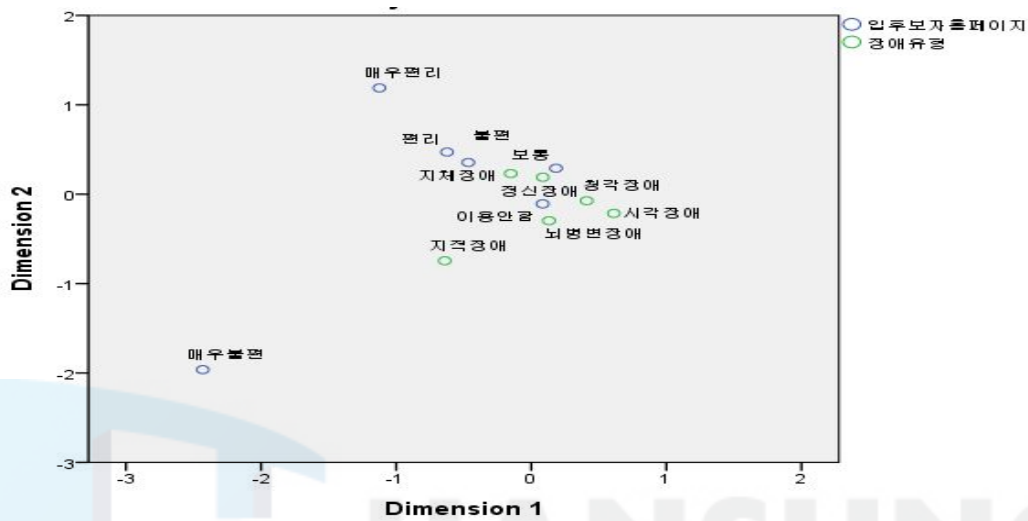
12. 귀하는 개선해야 할 편의시설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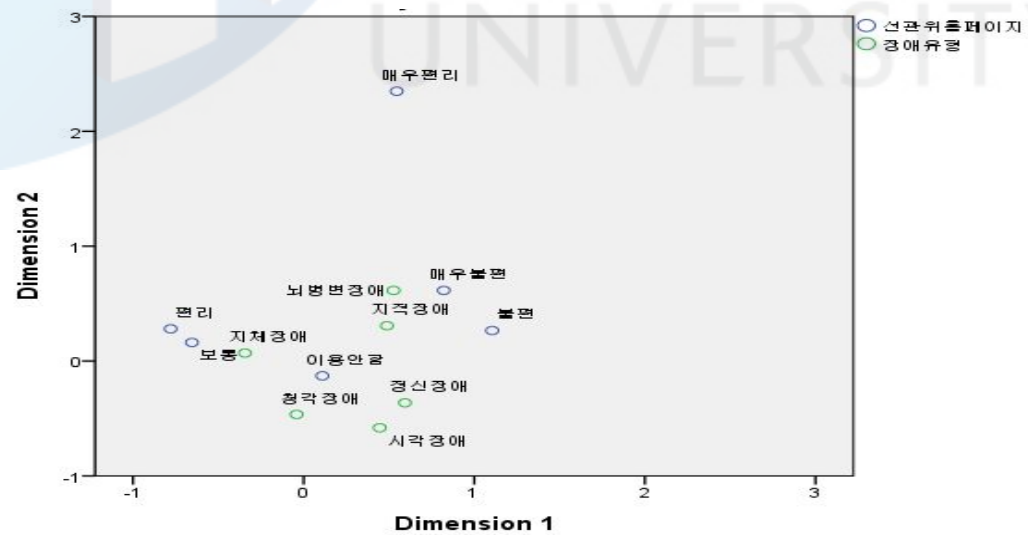
V. 후보자 정보접근 획득방법에 대한 질문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제공 받았거나 이용한 분은 보기 2)~6)번에,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보기 1)번에 ☒ 표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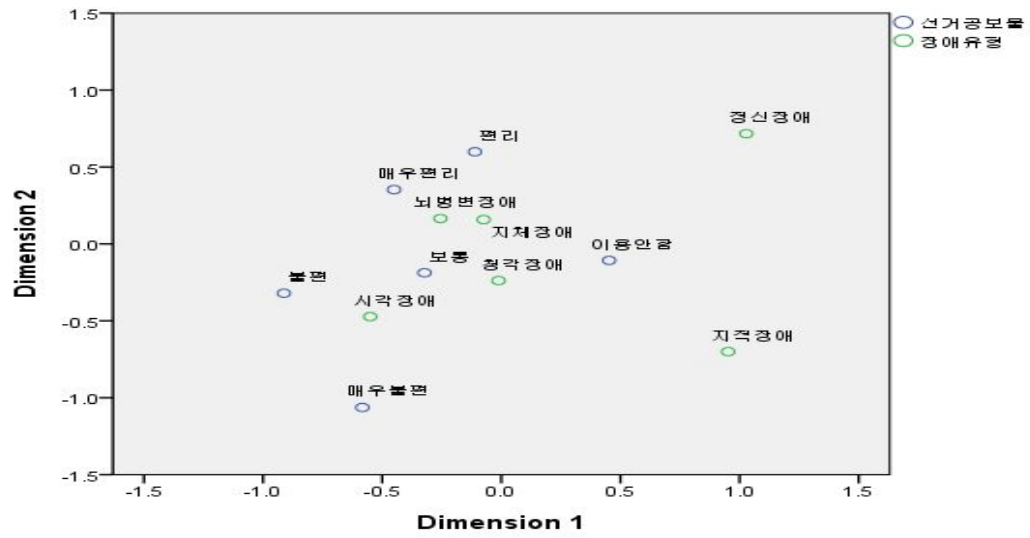
(1) 입후보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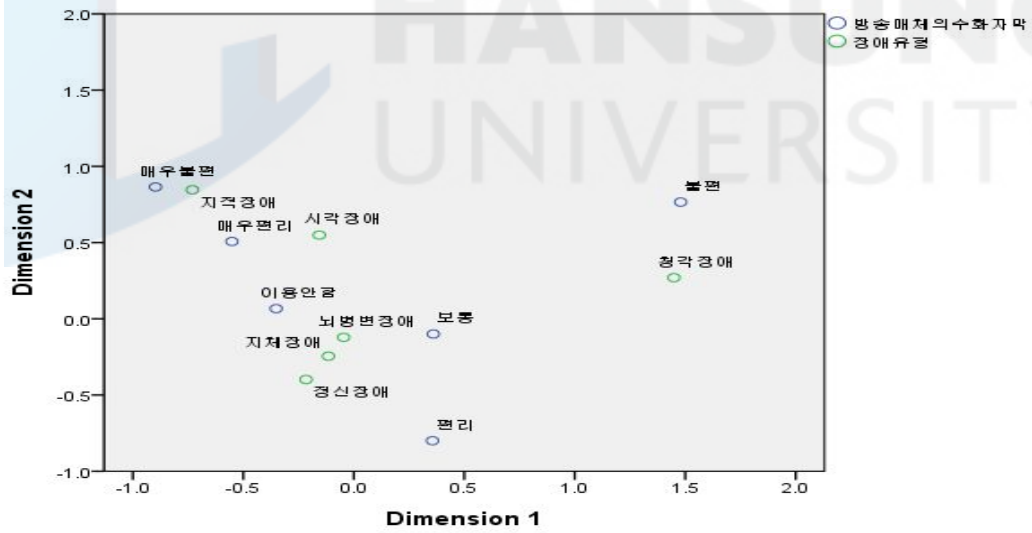
(2) 선관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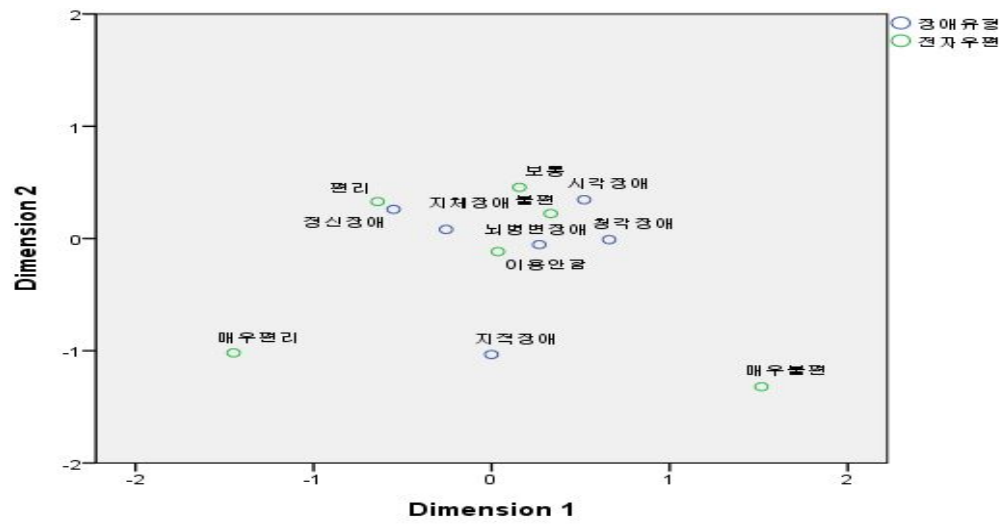
(3) 선거공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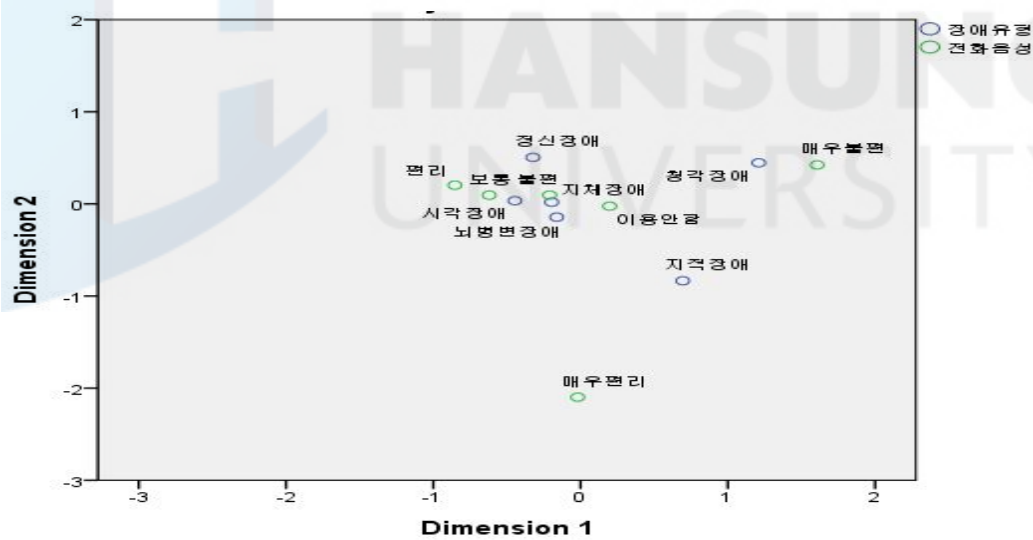
(4) 방송매체 수화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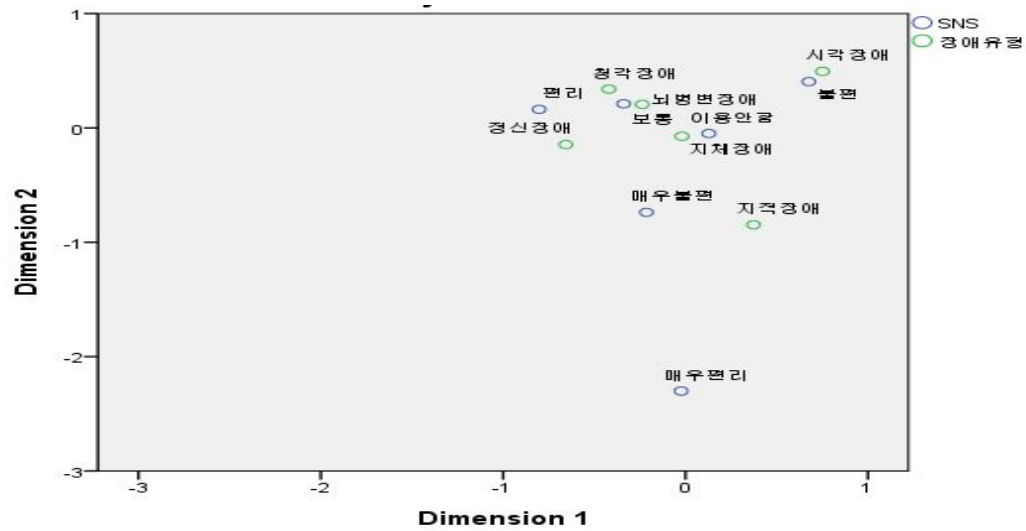
(5) 전자우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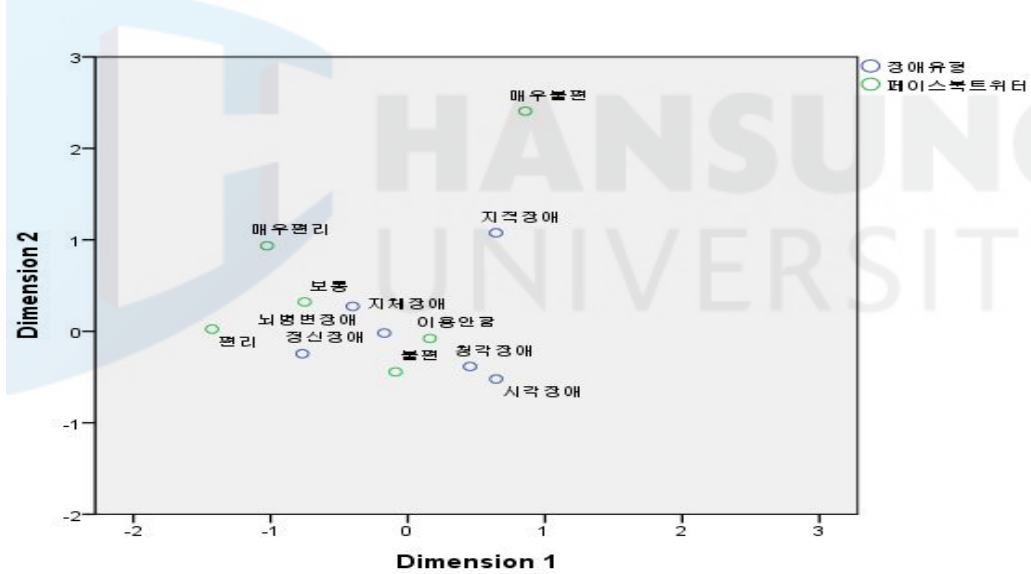
(6) 전화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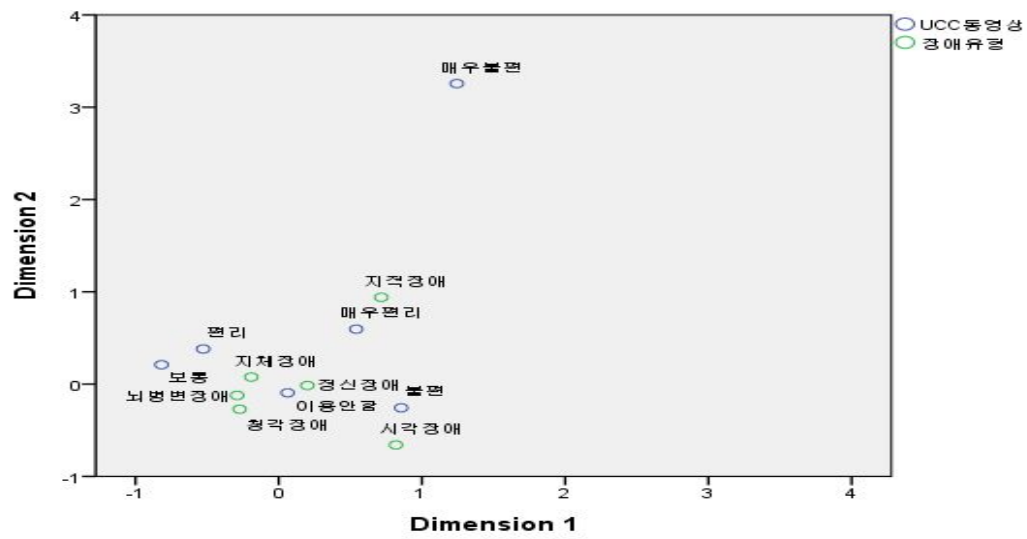
(7) S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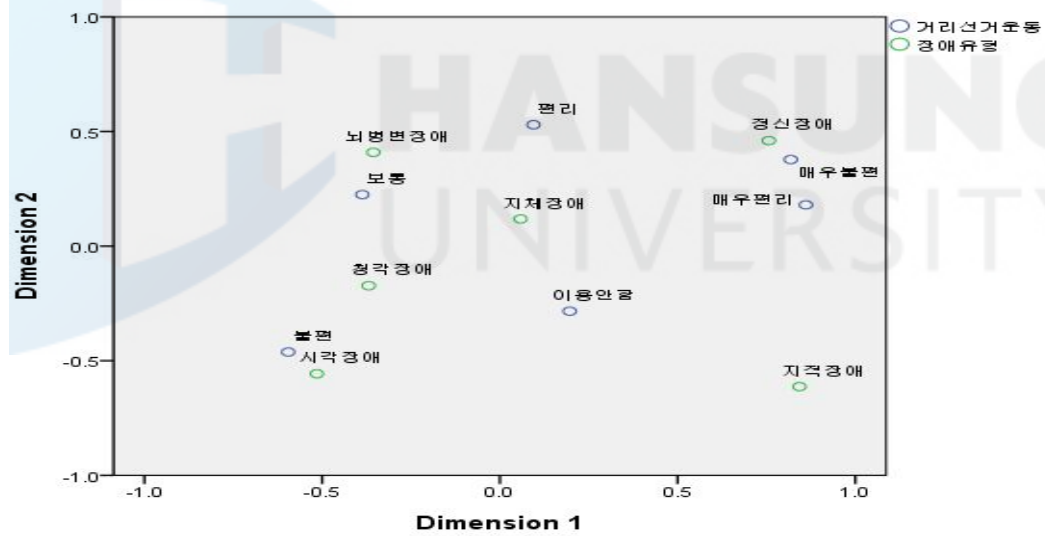
(8) 페이스북/트위터



(9) UCC 동영상



(10) 거리선거운동



ABSTRACT

The Effect of Environment Factors for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on Their Intention of Voting Participation -Mediating Effects Verification of Psychological Factors of Disabled Voters -

**You, Su Hyun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various policy proposals to increase the disabled'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voting.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the following factors on their intention for voting participation: (1) a factor related to disabled voters in the environment where the disabled participate in election, (2) a factor which enables them to determine their intention to vote, and (3) an environment factor that allows them to participate in election. Further, for the effects relevant to the factors, verification was conducted on mediating effects of disabled voters' psychological factors.

For an empirical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disabl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sabled show more interests in politics

and perceive more political efficacy as higher are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election and accessibility to the participation.

In addition, improved environment factors that determine their election participation are identified that these factors raise the disabled's intention to vote. Through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s, the disabled show more interests in politics and enhanced political efficacy, which ultimately promotes their intention to vot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raw necessity of policy introduction as an implication to enhance their political interests, and accessibility and positiveness on their participating in election.

**[Keyword] environment factors for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election, intention to vote, psychological factors
of disabled voters**

